

월간  
**재정포럼 7** 7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0년 7월호 제169호

**현안분석** • • 일본의 사업분류와 예산삭감/ 원종학  
• 자발적 협약의 이슈와 시사점: 미국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Climate Challenge Program)을 중심으로/ 허경선

**기고**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체계의 분절화 현상과  
제도적 개선방향/ 김춘순

**정책토론티포트** • 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정책흐름** •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b>권두칼럼</b>	02 지방선거 결과와 과제 · 박완규
<b>현안분석</b>	06 일본의 사업분류와 예산삭감 · 원종학 20 자발적 협약의 이슈와 시사점: 미국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Climate Challenge Program)을 중심으로 · 허경선
<b>기고</b>	40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체계의 분절화 현상과 제도적 개선방향 · 김춘순
<b>정책토론포트</b>	47 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b>공공정책포럼</b>	61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현황과 문제점
<b>주요국 조세동향</b>	67 미국의 감면연장법안에 대한 논의 동향 외
<b>정책흐름</b>	78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94 아시아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98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104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107 세금 관련 안내문 · 통지서를 전면 개선하여 납세편의 증진 111 “지방세 · 관세환급금 쌍방향 정보공유”로 빈틈 없는 지방세 관리
<b>재정통계</b>	114 취득세 (징수실적) 외
<b>이슈 &amp; 포커스</b>	132 탄소배출권 거래제 · 탄소세 정부 ‘단계적 도입안’ 검토 외



## 지방선거 결과와 과제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6월 2일의 지방선거는 대다수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여론조사기관의 예상과는 달리 야당이 압승한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여덟 군데에 걸쳐 기표를 해야 하는 것도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투표는 끝났고, 그 결과도 드러났다. 결과를 두고 집권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거나 천안함 사태 등 북풍에 대한 역풍이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무상급식, 4대강 살리기, 세종시 등 민생이슈가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모두가 부분적으로 투표 결과를 설명하는 요소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는 야당이 공동 지방정부를 내걸고 단일화를 성공시킴으로써 야당 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결집시킨 것이다. 야권 단일후보는 인천, 강원, 경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28군데의 기초자치단체 등 모두 31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드러나는 산적한 난제들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전임 자치단체장들이 추진하던 사업들이 설령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할지라도 신임 단체장의 정당이나 이념이 달라 중단될 가능성, 여러 성향의 조직(정당)이 일시적으로 단일화를 이루어 당선된 단체장의 행·재정 운영상 의사결정의 어려움, 남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신설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 상당히 확충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적어도 당분간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규모를 추가로 확대시킬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 환경 수요 등 삶의 질과 관련

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속 정당과 이념이 다른 전임 단체장이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각종 위원회에 포진하게 될 이질적인 성향의 구성원 간에 특정 사업의 시행 여부, 다양한 사업들의 시행 우선순위를 놓고 갈등과 대립이 있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동 지방정부의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팀워크 문제일 것이다. 이념과 정책의 주안점이 상이한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모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고 할 때 도처에서 갖가지 혼선이 빚어질 것은 쉽게 예상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대립으로 인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이 어렵게 되며, 특정 부문에 편중된 예산 집행은 균형 잡힌 재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공동정부 참여 구성원의 인식 전환 필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 관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완하여 올바른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위원회의 주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만일 공동정부 운영의 일환으로 각종 위원회에 지분 나눠 먹기식의 비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게 된다면 더 이상 위원회의 순기능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지분을 인정하여 해당 집단을 대표하는 위원들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 자체만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작 큰 문제는 이들 가운데 전문성이 전혀 없어서 위원회 활동에 방관자로 침묵만 지키고 있든지, 또는 전혀 안전과 관계없이 소속 집단의 이해관계에 대한 발언으로 회의 분위기 자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선 단체장을 포함하여 공동정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나라와 동떨어진 조직이나 집단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다. 안보나 경제성장,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소속 정당이나 이념이 다르더라도 중앙정부와 일사불란하게 협조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지역주민과 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 각종 위원회에 단체장의 이념이나 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들도 포용하여 각계 각층 전문가 집단의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  
지방정부는 나라와 동떨어진 조직이나 집단이 아니다. 안보나 경제성장,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소속 정당이나 이념이 다르더라도 중앙정부와 일사불란하게 협조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기능의 시설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자원  
 낭비임에 틀림없다.

.....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정부 체제하에서는 상이한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어느 때보다  
 도 더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높다.

#### 자치단체 내외의 갈등 해소방안 마련해야

이러한 갈등은 비단 자치단체 내부의 사안에만 국한될 것 같지 않다. 인접  
 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다양  
 한 정부 간에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의 조정은 자치단  
 체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마다 갈등조정기구  
 를 설치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자치단체 간에도 이런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  
 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 간이나 단체 간이나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러  
 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공동정부가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  
 이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래 적지않은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문화체육시  
 설, 복지시설 등을 만들고 있다. 이들이 모두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  
 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바로 이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구역 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바로  
 옆에 시설을 짓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공동으로 협력하여 적정 규모로  
 이러한 시설을 만들면 재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면서 많은 주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채찍도 당  
 근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앙투·융자심사  
 시 연계·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여타 사업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국  
 고보조 시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넓  
 지 않은 국토 안에서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기능의  
 시설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자원 낭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번 제5회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하는 지방정부는 자치단체 내, 자치  
 단체 간, 중앙정부와의 갈등 조정과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라는 두 가  
 지를 염두에 두고 주민의 복리후생을 위해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KIPF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현안분석 |

- 일본의 사업분류와 예산삭감  
원종학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자발적 협약의 이슈와 시사점: 미국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Climate Challenge Program)을  
중심으로  
허경선 ·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일본의 사업분류와 예산삭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jweon@kipf.re.kr)

각국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감소 없이 정부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예산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 I. 서론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1980년대 이후 누적되기 시작한 재정적자가 그 심각성을 더해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체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나라마다 다르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니 만큼 쉽게 줄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감소 없이 정부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예산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OECD 국가 중 재정적자가 계속 확대되어 재정의 유지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나라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9년 현재 누적재정적자가 GDP의 180%를 초과하고 있는데,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의 GDP 대비 누적재정적자의 평균이 88%임을 고려하면, 일본의 부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적자가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2009년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의 민주당은 복지형 지출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민주당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위기적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본 민주당은 세출억제를 통한 재원확보에 노력하게 되고, 세출억제 즉,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내세운 구체적 정책이 사업분류(事業仕分け, program classification)이다.

## II. 사업분류

사업분류는 국가예산을 재검토함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예산집행 현장의 실태를 고려하여 근본적으로 사업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재원 절감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책·제도·조직 등에 대해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가르킨다<sup>1)</sup>.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예산 항목별로 예산사업이 목적대로 실제 현장에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그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사업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등을 담당직원, 예산당국, 외부 전문가가 논의하고 판정하여 최종적으로 ‘불필요’, ‘민간’,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말한다.

중앙정부의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분류는 2009년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하토야마 내각이 내세운 정치 주도의 행정수립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행정쇄신위원회<sup>2)</sup>의 주도로 실시되었다. 행정쇄신회의에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2009년 11월 10일부터 제1차 사업분류를 시작하였으며, 2010년 4월부터 제2차 사업분류를 실시하였다. 제1차 사업분류는 2009년 11월 중앙정부의 449개 사업을 대상으로 9일간(11~13일, 16~17일, 24~27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 가. 사업분류 실시 경위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분류는 민주당이 재정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2009년에 실시한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분류는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분류에 의한 재정지출 효율화를 중앙정부의 예산사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는 2005년 9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당시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형성하였던 공명당은 수상을 본부장으로

사업분류는 국가예산을 재검토함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예산집행 현장의 실태를 고려하여 근본적으로 사업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재원 절감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책·제도·조직 등에 대해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가르킨다.

1) 행정쇄신위원회 제1회 회의록

2) 일본 민주당 정권의 공약 및 행정쇄신위원회의 임무 및 역할에 관해서는 원종학(2009)을 참고하기 바람

자민당 집권하에서는  
중앙부처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분류는 실시되지 않았는데,  
그 배경에는 중앙부처 관료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하는 '행정효율화 대책본부(가칭)'을 설치하고, 중앙정부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분류작전'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민주당은 '중앙정부 사업 재검토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부처의 정책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예산사업이 본연의 필요성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민간이나 지방으로 사업을 이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005년 10월에 당시 수상이었던 고이즈미(小泉) 수상은 중앙정부 레벨의 '사업분류' 실시를 위한 구체안 검토를 여당에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당재정개혁·사업분류에 관한 프로젝트팀'이 발족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행정개혁의 중요방침'에, 2006년 5월에는 '행정개혁추진방침'에, 2006년 7월에는 재정운영의 기본 방침인 '骨太の方針2006'에 사업분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2007년 11월과 2008년 2월에 개최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사업분류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자민당 집권하에서는 중앙부처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분류는 실시되지 않았는데, 그 배경에는 중앙부처 관료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005년 논의 개시 이후 중앙부처는, 특히 예산심의의 공개 실시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나. 사업분류의 의도 및 원칙

민주당이 예산사업의 효율화를 통한 세출억제를 위해 사업분류를 실시하였다는 점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으나, 행정쇄신위원회가 사업분류를 제안한 시점에서의 사업분류의 의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sup>.

첫째, 예산항목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 종래에는 한 번 계상된 예산항목은 익년 이후의 요구단계나 사정단계에서 반드시 충분히 검토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업분류에서는 외부의 시점도 고려하여 각 사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예산집행실태를 고려한다. 사업의 점검(사업분류) 시, 그동안 예산편성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집행실태'에 대해 최대한 현장의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를 검토하여 예산 투입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통해 PDCA(Plan-Do-Action-Check) 순환구조를 확립한다.

셋째, 철저하게 투명성을 제고한다. 예산 절감에 관한 논의를 공개함으로써 예산편성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예산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등을 국

3) '事業仕分を含む今回の歳出見直しの考え方', 行政刷新會議, 内閣府

민의 시점에서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일부 정치가와 관료의 의도나 이해에 의해 예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식하고, 관청의 국민에 대한 설 명능력이나 규율을 제고하며, 관료주도·족의원 주도의 예산편성을 국민 주도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힘쓴다.

넷째, 전 부처 정무삼역(장관, 차관, 정무관)은 일치협력하여 정치주도를 실현한다. 정무삼역은 각 부처의 대변자가 아니라 내각구성원으로서 철저한 재원 절감에 노력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부처의 예산 요구의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한다. 종래에는 각 부처가 예산의 크기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면, 이번에는 각 부처 정무삼역이 국민의 시점에서 ‘예산의 효율화’를 경쟁하는 것이다.

다섯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힘을 결집한다. 정치 주도하에 민간인의 힘과 개혁의지가 있는 관료의 힘을 활용하여 이제까지의 ‘속박’ 으로부터 예산편성 작업을 독립시켜, 국민의 힘을 결집한 예산편성 작업을 한다.

사업분류는 이상과 같은 의도하에 아래의 다섯 원칙하에 실시하였다.

#### 1) 현장을 통한 외부 시점의 도입

사업내용이나 예산 사용처를 숙지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경험자가 철저한 현장검증과 조사에 근거하여 사업분류를 실시한다. 단, 사업분류는 사업 그 자체의 시비에 관한 정책 판단과는 별개이다.

#### 2) 전면공개

예산사업의 심의 과정 전부를 국민 모두에게 완전히 공개한다.

#### 3) 사업시트의 작성

추상적인 사업개요나 목표가 아니라, 사업목적, 구체적인 사업내용, 성과 실적 등에 관해 모든 사업이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한다.

#### 4) 명확한 결론

종래의 심의회의의 경우 장시간의 논의를 사무국이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논의된 내용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2009년의 사업분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정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개혁의 실현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한다.

#### 5) 과정(process) 중시

사업분류의 원칙은

- ① 현장을 통한 외부시점의 도입
- ② 전면공개
- ③ 사업시트의 작성
- ④ 명확한 결론
- ⑤ 과정의 중시이다.

### 다. 사업분류 진행

사업분류는 한 사업당 1시간 정도를 배정하였다. 진행순서를 보면 처음에 해

제1차 사업분류는 3개의 작업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사업분류 평가자는 행정쇄신회의의장이 지명하며, 여당 국회의원, 외부 전문가, 담당부서의 차관 또는 정무관으로 구성되었다.

당사업 담당직원이 5~7분에 걸쳐 사업개요를 설명한다. 설명자는 국장 또는 심의관급을 포함하여 5명까지로 제한하였다. 다음으로 사정담당자가 기본입장을 3~5 분에 걸쳐 설명하고, 사정하는 입장에 있는 재무성 주계국이 해당사업의 논점이나 주계국의 생각을 설명한다.

이후 간사(국회의원)가 사업을 선정한 배경 및 주요 논점에 대해 2분 정도 발표하고, 평가자가 담당직원에게 분류를 위한 판단을 위해 질문 및 토의를 40 분 정도에 걸쳐 실시한다. 질문 및 토의는 각 부처가 작성한 시책·사업 시트(개요 설명서)에 의거하여 진행되는데, 개요설명서에는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개시연도, 비용 (사업비, 인건비), 사업내용, 예산내역, 사업의 필요성, 부처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 사업실적, 성과목표, 성과실적, 사업·제도에 관한 자체 평가, 비고 및 특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질문과 토의가 끝나면, 각 평가자가 평가서에 평결내용과 이유를 기재하고, 평가결과를 간사가 2분 정도에 걸쳐 간략하게 발표한다.

### 라. 작업반(Working Group)

제1차 사업분류는 3개의 작업반(working group)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작업반별 대상부처와 평가자 구성은 <표 1>과 같다. 사업분류 평가자는 행정쇄신회의의장이 지명하며, 여당 국회의원, 외부 전문가, 담당부서의 차관 또는 정무관으로 구성되었다. 국회의원은 각 작업반의 총괄과 간사를 맡으며, 전직 공무원과 시공무원, 그리고 대학교수를 주로 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제1차 사업분류 작업반

	대상부처	구성(평가자)
제1작업반	총무성 재무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	국회의원 2 대학교수 9 시공무원 3 민간 4(변호사1, 연구직2)
제2작업반	외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	국회의원 2, 시의회 1 대학교수 8, 민간 10 시 공무원 2, 전공무원 1
제3작업반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방위성 등	국회의원 2 대학교수 9 시공무원 1 전공무원 1 민간 11

### Ⅲ. 사업분류 결과

#### 가. 예산반영 현황

2010년 1월에 재무성 주계국이 발표한 사업분류 평가결과의 반영 상황을 보면<sup>4)</sup>, 사업구분을 통해 세입·세출을 합하여 약 3조 3,082억엔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산요구단계에서의 (2009년도 당초예산액 → 2010년도 개산요구액) 세출삭감액(일반회계)이 약 1조 3,122억엔이며, 개산요구단계로부터의 세출 삭감 (2010년도 개산요구액 → 2010년도 당초예산액)은 약 9,692억엔이다. 세입 측면에서는 사업구분 평가결과 및 재검토를 통한 세입확보 노력으로 약 1.0조엔의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별 예산반영 현황은 <표 2>와 같다.

2010년 1월에 재무성 주계국이 발표한 사업분류 평가결과의 반영 상황을 보면, 사업구분을 통해 세입·세출을 합하여 약 3조 3,082억엔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업구분 평가결과 예산 반영 현황(소관별)**

(단위: 백만엔)

소관명	2009년도 당초 예산액(A)	2010년도 개산요구액(A')	2010년도 당초 예산액(B)	2009년도 당초 대비 변동(B-A)	2010년도 개산요구 대비 변동(B-A')
경제 산업성	774,346	804,379	774,322	-23	-30,057
국토교통성 <sup>1)</sup>	675,485	794,100	522,664	-152,821	-271,436
내 각 부	38,742	26,976	21,490	-17,252	-5,486
농림수산성 <sup>2)</sup>	586,420	590,885	365,368	-221,054	-225,520
문부과학성	3,261,248	3,278,811	3,161,297	-99,947	-117,514
방위성	2,465,832	2,537,794	2,466,467	636	-71,326
법무성	5,668	8,020	7,294	1,626	-726
외무성	458,178	462,082	447,319	-10,858	-14,763
재무성	32,818	28,853	14,946	-17,872	-13,907
총무성 <sup>3)</sup>	165,564	251,200	219,391	53,826	-31,809
환경성	72,237	71,498	65,761	-6,474	-5,736
후생노동성	11,786,802	12,296,150	12,246,599	459,797	-49,726
계	20,323,340	21,150,748	20,312,918	-10,416	-838,006

주: 1)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가칭) 2.2조엔 내 통합지출 항목 제외

2) 농산어촌지역정비교부금(가칭) 1,500억엔 내 통합지출 항목 제외

3) 지방교부세 교부금(근본적 재검토대상) 제외

자료: 행정쇄신회의, 5차회의 자료 2 '행정쇄신회의 사업구분 평가결과 반영(헤세이 22년 1월, 재무성 주계국)'

4) 財務省主計局, 「行政刷新會議の事業仕分けの評價結果の反映」, 2010.

사업분류 결과가 당초에 예상하였던 만큼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일부이긴 하나 주요 사업의 예산심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위의 예산절감액은 재무성 주계국이 발표한 것이며, 절감액이 결정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11월 27일 제1차 사업분류가 종료되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당초 목표로 하였던 3조엔의 예산삭감에는 미치지 못하는 1.7조엔이 재검토·국고반납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12월 2일 오자와(小澤) 민주당 간사장이 사업분류 결과 예산삭감 판정을 받은 주일미군주류비의 일본 측 부담, 정비신칸센,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공공사업 등 20~30항목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수상에게 건의함으로써 예산절감액은 더 줄어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10년도 예산 반영 상황을 보면, 사업분류 평가결과 및 횡단적 재검토 반영에 의한 2010년도 개산요구로부터의 예산 삭감액은 약 9,692억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분류가 예산사업에 대한 심의라는 점, 예산안 확정에는 국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일본의 정치형태가 의원내각제이므로 다수당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의향이 예산안의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분류의 결과대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사업분류에 참가하였던 도이(土居) 교수는 정부는 사업분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재무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며, 센고쿠 당시 행정쇄신장관 역시 관료의 자정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과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 나. 사업분류에 대한 평가

사업분류 결과가 당초에 예상하였던 만큼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일부이긴 하나 주요 사업의 예산심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정부분 관습에 의해 결정해오던 예산사업에 대해 효율성이라는 시각에서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일례로 요미우리(讀賣) 신문사가 2009년 12월에 조사한 사업분류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업분류에 대해 71%의 일본인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비율도 63%에 이르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업평가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가 39%로 가장 많았으며, 논의 진행방식이 좋지 않았다 20%, 대상사업이 적절하지 못했다 17%, 평가자의 판단이 적절하지 못했다 17% 순이었다.

사업분류에 대해 자민당은 정부의 예산삭감을 위한 심의 과정이 마치 ‘공개 처형과 같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민당의 의견은 공개 심의에 극력 반대하였던 중앙정부(관료)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자민당 집권시 사업분류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던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여겨진다. 각 부처는 사업분류 대상사업의 선정, 사업분류에 필요한 자료를 재무성 주계국에 의존한 만큼 사업분류 자체가 재무성 주계국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과학계는 슈퍼컴퓨터 개발 예산삭감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행해지자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계산기초과학 컨소시엄 등 일본 과학기술관련단체가 사업분류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간 전문가 및 매스컴에서는 사업분류의 의의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방법론이나 소요시간, 사업분류 담당자들의 전문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2009년 시행된 제1차 사업분류에 대해 제기된 주된 문제점을 보면, 1) 예산심의 과정을 공개, 2) 대상사업의 부적절성, 3) 평가자의 전문성 결여, 4) 재무성 주계국 주도의 진행 등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 IV. 사업분류 검토 사항

### 가. 제기된 문제점 검토

2009년 시행된 제1차 사업분류에 대해 제기된 주된 문제점을 보면, 1) 예산심의 과정을 공개, 2) 대상사업의 부적절성, 3) 평가자의 전문성 결여, 4) 재무성 주계국 주도의 진행 등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예산심의 과정을 공개하는 데 대한 지적이나, 이는 주로 중앙관료들의 주장으로 기존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분류의 목적이 예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역 없는 심의, 원점(zero-base)에서의 예산 효율성 검토를 지향하였던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대상사업의 부적절성은 예컨대 과학기술분야와 같이 단기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은 사업분류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여지나, 사업분류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시 해당 사업의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를 구분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진다.

사업분류는 국민의 시점에서 예산사업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여론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으나, 여론의 동향과 사업의 효율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양자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분류 이후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사업분류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제기된 의견의 전부가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셋째, 평가자의 전문성이다. <표 1>의 평가 작업반의 인적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가자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평가자가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여겨진다. 우선, 대상 사업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예산의 투입에 따른 효과성이 적절인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의 효과성은 사업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자 및 사업전문가들이 사업평가서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전문성만을 문제삼아 외부의 평가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논리이며, 종래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예산사업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외부의 시점을 도입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크게 문제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사업분류에 필요한 판단 자료의 대부분을 예산당국(재무성 주계국)에 의존하였다는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여겨진다. 일본의 민주당이 9월에 집권을 하여 11월에 사업분류를 시행한 만큼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여 예산당국에 평가자료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점으로 인해 지양되어야 할 관료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상의 문제점에 더하여 사업분류가 예산절감을 위한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론의 반영 문제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분류는 국민의 시점에서 예산사업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여론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으나, 여론의 동향과 사업의 효율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양자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나. 사업분류와 여론

제1차 사업분류 결과 차세대 슈퍼컴퓨팅기술(슈퍼컴퓨터 개발) 사업을 비롯한 이공계 분야 사업에 대해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삭감을 권고하자, 이공계는 여론을 통해 압박을 가하였다<sup>5)</sup>.

슈퍼컴퓨터 개발 사업에 관한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슈퍼컴퓨터 개

5) 슈퍼컴퓨터 개발사업에 관한 검토 의견과 이와 관련한 이공계, 정치권 등 각계의 반응은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람.

발을 위해 매년 300억엔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슈퍼컴퓨터에 따른 이익(효과성)이 불명확하여 슈퍼컴퓨터 개발 자체가 목적인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공계에서는 슈퍼컴퓨터 개발 사업의 타당성은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이미 시행하였으며, 슈퍼컴퓨터 개발은 과학기술 발전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는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슈퍼컴퓨터 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은 국가의 장래를 고려할 때 재고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여론이 이공계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자, 정치권에서도 기초과학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분류 결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슈퍼컴퓨터 개발 사업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나, 이외에도 바이오 리스소 사업, 세계 톱 레벨 국제 연구거점형성촉진 프로그램, 심해지구 탐사계획 사업 등 기초과학에 대해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공계에서는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론에 호소하여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여론의 동향을 받아들여 정치권에서도 사업분류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기초과학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분류의 결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공계의 우려는 타당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사업분류를 위해 제출한 개요설명서에는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을 뿐 실적, 개발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어, 과학기술분야 사업이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사업분류의 목적이 효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 존재 여부를 포함한 운영방식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이니 만큼, 슈퍼컴퓨터를 개발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제3자인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효과성이 모호한 사업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평가자들의 견해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 V. 결론 : 예산 삭감 수단으로서의 사업분류

현재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많은 나라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혁의 방향은 자율, 성과, 책임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2002년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범기를 거쳐,

현재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많은 나라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혁의 방향은 자율, 성과, 책임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일본의 사업분류는 급박한 일정 및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의 부족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의 유효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사업평가를 통해서도 사업의 존재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부터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시행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에서 실시된 사업분류 역시 성과와 책임을 중심으로 예산사업의 효율화를 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9년도에 일본에서 실시된 사업분류는 예산심의 과정의 공개를 통해 기존의 관습에 젖은 예산심의 방식을 타파하였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 동안 검증을 받지 않았던 사업들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의 사업분류는 급박한 일정 및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의 부족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의 유효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를 통해서도 사업의 존재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물며 검토(review) 수준의 성과평가서로 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예산삭감에 직접적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부록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1차 사업분류를 위해 제출된 사업설명서를 검토한 결과, 제시된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산출지표이며 목표치 설정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집권당의 다수 계파가 정국을 주도하는 일본의 정치적 행태 및 예산당국인 주계국 주도의 사업분류가 계속된다면 사업분류를 통한 예산삭감으로 재정지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행의 방식으로 계속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한다면 사업분류의 결과가 예산편성 과정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분류에 대한 기대감도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의 정치행태가 단기간 내에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분류가 예산사업의 지출 억제수단으로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예산사업의 효과성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효과성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많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심층적인 사업평가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KIPF

### <참고문헌>

서세욱, 『일본의 예산편성 개혁사례』, 국회예산정책처, 2010  
 원중학, 『일본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161, 2009. 11  
 行政刷新會議, 『行政刷新會議議事録』(1~5回)

行政刷新會議ワーキングチーム, 「事業仕分けの評価コメント集」  
 財務省主計局, 「行政刷新會議の事業仕分けの評価結果の反映」, 2010

## 부록 1 슈퍼컴퓨터 개발사업에 관한 검토의견 및 반응

- 1) 슈퍼컴퓨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분류 검토의견
  - 10페타 슈퍼컴퓨터의 개발 자체가 사업의 목적. 거액의 세금을 투입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이상, 중요한 것은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어떠한 정책효과를 창출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국비 투입은 무리임.
  - 필요최저한의 예산투입으로 재검토함. 내년도는 이 개발계획을 일단 동결하고 계획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 일단 종합과학기술회의 등에 (안건을 되돌려) 무엇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재검토해야 함. 하드웨어로 싸우기보다는 소프트웨어로 싸워야 함.
  - 종합과학기술회의에 다시 회부하여 재검토. 과학기술의 필요성, 중요성은 이해되나, 국민의 이해를 얻지는 못함. 세계 제일을 추구하는 시대는 아님.
  - 개발체제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스템 부분 등을 삭감.
  - 벡터, 스칼라의 선택도 총괄이 충분하지 않음. 현 단계에서는 충분한 설득력이 없는 '세계 제일'이라는 목적만으로 거액의 투자를 해서는 안됨. 세계최초와 재정상황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이제까지의 경위를 고려하여 기초연구부분만을 남겨야 함.
  - 기술은 축적되는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 계획을 검토하고,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함. 근본적인 변경이 필요.
  - 이제까지의 개발비의 유효이용을 고려하여 재검토. 당초목적은 달성하고 있는가. 왜 NEC가 철퇴하였는가 등의 이유 등을 조사하여 현 단계에서 재검토해야 함. 세계 제일을 지향할 필요는 없음.
  - 슈퍼컴퓨터의 국가전략을 재구축해야 함. 종래의 검토자 이외에 새로운 연구자를 참가시켜 새로운 논의를 공개하면서 진행되어야 함. 현상은 슈퍼컴퓨터의 거함거포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가? 경쟁의 룰이 변화할 가능성은 없는가? 세계적인 입장에서 위치를 검토해야 함. 아마 일본의 첨단기술 지원에 관한 형태를 바꾸어야 하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전략을 재검토를 면밀히 하는 것은 어떤가?

- 도요타도 F1에서 철퇴하였음. 어렵겠지만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 함. 연구자가 꿈을 좇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인이 거액의 세금을 투입하는 의의가 있다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없다면 OK라고 할 수 없음. 미일공동등도 검색해야 함.
- (결론) 차세대 슈퍼컴퓨팅기술 추진에 대해서는 폐지 1명, 예산계상 불인정 6명, 예산요구 감액 5명으로 감액의 내용은 반액 이상이었음. 당 WG은 '계획의 동결'로서 내년도의 예산은 거의 불인정에 가까운 감축으로 결론을 내림.

## 2) 검토의견에 대한 각계의 반응

- 이미 사업분류 실시 이전부터 '종합과학기술회의'가 과학기술예산에 관해 상당히 철저히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쇄신회의에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산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사업분류 자체가 중장기적 시야를 고려해만 하는 과학기술을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선진 각국이 나라의 위신을 걸고 슈퍼컴퓨터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동결하면 다른 나라에 추월을 당한다.(노요리 요시지 이화학연구소 소장)
- 일본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이노베이션을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을 꾀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과학기술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미타라이 후지오 경 단련 회장)
- 하토야마 수상: 과학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에 대해 논의를 멈추고 생각할 필요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가와바타 문부과학성 장관: 하토야마 내각의 방침은 과학기술의 중시이므로 예산확보를 지향할 방침이다.
- 간 나오토 과학기술담당장관: 슈퍼컴퓨터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평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사업분류가 최종결론은 아니다.

## 부록 2 사업분류에 사용한 사업설명서 지표 검토 결과 (일부)

사업	지표 수	결과 지표	비 고
1-1	4	0	목표치 설정이 실적치에 근거하지 않음
1-2	3	3	목표치 설정이 실적치에 근거하지 않음
1-3	8	0	* 5개 사업으로 구성, * 유사한 사업에 동일 지표 사용
1-4	1	1	목표치 설정의 근거 미약
1-5	3	1	목표치 설정의 근거 미약
1-6	2	1	
1-7	2	1	* 결과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당 사업을 통한 기여도를 분리할 수 없음
1-8	2	2	* 결과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표와 당 사업목적과의 인과관계 불명확
2-1	1	1	* 결과지표 사용하고 있으나 당 사업을 통한 기여도를 분리할 수 없음
2-2			지표 설정하지 않음 (초년도 사업)
2-3	4	0	목표치 설정의 근거 미약
2-4	2	1	* 2개 사업이 동일한 지표 사용
2-5			* 결과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표와 당 사업목적과의 인과관계 불명확
2-6	3	0	* 4개의 사업으로 구성, * 3개 사업은 지표 설정하지 않음 * 제시된 지표도 사업목적과 전혀 무관
2-7	2	2	
3-1	9	8	* 3개의 사업으로 구성, * 결과지표 8개 모두 만족도
3-2	2	0	목표치가 구체적이지 못함
3-3	16	2	* 2개 사업으로 구성, * 결과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당 사업을 통한 기여도를 분리할 수 없음
3-4	8	3	* 4개의 사업으로 구성
3-5	5	0	* 4개의 사업으로 구성, 2개 사업의 지표가 동일 * 1개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음
3-6	12	3	* 4개의 사업으로 구성, * 1개 사업은 지표를 설정하지 않음 * 1개 사업은 전년도와 다른 지표 사용
3-7	5	0	* 2개 사업으로 구성, 1개 사업은 지표를 설정하지 않음
3-8	1	0	* 2개 사업으로 구성, 1개 사업은 지표를 설정하지 않음

# 자발적 협약의 이슈와 시사점: 미국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Climate Challenge Program)을 중심으로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kheo@kipf.re.kr)

자발적 협약은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내는 비규제적 정책수단”을 뜻한다. 국내에서도 환경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다양한 자발적 협약이 시도되고 있지만, 급속한 성장에 비해 자발적 협약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I. 서론

자발적 협약 (Voluntary Agreement)은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내는 비규제적 정책수단”을 뜻한다. 자발적 협약은 1990년대 들어 OECD 국가 내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폭발적으로 그 사용이 증가하였다. 국내에서도 환경,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유럽의 경우 1998년에 300여개의 자발적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는 2002년 기준으로 200여개의 자발적 협약이 도입되어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는 1999년 기준으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2개국에서 350여개의 자발적 협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다양한 자발적 협약이 시도되고 있지만, 급속한 성장에 비해 자발적 협약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어느 분야에서 몇 개 정도의 자발적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우며, 협약의 관리도 자발적 협약을 도입한 정부의 관련부처에서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실제 협약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발적 협약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효과분석을 통해 자발적 협약의 개선과 조정이 가능하나, 현재까지는 자발적 협약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발적 협약에 대한 기존 문헌과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자발적 협약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이슈와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Ⅱ장에서는 자발적 협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문헌을 검토하여 자발적 협약의 참여결정요인과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자발적 협약의 다양한 종류와 형태에 대해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도입되어 시행중인 자발적 협약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미국 에너지발전 산업분야에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던 자발적 협약 중의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Climate Challenge Program)의 참여요인과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자발적 협약에 대한 이슈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Ⅴ장에서는 자발적 협약의 개선방안과 성과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경제적 유인제도와 자발적 협약은 저비용의 정책수단을 원하는 정부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기업들은 각자에 해당되는 효율적인 오염저감수단을 유연하게 시행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환영받는 윈윈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 II. 자발적 협약

### 1. 자발적 협약의 도입

기존의 환경문제와 에너지 이슈를 다루는 정책수단은 주로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를 통해 이루어졌다. 명령과 통제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이나 대기기준 등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배출하는 기업들의 배출 현황과 배출 저감장치를 일률적으로 직접 규제하고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는 방식이다. 명령과 통제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입법과정과 시행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그 효율성에 대해 불만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 재원의 부족과 정부 사업 시행시 비용효과성에 대한 관리가 점차 강화되면서 더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얻는 정책수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경제적 유인제도와 자발적 협약은 저비용의 정책수단을 원하는 정부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기업들은 각자에 해당되는 효율적인 오염저감수단을 유연하게 시행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환영받는 윈윈 전략(Win-win)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자발적 협약은 기업의 오염저감 비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도 쉽게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간의 규제자-피규제자의 적대적 상호관계를 탈피하여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적 상호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1990년대 들어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급격히 도입되기

대부분의 자발적 협약은 참여자에게 가입에 따른 혜택을 주는데, 주로 기술과 정보의 지원, 기업의 홍보를 약속하고 있으며, 아주 드물게 규제를 완화시켜 주기도 한다.

시작하였다. 자발적 협약은 특히 명령과 통제를 도입하기에는 기업의 반발이 너무 큰 기후변화 협약이나 전체 산업계에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기 힘든 화학물질 배출 분야 등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기후변화 분야의 경우, 유럽국가에서는 정부의 직접규제방식과 경제적 유인방식, 자발적 협약이 동시에 정책 조합 (Policy Mix) 형태로 모두 사용되었으며, 미국과 호주의 경우 전적으로 자발적 협약에 의존해 왔다. 2006년 미국 환경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54개의 자발적 협약이 환경청 주도하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18개의 협약이 기후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각의 예산은 기존의 명령과 통제 방식보다는 작은 편이며 중간값은 492,500달러에 해당한다 (Koehler, 2007).

대부분의 자발적 협약은 참여자에게 가입에 따른 혜택을 주는데, 주로 기술과 정보의 지원, 기업의 홍보를 약속하고 있으며, 아주 드물게 규제를 완화시켜 주기도 한다. 참여하는 기업은 이러한 정부의 혜택을 받는 것 이외에도, 장래 계획중인 강제적 규제의 도입을 막거나 연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기도 한다.

## 2. 자발적 협약의 유형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발적 협약의 유형 분류는 OECD (1994)에 기반한 것으로, 누가 협약을 주도하고 디자인하는지에 따라 정부주도형 자발적 협약 (Public Voluntary Program), 산업계 주도형 자발적 협약 (Unilateral Agreements), 협상형 자발적 협약 (Negotiated Voluntary Agreements) 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인 정부주도형 자발적 협약 (Public Voluntary Program)은 참여하는 기업이 정부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것을 약속하고, 참여의 대가로 기술적 지원이나 기업 이미지 향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형태이다. 대부분의 자발적 협약이 이 유형에 속하며 대표적인 협약으로는 미국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33/50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Climate Challenge Program)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산업계 주도형 자발적 협약 (Unilateral Agreements)은 기업 또는 산업조합이 독자적으로 환경성과를 향상시킬 것을 선언하는 형태이며 ISO14000과 미국 화학제조업회의 Responsible Care 등이 이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협상형 자발적 협약 (Negotiated Voluntary Agreement)은 정부와 기업 (혹은 산업연합) 이 공동으로 환경목표와 수단을 결정하는 형태로서 정부주도형의 자발적 협약보다 참가

조건이 많고 까다로운 반면 그에 해당하는 보상도 많이 제공되며 미국의 Project XL이 이에 해당한다.

### 3. 자발적 협약의 효과성

자발적 협약은 정부와 산업계 양쪽의 환영을 받으며 도입되었지만, 실제 자발적 협약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은 협약의 참여와 이행이 대부분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자발적 협약이 참여자의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벌칙과 금지조항이 없다면, 산업계의 자발적 협약은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Grief, 1997; Scholtz, 1984). Lyon (2003)은 강제적 프로그램은 당근과 채찍이 모두 있지만 자발적 협약은 당근만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분의 환경 선도그룹만 자발적 협약에 참여할 것이며, 따라서 자발적 협약이 강제적 규제정책처럼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Lyon(2003)은 자발적 협약은 강력한 강제적 규제가 정치적 저항에 부딪혔을 때 사용되는 약한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자발적 협약이 이전의 명령과 통제방식과 경제적 유인책과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대상자의 정책순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제도주의 이론에서는 자발적 협약에 따르는 제도의 구조가 비공식적인 강압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및 모방적 동형화를 통해 참여자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DiMaggio & Powell, 1991; Scott, 1995). 협약이행 진척도 부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순응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King and Lenox, 2000), 새로운 규범과 가치의 등장으로 조직적으로 가치있는 행동에 대한 참여자의 선호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Gunningham, 1995; Hoffman, 1999). 또한 자발적 협약은 모범사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따라서 조직적 학습과 조직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Kraatz, 1998).

실제 자발적 협약이 참여기업의 평상시(business as usual) 성과 이상으로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켜 자발적 협약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도 1990년대 후반부터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ISO14000 등의 산업계 주도형 자발적 협약 (Unilateral Agreements)에서는 참여기업의 환경성과가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고

자발적 협약은 협약의 참여와 이행이 대부분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국내에서도 환경개선,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절약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자발적 협약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있으나, 자발적 협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 주도형 자발적 협약 (Public Voluntary Program)의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 이전보다 우월한 성과를 내지 않거나, 오히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보다 저조한 성과를 낸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sup>1)</sup>.

따라서 자발적 협약을 고안해 내고 많은 수의 체결대상자를 모집하여 체결을 발표하였다는 것만으로 자발적 협약이 성공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 III. 자발적 협약의 국내 현황

#### 1. 국내 현황

국내에서도 환경개선,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절약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자발적 협약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발적 협약은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1990년대 중반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본격적인 자발적 협약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현준, 2007; 문태훈, 2008). 자발적 협약과 관련하여 1999년 12월에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 2항<sup>2)</sup>이 신설되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 9월에 환경부 고시 (제2002-139호)인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이 만들어졌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2조 1항<sup>3)</sup>과 2항<sup>4)</sup>에서 자발적 협약의 시행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1999년 이래 두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의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자발적 협약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1999)의 경우 2009년 현재 1,512개소(산업부분 1,323, 건물부분 189)가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 전자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화학물질 배출저감 등의 목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래 <표 1>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자발적 협약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발적 협약의 시행과 관리가 단일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표 1>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만 포함시켰다<sup>5)</sup>. <표 1>에 따르면 현재 24개 정도의 자발적 협약을 파악할 수 있으며 천안시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발적 협약을 제외하면 전부 환

1) 자발적 협약의 기존 실증적 연구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Koehler (2007)을 참고할 것.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 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5)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발적 협약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표 1>에 파악된 것은 2000년 이후에 시행된 것으로서, 실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발적 협약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발적 협약의 목적으로는 1회용품 및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과 에너지 절약, 오염물질 저감을 추진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의 형태로는 <표 1>에 표시된 협약 모두 정부가 협약의 목표와 범위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정부주도형 자발적 협약 (Public Voluntary Program)임을 알 수 있다. 협약의 내용을 보면 각 협약에서 대상으로 하는 산업과 오염관리의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협약의 내용을 보면 각 협약에서 대상으로 하는 산업과 오염관리의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우리나라 자발적 협약 시행 현황**

사업명	주관부처	체결일자	체결기관	목적
김해 대포천의 수질 개선·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02. 04.	김해시	대포천의 수질을 깨끗이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주민의 자율적인 수질개선 운동이 전국에 확산되는 계기를 삼고자 체결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03.~2012. (4대정유사) 2007.~2016. (한국석유공사)	SK, GS칼텍스 등 5대 정유사 및 한국석유공사 1,116개사업장	토양오염조사 및 토양 복원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결
페인트 VOC 저감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04. 01.	벽산페인트 등 총 7개 기업	건축용과 자동차보수용 페인트의 VOC함량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체결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30/50프로그램)	환경부	2004. 12. ~2009.	POSCO, 한화화학 등 9개 기업 (17개 사업장)	화학물질의생산·사용과정 환경으로 배출되는유해한물질을기업체 스스로 줄이도록유도하기위하여체결
특정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05. 07. ~2010.	포스코, LG화학, 현대시멘트 등 철강·화학·시멘트분야 19개 기업참여	다이옥신 등 특정 잔류성 유기물질의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배출저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체결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05. 09.~2008. (제1차) 2006. 12~2009. (제2차)	(제1차)POSCO, 삼성전자 등 총 30개기업 (제2차)롯데백화점, 현대중공업 등 총 17개기업	민간부문에서의 자율적인 친환경 상품 생산 및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체결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통합감축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05. 09.	GS칼텍스 등 23개 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노력을 통하여 지구환경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공헌하고자 체결
광양만권 대기오염저감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05.10. ~2010.	POSCO 광양제철소 등 15개 사업장	기업의 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삭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도 보장하고 산업체의 지속적인 발전도 도모하고자 체결

〈표 1〉의 계속

사업명	주관부처	체결일자	체결기관	목적
울산지역 5-15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06. 03. ~2010.	SK울산공장 등 23개 사업장	향후 5년 동안 이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5%를 줄이고자 체결
대산·당진지역 5-18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06. 12. ~2011.	현대오일뱅크 등 대산·당진지역 10개 기업	향후 5년 동안 이 지역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8%를 줄이고자 체결
프탈레이트가소제의 용도 제한을 위한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07. 09.	LG화학 등 7개 기업 및 한국완구 공업협동조합	국민 특히 민감·취약계층인 어린이 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
조선업 VOC 저감 5-30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07. 11. ~2011.	현대중공업 등 9개 대형조선회사 및 4개 자치단체 (부산, 울산, 경 남, 전남)	조선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자발적으로 줄여나가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기업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체결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 (현재 생산자 책임재 활용제도로 전환되었을 가능성 있음)	환경부	2008. 01.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체 결하되, 최대 3년으로 제한)	한국윤활유공업 협회 등 9개 사업 자 단체	폐기물로 발생된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하고자 체결
건강/미용류 제품군 포장폐기물 줄이기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08. 05. ~2012.	LG생활건강 등 18개 제조 및 유 통 업체	건전한 생산·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판촉용 포장재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체결
식품군 포장폐기물 줄이기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08. 07. ~2012.	농심,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등 24개사	건전한 생산·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판촉용 포장재로 인 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데 적극 동 참하고자 체결
화장품, 주류, 면도기 제조·유통업체간 판촉용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08. 12. ~2012.	제조업체 24개사 및 백화점 5개사 등 29개사 참여	대형유통 매장 중심으로 증가하는 판촉용포장재(프로모션팩) 사용 억제 를 위한 관련업체의 자발적 이행 방 안 마련을 위해 체결
-가스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한- LP가스안전공급 자발적 참여 협약	천안시	2009. 03.	천안시 LP가스판 매협회, 한국가스 안전공사	LP가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안전 도시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결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금강유역 환경청	2009. 04.	충청지역 삼성계열 환경 친화기업 6개사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생태·경관보 전지역(소항사구)과 특정도서(옥도) 의보전·관리를 위해 체결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09. 04.	롯데칠성음료, 진로 등 17개사	페트병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제품 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체결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09. 05.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휴게음식점 업계(13개 업체, 17개 브랜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함으 로써 저탄소 녹색 실천운동에 앞장서 기 위하여 체결

〈표 1〉의 계속

사업명	주관부처	체결일자	체결기관	목적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09.06.	금복주, 무학 등 10개 소주사	소주병 재사용 확대를 통한 자원 순환성 향상 추진을 위해 체결
재생아스콘 사용촉진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09.07.	조달청, 서울시 등 20개 공공기관 및 관련협회	공공기관의 재생 아스콘의 무사용제도 시행(2010. 06. 10)에 앞서 의무사용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체결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환경부	2010. 05.	(건설업계)현대건설 등 도급 순위 상위 10개사 및 SH공사 (관련단체)한국건설경영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4개단체 (기타)서울메트로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주도하고 석면에 의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	에너지 관리공단	체결연도로부터 5년간 유효	건물부문-삼성버랜드 리조트사업부 등 200여개 사업장 산업부문-SK, GS칼텍스 등 1300여개 사업장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기후 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체결

자발적 협약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자발적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 2. 자발적 협약의 이슈

자발적 협약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자발적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자발적 협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너무 낮게 책정된 경우이다. 오염물질 저감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협약의 경우, 달성 목표가 너무 낮다면, 참여기업이 평상시의 운영 (business as usual)만으로도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협약 자체가 별로 필요없는 것이 된다. 이런 경우 오히려 참여기업들은 평상시대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발적 협약의 혜택은 전부 누리는 오용의 행태를 보이게 된다. 둘째로는, 자발적 협약 자체가 대부분 협약내용과 목표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도의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의 혜택은 모두 취하지만, 참여의 의무는 다하지 않는 무임승차의 유인이 될 수 있으며 무임승차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됨

기업의 실적보고서는 참여기업이 자발적 협약과 상관없는 평상시 운영을 했을 때보다 자발적 협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었는지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함으로써 자발적 협약으로 인한 효과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으로써 자발적 협약 전체의 효과성은 떨어지게 된다. 셋째, 자발적 협약의 도입과 시행에는 많은 관심이 쏟아지지만 실제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는 자원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흐지부지되는 경우이다. 참여기업의 자발적 협약의 해지 비율이 증가하거나 협약 자체가 중간에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넷째는, 자발적 협약의 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음으로써, 실제 자발적 협약이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간혹 협약의 도입시에 성과에 관한 보고나 평가의 방식을 지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는 이행평가 위주로 성과가 관리됨으로써 자발적 협약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 3. 자발적 협약의 성과평가

자발적 협약의 성과는 협약을 주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실적 보고서나 자체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어 왔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에 관한 자발적 협약의 실적보고서는 협약의 성과를 “자발적 협약 사업장의 2000년도 에너지 비용 4,074억원 절약, GDP 4.6%에 해당하는 24조원 매출액과 맞먹어...” 혹은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획기적 노력으로 3년간 배출량 65% 저감” 과 같은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협약 자체가 굉장한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이러한 보고서에 나온 실적은 실적의 비교기준으로 삼는 시기(baseline)와 측정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실적보고는, 참여기업이 자발적 협약과 상관없는 평상시 운영(business as usual)을 했을 때보다 자발적 협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었는지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함으로써 자발적 협약으로 인한 효과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의 실증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는 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서 양적으로 많아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자발적 협약이 협약의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많은 성과평가 연구가 객관적인 성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일부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성과평가의 기준(baseline)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대상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따라 측정되는

성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협약이 없었을 경우의 평상시 운영”에 최대한 가까운 평가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OECD (2003)에서 제시하는 자발적 협약의 효과성 판단 기준은 협약의 성과평가에 있어서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OECD (2003)의 권장 사항은 협약이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발적 협약의 목표가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되었는가? 둘째, 주어진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셋째, 자발적 협약으로 인해 달성된 효과는 어느정도인가? 에 대한 평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자발적 협약의 성과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미국의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중의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Climate Challenge Program)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OECD (2003)의 권장사항은 협약이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발적 협약의 목표가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되었는가? 둘째, 주어진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셋째, 자발적 협약으로 인해 달성된 효과는 어느정도인가? 에 대한 평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IV. 자발적 협약의 성과분석: 미국 에너지부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Climate Challenge Program)”<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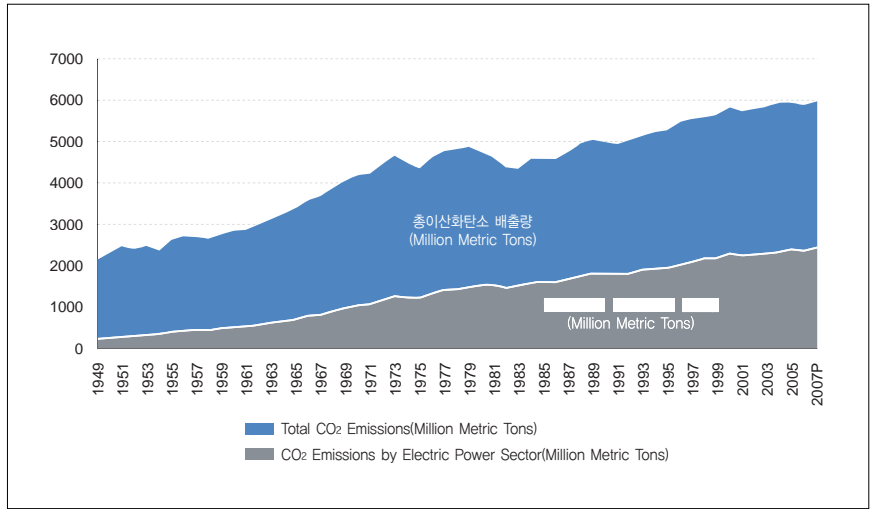
##### 1. 미국의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량과 기후변화 정책

1992년 교토협약이 만들어질 당시 미국은 이산화탄소의 최대 배출국이었으며 1990년 기준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23.2%를 배출했다. 이후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그림 1]에서 보듯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배출량은 1990년도 배출량 대비 17%가 증가하였다.

6) 미국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Climate Challenge Program)에 대한 실증연구는 Heo (2009)에서 인용한 것임.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은 정부주도형 자발적 협약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참여하는 전력회사는 온실가스를 저감, 회피, 격리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각종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미국의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 추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클린턴 정부에서 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규제의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산업계의 강력한 정치적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직접규제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 자발적 협약과 R&D 사업 추진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행동계획 (Climate Change Action Plan: CCAP) 이며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Climate Challenge Program, CCP)”은 기후변화 행동계획에 포함된 여러 개의 자발적 협약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CO<sub>2</sub>) 정책에 있어 현재까지도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수준의 전국적인 규제방안이 설립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부분을 자발적 협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기후변화정책과 관련된 185개의 자발적 협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정치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으며 전국적인 배출권 거래제도(Cap and Trade program)와 강제적인 배출 보고 프로그램이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현안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국적인 규제나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 협약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Climate Challenge Program, CCP)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와 전력회사 간에 체결한 자발적 협약이다. CCP는 전기발전 산업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발전분야는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미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를 넘게 배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24개의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미국 전체 발전량의 71%를 넘게 차지하는 650개 전력회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자발적 협약이다. CCP는 정부주도형 자발적 협약(Public Voluntary Program)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참여하는 전력회사는 온실가스를 저감, 회피, 격리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각종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CP에 참여하는 발전회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의무사항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이나 제재는 없다.

- 온실가스의 저감, 회피, 격리를 위한 방안 수행<sup>7)</sup>
- 활동과 성취도를 매년 온실가스저감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 (1605b 프로그램)에 보고
- 진척도에 대한 평가와 조정에 대한 토론을 위해 주기적으로 에너지부와 상담

CCP에 참여하는 기업은 협약 참여에 대한 혜택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속받았다. 이 중 자발적 협약의 시행으로 감소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향후 전국적인 규제정책의 시행시에 크레딧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항목은 자발적 협약에 대한 강한 유인으로 작용하였다<sup>8)</sup>.

- 친환경기업으로 대중에게 인식됨
-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 향후 강제적 규제(배출거래권제도) 시행시 사용할 수 있는 배출 저감량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가능성

## 3.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Climate Challenge Program, CCP)의 성과평가

CCP의 주관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의 보고서는 기업이 제출한 성과자료에 기반하여 “CCP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자발적 온

CCP에 참여하는 기업은 협약 참여에 대한 혜택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속받았다.

- ① 친환경기업으로 대중에게 인식됨
- ②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 ③ 향후 강제적 규제(배출거래권 제도) 시행시 사용할 수 있는 배출 저감량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가능성

7) CCP 참여기업은 온실가스의 저감, 회피, 격리를 위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활동을 해야 한다.

- 산업별로 추진되는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참여
- 2000년까지 전력회사의 온실가스를 1990년 배출량 이하로 일정량을 줄일 것
- 2000년까지 전력회사의 온실가스를 1990년 배출량 수준으로 줄일 것
- 전력회사의 온실가스를 일정량 줄일 것
- 온실가스배출 비용 (배출량/발전량)을 일정수준까지 줄일 것
-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나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런 프로젝트나 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할 것

8) 그러나 이러한 크레딧을 인정해 주는 것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CCP의 참여한 기업에게 협약 이행의 동기를 많이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능한 한 많은 대상기업을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 역시 자발적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한 조건이다.

실가스 저감 프로그램이며 협약에 약정된 배출량보다 25%를 더 많이 감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에너지부에서 매년 수집하여 발표하는 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자료를 사용하여 CCP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 (Welch et al, 2000; Delmas & Montes-Sancho, 2007)에서는 CCP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온실가스 저감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CCP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비교집단과 기준선을 구축하여 실제 CCP의 성과를 측정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분석과는 달리 다양한 성과를 측정하는 다수의 종속변수를 사용하여, 자발적 협약이 참여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행태 변화가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발적 협약의 참여 결정 분석

분석의 대상은 CCP가 시작되기 직전 해인 1994년부터 CCP의 최종연도인 2000년 사이에 발전시설을 운영했던 전력회사들이며, 이 중에서 순발전량과 이산화탄소 발전량이 양(+)의 값을 갖는 전력회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대상기업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가능한 한 많은 대상기업을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 역시 자발적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한 조건이기도 하며, 더불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실제 자발적 협약의 성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되어 왔던 회사의 규모, 전력회사의 소유권, 화석연료의 비율, 소비자와의 근접성, 이익단체의 영향, 정부의 규제 등이 독립변수로 모델에 포함되었다.

〈표 2〉 CCP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CCP 참여 (참여=1 or 불참=0)
모델	Probit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전력회사의 규모(순 발전량)	0.29 (0.04) ***
전력회사 소유권 (민간=1 or 공공=0)	0.24 (0.20)
화석연료비율	0.12 (0.22)
지역주민 판매비율	0.30 (0.22)
환경운동단체 회원 비율	0.61 (0.18) ***
주정부의 환경규제관련 지출	-0.25 (0.13) *
상수	-5.21(0.62) ***
R <sup>2</sup>	0.33
N	495

주: \*\*\* Significant at .01, \*\* Significant at .05, \* Significant at .10

주목할 만한 것은 주정부의 환경규제의 강도가 클수록 자발적 협약의 참여도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다른 강제적 규제에 순응하는 비용이 클수록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노력은 약해진다는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표 2〉에서 보듯이, 대상기업에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력회사의 성격(규모), 외부의 압력(이해관계자의 압력과 정부의 규제)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회사가 입지한 지역에 환경운동단체 회원 비율이 높을수록, 주정부의 환경규제 관련 지출이 작을수록 전력회사의 CCP 참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회사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에 더 잘 드러난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정부의 규제나 지역단체의 활동의 대상이 되기 쉽다. 지역 내 환경단체의 비율은 지역 내 환경이슈와 관련된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대변하며, 이 결과는 지역 내 환경 관심도가 높고 활동이 활발할수록 전력회사 역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주정부의 환경규제의 강도가 클수록 자발적 협약의 참여도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다른 강제적 규제에 순응하는 비용이 클수록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노력은 약해진다는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2) 자발적 협약의 성과분석

자발적 협약의 성과분석은 CCP의 참여가 실제 대상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활동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 결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하는 결과로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최종 성과를 판단하는 전력회사의 이산화탄소 배출 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차분분석 모델의 결과는 CCP에 참여한 전력회사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성향점수분석 모델의 결과는 CCP에 참여한 전력회사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강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ext{이산화탄소 배출 강도} = \text{이산화탄소 배출량} / \text{순발전량}$$

전력회사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전략을 택할 수 있다. 첫째, 이산화탄소 발생비율이 높은 화석연료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수력이나 원자력 등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원 사용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높은 비용과 상대적으로 많은 교체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전기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거나, 화석연료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비율이 낮은 연료로의 교체를 선택할 수 있다.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 천연가스는 단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

$$\text{화석연료비율} = \text{화석연료 발전량} / \text{총발전량}$$

$$\text{화석연료의 이산화배출 강도} = \text{이산화탄소 배출량} / \text{화석연료 발전량}$$

이상의 세 가지 성과변수에 대해 성향점수분석(Propensity Score Matching)과 차분분석(Difference-in-Differences Model)의 방법을 사용하여 1994년과 2000년 사이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아래 <표 3>의 분석 결과는, 두 가지 분석 모델 모두 CCP의 최종 성과인 이산화탄소 배출 강도(Model 1)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행태 변화와 관련된 성과변수에 대해서는 각각의 모델이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차분분석 모델의 결과는 CCP에 참여한 전력회사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성향점수분석 모델의 결과는 CCP에 참여한 전력회사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단위화석연료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강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CCP 참여의 성과분석

분석모델	Model 1	Model 2	Model 3
	이산화탄소 배출 강도	화석연료비율	화석연료의 이산화 배출 강도
차분분석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0.026 (3.38%)	-0.035 ** (-4.87%)	0.004 (0.38%)
성향점수분석 (Propensity Score Matching)	-0.107 (-12.63%)	-0.024 (-3.3%)	-0.664 (-5.60%)*

주: \*\* Significant at .01, \*\* Significant at .05, \* Significant at .10

CCP가 목표로 했던 이산화탄소 배출 강도의 감소가 실제로 프로그램의 목적 기간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력회사의 행태에는 어느정도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모델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CCP에 참여하는 전력회사들이 평상시 운영(Business as usual)을 능가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찾을수 없었다. 다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각의 전략(Model 2, Model 3)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CCP에 참여한 기업이 각각의 행태적 변화와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각각의 모델에서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발적 협약의 참여로 인한 전략적 변화는 감지되지만, 두 모델 모두에서 검증되는 확고한(robust)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은 다양한 성과지표와 다양한 성과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자발적 협약으로 인한 전력회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CP가 목표로 했던 이산화탄소 배출 강도의 감소가 실제로 프로그램의 목적 기간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력회사의 행태에는 어느정도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위의 모델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의 엄밀한 해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CCP의 참여로 인한 전력회사의 전략적 행위 변화를 좀더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력회사보다 좀더 전기 생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발전소 단위에서의 분석<sup>9)</sup>이 더욱 정확한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분석기간을 CCP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전후 기간을 충분히 살펴본다면, CCP의 참여로 인한 효과를 좀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력회사들의 전략을 시행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설비와 연료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의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전이기간(transition period)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9) 전력회사는 하나의 발전소로 이루어진 곳도 있지만 복수의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발전소는 보통 한 가지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전기를 만들어내며, 산업계의 변화로 인한 회사의 통합함에도 불구하고 좀더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성과의 분석에 더욱 정교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외국에서 수행되었던 자발적 협약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이 글에서 인용된 미국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의 성과평가는 자발적 협약이 실제 의도했던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 4) CCP 성과평가의 시사점

CCP는 성과평가의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자발적 협약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협약의 목적이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명확성을 가지고 있으며, 협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협약의 대상이 발전산업이라는 한 가지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협약 자체가 매년 참가자가 실적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 실적을 인터넷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체보고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이다. 또한 에너지부에서 전력회사에 대한 매우 상세한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회사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의 확보가 용이하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성과 분석은 CCP의 성과평가가 그리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데이터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CCP의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대대적인 에너지 산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의 통폐합과 환경물질 배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실시 등으로 인해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CCP 이외에서 다양한 산업에 걸친 포괄적인 자발적 협약들이 실시되고 있었고,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크고 작은 정책들이 동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효과들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 V. 결론 및 시사점

자발적 협약은 기존의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강제적 규제방식이나 경제적 유인에 기반한 정책수단보다 도입과 시행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어 왔다. 제Ⅲ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환경부를 중심으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원의 재활용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정책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참가대상자를 파악하고 협약을 준비하고 디자인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투입된 반면, 실제 자발적 협약이 목적했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관심을 쏟지 않고 있었다. 외국에서 수행되었던 자발적 협약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이 글에서 인용된 미국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Climate Challenge Program)의 성과평가는 자발적 협약이 실제 의도했던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국내 자발적 협약의 도입과 시행에 있어 자발적 협약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 자체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발적 협약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의 장기적인 구축이 자발적 협약의 계획시에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누가 어떤 방법론과 모델을 가지고 어떠한 주기로 성과를 평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역시도 자발적 협약의 MOU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이다.

CCP의 성과분석에 대한 사례는 자발적 협약의 성과분석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책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영향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평가의 엄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또한 최종 성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도 평가모델을 설계할 때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평가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기간별로 자발적 협약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고 장단점이 협약 참여자와 정책 결정자에게 환류된다면, 자발적 협약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도화하는 것은 자발적 협약이 강력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거나 기업들이 자발적 협약의 의무사항은 무시한 채 혜택만을 누리는 무임승차에 대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것이다. **KIPF**

자발적 협약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의 장기적인 구축이 자발적 협약의 계획시에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현준, 「자발적 환경협약」, 『환경법연구』, 제29권 1호, 2007. 10  
 명형남, 「그들만의 허울좋은 협약, 기업들의 자발적 협약」, 월간 『함께사는길』, 2008. 4  
 문태훈,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과제, 1963~2007」, 『한국정책학회보』 제17권 3호, 2008. 9.  
 국회예산정책처, 『산업부문 에너지수요관리 사업평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을 중심으로』, 2006. 12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 평가』, 2007.10.

Delmas, M. A., & J.Montes-Sancho, M., “Voluntary Agreements to Improve Environmental Quality: Are Late Joiners the Free

- Riders?,” ISBER Publications, Institute for Social, Behavioral, and Economic Research,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Barbara, 2007.
- Grief, A, “Micro Theory and Rec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Economic Institutions Through Economic History,” In D. Kreps & K. Wallis (Eds.), *Advance sin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Vol.2, 1997, pp.79~113.
- Gunningham, N. N., “Environment, self-regulation and the chemical industry: Assessing responsible care,” *Law & policy*, 17(1), 57, 1995.
- Heo, K.,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Voluntary Environmental Programs: Three Essays on the Climate Challenge Program,”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Doctoral Dissertation), 2009
- Hoffman, A. J., “Institutional Evolution and Change: Environmentalism and the U.S. Chemical Industry,”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2(4), 1999, pp.351~371.
- King, A. A., & Lenox, M. J., “Industry self-regulation without sanctions: The chemical industry’s responsible care program,”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4), 2000, p.698.
- Kraatz, M. S., “Learning by Association?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and Adaptation to Environmental Change,”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6), 1998, pp.621~643.
- Lyon, T. P., “Voluntary versus Mandatory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Mitigation”(IssueBrief No. RFFIB03~01), WashingtonDC: Resources for the Future, 2003.
- Lyon, T. P., & Kim, E.-H., “Greenhouse Gas Reductions or Greenwash?: The DOE’s 1605b Program,” University of Michigan, (Unpublished working paper), 2007.
- Lyon, T. P., & Maxwell, J. W., “Environmental Public Voluntary Programs Reconsidered,” *The Policy Studies Journal*, 35(4), 2007, pp.723~750.
- OECD, “Voluntary Approaches for Environmental Policy: an Assessment,” OECD, Paris, 1999.

- OECD, “Voluntary Approaches for Environmental Policy: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Usage in Policy Mix,” OECD, Paris, 2003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Climate Challenge—Executive Summary, 2000.  
[http://www.climatevision.gov/climate\\_challenge/execsumm/execsumm.htm](http://www.climatevision.gov/climate_challenge/execsumm/execsumm.htm).
- Welch, E. W., Mazur, A., & Bretschneider, S., “Voluntary behavior by electric utilities: Levels of adoption and contribution of the climate challenge program to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9(3), 2000, pp.407~425.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체계의 분절화 현상과 제도적 개선방향



김춘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1. 시작하는 글

2010년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국가의 위상을 한 단계 상승시킨 해이다. 국제사회는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이하 ODA라 한다) 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7%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DA 규모가 2010년 현재 GNI 대비 0.1% 수준으로 DAC 회원국 평균(0.28%)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5년까지 GNI 대비 0.2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원조 규모 자체를 단순히 키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조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선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선진 ODA공여국은 원조대상국별로 원조의 목표에서

부터 구체적인 원조사업과 추진체계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국별 원조체계를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국별 원조지원전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무상 원조사업이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EDCF)과 외교통상부-KOICA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는 ODA 수행부처가 다원화되어 부처별 자체 ODA사업 추진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부처와 KOICA 간의 정보공유 및 사전협의의 미흡으로 인해 현재의 ODA 추진방식으로는 국별원조지원전략(CAS)의 수립 및 종합적인 정책수립·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2월에 국무총리실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ODA사업을 통합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향후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를 규정하게 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이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도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간의 우리나라 ODA사업 추진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중장기적 차원에서 ODA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분절화된 ODA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실적 현황

ODA는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를 포함하는 양자간 원조,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출연·출자금 등의 다자간 원조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는 상당히 다원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 <표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양자간 원조 중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다자간 원조 중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이,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대한 출연·출자금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ODA 사업 추진체계

구분	협력형태	실시기관	소관부처
양자간 ODA	무상원조(물자지원, 재난구조, 기술협력 등)	국제협력단(KOICA)	외교통상부
		기타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	
다자간 ODA	유상원조(경협차관)	한국수출입은행(EDCF)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금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UN 등 국제기구 분담금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http://www.koreaexim.go.kr> (2010. 6. 24).

우리나라의 ODA 체계상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관할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시행하며,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가 관할하고 KOICA가 시행하는 형태로서, 유·

무상 원조가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20여개의 중앙부처 및 기관들도 교육, 과학, 정보통신, 농업 등 전문성을 내세워 ODA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 9개 광역자치단체도 지방정부의 국제화를 명분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ODA사업은 '다원화·분절화된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표 2> 부처(기관)별 ODA 지원 실적

(단위: 백만달러, %)

기관명	2009		
	양자간	다자간	ODA 합계
외교통상부 및 KOICA	293.70 (50.61)	37.00 (15.71)	330.70 (40.54)
기획재정부 및 수출입은행(EDCF)	236.79 (40.80)	9.21 (3.91)	246.00 (30.15)
기타 부처 및 기관 <sup>1)</sup>	46.55 (8.02)	189.33 (80.38)	235.88 (28.91)
지자체 9개 <sup>2)</sup>	3.23 (0.56)	-	3.23 (0.56)
합계	580.27 (100.0)	235.53 (100.0)	815.81 (100.0)

주: 순지출 기준이며 잠정치임. ( ) 안은 비중임.

1) 부처(기관)은 '09년도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 26개 부처(기관)이 포함됨. 기타 부처 및 기관 실적의 65.14%(153.65백만달러)는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한 다자간 원조임.

2) 지자체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가 해당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9년도 우리나라 ODA 지원규모(순지출 기준)는 총 815.8백만달러(1\$ 1200원 기준, 9,789.6억원)로, 양자간 원조가 580.3백만달러(무상원조 366.1백만달러, 유상원조 214.1백만달러), 다자간 원조가 235.5백만달러를 기록했다. 외교통상부와 KOICA의 지원실적이 330.7백만달러로 전체 ODA 중 40.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246백만달러(30.15%), 그리고 기타부처 및 기관이 28.91%(교육과학기술부 22.71백만달러, 행정안전부 9.35백만달러, 다자간 원조가 주종을 이루는 보건복지부 15.89백만달러, 농림수산



식품부 12.01백만달러, 한국은행 153.65백만달러 등), 9개 광역자치단체가 0.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3. ODA의 통합적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제반 문제점

우리나라 ODA사업 추진체계가 다원화·분절화되어 운영되어 오늘 가운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ODA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ODA사업은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각기 다른 법 규범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수행 부처 및 기관의 ODA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이 극히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에 일정한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1) ODA예산의 사전적·종합적 조정체계 부재

ODA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사전에 별도의 ODA예산을 편성하고 배정받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이후에 ODA 실적으로 그 내역을 제출할 뿐이므로, 국가 차원의 사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ODA 정책수립 및 조정이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ODA사업을 집행하는 각 부처 및 기관의 ODA 실적은 매년 부처(기관) 담당자가 직접 분야별로 분류하고 ODA 사업 건별로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보고시스템에 입력하며, 수출입은행의 검토 과정 후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취합해서 외교통상부를 거쳐 OECD DAC에 제출하게 된다<sup>1)</sup>. 각 부처의 ODA 사업은 사후적으로 실적을 보고하는 것 외에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게다가 ODA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외교통상부 및 기획재정부와 업무조정이나 정책협의를 하도록 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ODA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특히, 개별 부처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ODA사업의 경우에 성과에 기반한 중장기적 국별 지원계획 없이 일회성 프로젝트 위주로 이루어지고 단순 국제교류 목적으로 산발적으로 원조사업이 진행되는 등 예산낭비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표 2>에서 보았듯이, 외교통상부-KOICA와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기타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양자간 원조는 49.78백만달러('09년 기준, 잠정치)로 전체 양자간 원조 중 8.58% 수준이나, 각 부처 ODA 지출이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정부가 2015년까지 우리나라 ODA 규모를 GNI 대비 0.25% 달성을 목표로 하여 그 금액이 약 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 부처 및 지자체의 ODA사업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는 ODA사업의 통합적 조정체계 정착이 시급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것이다.

#### 2) ODA사업의 기관간 중복 지원과 전문성 부족

현재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이원화된 한국의 ODA 집행체계는 원조사업 수행시 부처 간 사전협의 없이 사업발굴 및 추진, 협정체결 등의 중복 실시로 인해 원조사업의 효율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종합적인 계획도 없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한국의 무상원조사업은 부처별 중복성으로 인한 ODA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30여개 부처와 기관, 지자체가 개별적 입법과 예산확보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무상원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KOICA가 진행하는 무상사업과 중복되거나 같은 분야에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아래 <표 3> 2009년도 양자간 원조의 분야별 현황에서 교육, 보건,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농림수산업,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통신 등에 다수의 부처 및 기관,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1) 한국수출입은행 내부자료(2010.6).

수 있다.

〈표 3〉 2009년도 양자간 원조 분야별 현황

(단위: 백만달러)

분야	사업수행 기관	금액(총지출)
교육	KOICA, EDCF, 외교부, 교과부, 행정안전부, 문광부, 복지부, KDI, KIEP,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	67.83
보건	KOICA, EDCF, 외교부, 교과부, 복지부, 행안부, 보훈처, 경상북도	107.99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KOICA, EDCF, 외교부, 기재부, 행안부, 공정위, 국민권익위, 법무부, 통계청, 특허청, KDI,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73.23
농림수산업	KOICA, EDCF, 행안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49.07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EDCF, 외교부, 행안부, 국토부, 노동부, 문광부, 문화재청,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	4.56
통신	KOICA, EDCF, 외교통상부, 행안부, 여성부, 방통위, KDI, 부산시	70.11
산업에너지, 공업, 광업, 건설	KOICA, EDCF,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KDI	34.83
환경보호	KOICA, 행정안전부, 환경부	24.56
금융 및 재무서비스	기재부, 복지부, 행안부, KDI	1.06
통상정책 및 규정	기재부, 관세청, KDI	0.26
긴급구호	KOICA, 복지부, 전라남도	10.59
재건구호	국방부	1.38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복지부	0.09
재난방지 및 준비	복지부	0.14
기타 물자지원	전라남도	0.01
관광	농식품부	0.01
교통	EDCF	85.13
수자원위생	EDCF	33.56
행정비용	EDCF, 외교부, 교과부, 환경부	9.24
기타 다부문	EDCF, 외교부, 기재부, 교과부, 행안부, KDI, 서울시, 부산시	19.55
비배분, 비특정	KOICA, EDCF, 외교부, 복지부	23.69

주: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제외한 양자간 원조는 모두 무상원조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KOICA

부처별 ODA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 및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실시할 경우 원조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게 된다.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분야라서 부처가 해당 ODA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해당 분야에 보다 적합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부처가 그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 3) 수원국 증가 및 원조 집중도 감소

ODA에 대한 통합적 정책추진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다원화·분절화된 체계는 결국 수원국의 숫자만 늘리면서 효과는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무상원조의 대표기관인 KOICA만 보더라도, 아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무상원조 지원대상국이 146개국('09년 말 기준)에 달하고 양자간 무상원조의 경우 상위 10대 수원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44.9%('09년)로 원조의 집중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양자간 무상원조의 대표기관인 KOICA는 선택과 집중 전략 방침하에 협력대상국 중심의 무상원조를 위해 협력대상국을 2007~2008년 59개국, 2009년 56개국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협력대상국을 조정해 가고 있다.



〈표 4〉 2009년도 KOICA의 국가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국가명	무상원조 원조금액	비고
이라크	71,098	중점협력대상국
아프가니스탄	59,720	일반협력대상국
베트남	59,571	중점협력대상국
인도네시아	49,358	중점협력대상국
캄보디아	43,239	중점협력대상국
필리핀	42,711	중점협력대상국
몽골	38,272	중점협력대상국
스리랑카	36,459	중점협력대상국
라오스	35,272	중점협력대상국
페루	33,948	중점협력대상국
상위 10대 수원국	469,648 (44.9%)	
우즈베키스탄 등 136개 국가	576,175 (55.1%)	
합계	1,045,823	

이라크(71,098백만원), 아프가니스탄(59,720백만원)이 2009년도 우리나라 무상원조 1, 2위 수원국으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의 전후복구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공약을 한 만큼 그 이행을 위한 지원규모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중점협력대상국이 19개국, 일반협력대상국이 43개국이며, 이외의 84개 국가들은 수원국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 긴급지원수요 등 외교적 필요에 의해 초청연수 또는 소규모 물자지원에 국한하여 지원하고 있다<sup>2)</sup>.

ODA 사업수행기관 간 중점 협력대상국을 사전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미흡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총

원조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국가들에게 원조를 공여함으로써, 예컨대, 바하마 300만원, 아루바 600만원, 루마니아 700만원, 카보베르데 800만원, 싱가포르 900만원 등과 같이<sup>3)</sup> 한 국가나 사업에 지원하는 원조규모가 너무 작아서 규모의 경계를 이루지 못하고 원조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sup>4)</sup>.

#### 4. 종합적 ODA 정책수립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 구축

우리나라의 다원화·분절화된 ODA사업 추진체제로 인해 드러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한 정부는 2010년 2월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정책을 국무총리실에서 통합하여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고 그러한 개편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오는 7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 ODA 체계 및 추진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다고 해서 과연 지금까지 ODA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sup>5)</sup>. 법정부처 차원에서 전 부처 및 기관의 ODA 사업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통해 사업 중복을 제거하고 유·무상 원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ODA 정책 통합조정기구로 기능하게 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사업조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위원회의 조정기능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ODA사업 수행기관 간 사업 및 예산을 사전조정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

2) KOICA 내부자료(2010. 4).

3) KOICA 내부자료(2010. 4).

4)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공청회 설명자료(2010. 6).

5)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공청회 설명자료(2010.6)를 참조할 것.

ODA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성공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ODA 사업조정을 예산절차와 연계하여 ODA 사업심사 결과가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 절차와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7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 및 시행령 조항상으로는 유·무상 원조 간 조정 및 협의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추진방식대로 유·무상 원조의 개별적인 집행으로 인한 원조 효과성 저해로 이어질 여지가 여전히 남게 되므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간 조율을 통해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사업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원조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원조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OECD DAC도 2008년 우리나라 원조정책에 대해 실시한 특별검토를 통해서 ODA 규모 확대계획의 이행 및 원조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ODA정책을 총괄하는 ODA기관의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sup>6)</sup>.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원조의 총체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기능을 통합하여 ODA정책수립 및 예산조정, 집행기능까지 전담하고 유·무상원조를 모두 포괄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가칭 '국제개발협력청'의 설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원화된 원조기관을 통해 우리나라 ODA의 전략적 위상을 제고하고 개도국 원조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권을 외, (2009. 12),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책토론투리포트

## ■ 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 본 원고는 2010년 6월 30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에서 개최한 「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 일 시        2010년 6월 30일(수)
- 장 소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
- 진행순서
- 16:00~16:15    개회사 및 축사
  - ▶ 개 회 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6:15~17:30    주제발표 및 토론
  - ▶ 사 회 자    송대희 한국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 발 표 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 ▶ 토 론 자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진영 건국대 경상학부 교수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광락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가나다 순)

17:30~17:5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50            폐회



주제발표 요약

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박형수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 이명박 정부의 초기 재정정책 기조는 양호한 재정여건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감세에 집중
  - 경제위기 이전 시기는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개선되던 시기로서 2007년 통합재정수지는 이전의 적자기조(2006년 ▲1.3%)에서 0.4% 흑자로 전환
  - 이에 세부담 증가속도가 높은 소득세, 국가간 자본유치 경쟁에 중요한 법인세 등의 세부담 증가속도 완화 필요
  - 성장잠재력 확충(세부담 하락 → 경제 왜곡축소 → 경제 활성화)을 위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율 인하가 추진되었으며 동시에 고유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세 인하, 환급금 지급 등이 추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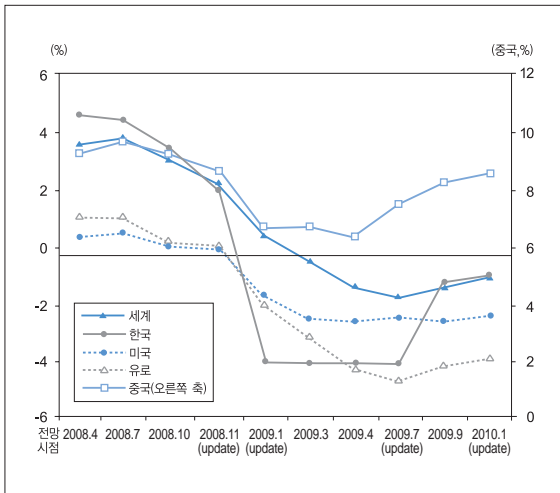
2008년 주요 세제개편 내용

	수시 개편	정기 개편 (12월)
소득세	- 유가환급금 지급	- 소득세율 인하(2단계에 걸쳐 2%p) - 기본공제 인상 및 교육비·의료비공제 확대 - EITC 지급금액 인상 및 수급요건 완화
법인세	- 과표구간 상향 조정	- 법인세율 인하(2단계에 걸쳐 3~5%p) - 연결납세제도 도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문화산업 R&D 세액공제, 접대비 손비 일률 연장 - R&D시설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환경보전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소비세	- 지방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면제, 중부세·재산세 등 감면 -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률 연장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면제 -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확대
양도 소득세		- 1세대1주택 양도세 감면요건 강화, 과세범위 조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일치
종합 부동산세		- 과표적용률 동결 및 보유세 상한 하향 - 종합부동산세를 인하

- 금융위기에 이은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2009년 경제성장률이 동시 급락
  - IMF의 2009년 성장률 전망 수정 추이

국 가	성장률 전망 조정규모 (%p)
세계경제	△5.2
한국	△8.3
미국	△3.6
중국	△3.3
유로지역	△5.4

주: 조정규모 = IMF(2008, 7) ~ IMF(2009, 4)



- 우리나라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2007년 1/4~2008년 3/4분기 중에는 30개 OECD국가들 중에서 3~10위였으나, 2008년 4/4분기에는 24위(▲3.4%)로 급락한 후 2009년 1/4분기에는 17위(▲4.3%) (2009년 2/4분기는 6위)
- 금번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아시아 경제 위기와 달리 전 세계적인 현상,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규모
- 경제위기에 대응한 재정정책 규모
  - 정부는 2008~2012년중 위기대응 재정정책 규모를 67.1조원(GDP 대비 6.9%)으로 발표
  - 2009년 한 해로 한정할 경우 위기대응 재정정책의 규모는 38.8조원(GDP 대비 4.0%)
- IMF 및 OECD에서 국제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위기대응 재정정책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IMF가 조사한 2009년 10월 중순까지 각국 정부가 발표한 2009년 및 2010년 위기대응 재정

정책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2009년 재정정책 규모는 GDP 대비 3.6%로 러시아(4.1%) 다음으로 2번째로 컸으며, G-20 전체(2.0%) 정책규모의 약 2배 수준

- 또한, OECD 조사 결과(2009년 6월)에서도 우리나라의 2008~2010년 위기대응 재정정책 규모는 2008년 GDP 대비 6.1%로 아일랜드(8.3%), 헝가리(7.7%), 아이슬란드(7.3%)에 이어 30개 OECD국가들 중에서 4번째로 크며, OECD 전체 정책규모(3.9%)의 약 2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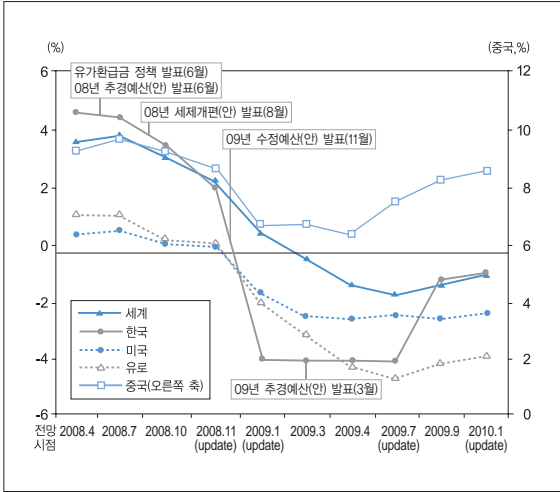
■ 위기대응 재정정책의 구성

- 한국조세연구원은 2009년 2월 보고서를 통해 경제위기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3T 원칙(Timely-적시성, Targeted-집중성, Temporary-일시성)’을 제시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2009년 위기대응 재정정책은 감세와 지출확대가 약 1:3의 비율로 G-20 국가들의 중간 수준

■ 위기대응 재정정책의 타이밍 및 집행

- 신속·과감한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은 금리인하 등 통화·금융정책과 더불어 경기급락에 선제적으로 대응

성장을 전망과 위기대응 정책 시점



• 정부는 2009년에 역대 최고수준으로 재정을 초기에 집행 (상반기 재정집행률: 2008년 49.6% → 2009년 64.8%)

■ 위기대응 재정정책의 성과

- 위기대응 재정정책의 성장률 제고 및 경기 조기 회복 효과
  - 2009년 9월 IMF 한국경제 보고서는 2009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1~1.5%p에 달한다고 평가
  -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결정과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경기급락을 대해 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세
  - 감세정책: 2008년 세계개편을 통한 감세정책은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시행되었지만, 2008년 하반기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대응 시차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하여 조속한 경기회복에도 기여
  - 지출확대 정책: 2008년 하반기 이후 확대된 정

부지출과 재정조기집행 효과가 선진국들에 비해 신속히 나타나고, 확장적 통화정책과 병행되면서 경기급락을 완충하는 데 크게 기여(2009년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 등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분기별로 1.2~1.8%p로 위기 이전인 2008년의 0.1~0.6%p의 약 4배 수준)

- 이러한 경기급락 완충 및 빠른 경기회복은 재정수지 조기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등 '경기회복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최근 남유럽 등의 재정위기 상황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었음
  - 빠른 경기회복으로 2010년 재정정책 규모를 2009년에 비해 대폭 축소시킬 수 있었음
  - 경기회복으로 인한 세입확대(국세증가율: 2009년 ▲1.7% → 2010년 +3.6%)도 재정수지 개선 및 국가채무 증가 억제에 기여
- 심각한 경제위기와 이에 대응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각국 재정이 급속히 악화
  - 최근 세계 각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악화를 동시에 경험중이며, 선진국일수록 재정문제가 심각
    - IMF의 추정에 따르면 G-20 선진국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2007년 GDP 대비 1.9%에서 2009년 9.7%로 무려 8%p나 악화되고, 5년 후인 2014년에도 재정적자 규모가 5.3%에 달할 전망
    - 대규모 재정적자로 G-20 선진국 정부부채비율은 2007년 78.2%에서 2009년 98.9%, 2014년 118.4%로 7년간 무려 40%p, 1.5배 증가할 전망(금년 들어 그리스 등 PIGS 국가의 재정위기가 금융시장 불안의 야기)
    - 반면, G-20 개도국은 재정수지가 균형(0.3% 흑자)에서 2009년 5.1% 적자로 악화되지만

- 2014년 적자규모가 1.3%로 감소할 전망이며, 정부부채비율도 40% 미만의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될 전망
- 최근 우리나라도 비록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재정이 양호한 편이지만, 금번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악화 규모가 과거 추이에 비해 매우 큼
  - 위기발생 이전인 2008년 9월 수립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09년 수지와 2009년 추경예산(2009년 3월)을 비교해 보면, 총수입이 15.2조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28.0조원 증가하여 관리대상수지가 무려 40.6조원(GDP 대비 비율로는 4.0%p)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32.2조원(GDP 대비 비율로는 3.3%p) 증가
  - 2009년 결산기준 재정적자 규모(GDP 대비 4.1%)는 관리대상수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8년 이래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5.1%)한 해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였음
  - 지난해 33.8%의 국가채무비율도 국가채무 통계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1997년 이래 가장 높았음
- 재정건전성 회복이 최대 화두로 부상
- 선진국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작년까지는 경제위기 대응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의 재정이 악화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재정건전성 강화로 재정정책 기조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로 정책기조의 이행이 가속화
  -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화 조치는 ① 경직성 세출의 구조조정, ② 세입기반 확대에 요약됨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복지지출 억제, 공무원 임금 동결 등 경직성 세출 분야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단행
  -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병행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경제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입법을 통한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및 재정규율 강화
    - 독일은 2009년 기본법(독일 헌법)을 개정하여 2016년(연방정부) 및 2020년(주정부) 균형재정 달성 법제화
    - 프랑스는 2008년 개정 헌법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한 중기재정안정화계획을 2010년 2월 발표
    - 영국도 재정책임법(2009년 12월) 제정으로 재정건전화계획(2009~2015)을 수립하고 의회 모니터링 강화
    - 미국은 법정지출 및 감세에 대한 PAYGO원칙 부활, 초당적인 대통령 직속 재정위원회 설치(2010년 2월)
    - 유럽의 재정위기 사례를 거울삼아 복지지출을 경제력에 상응한 적절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우리 정부도 금년 예산부터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작
- 2010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 및 국회의 노력으로 재정수지를 GDP 대비 약 2.3%나 개선 시킴
  - 2010년 정부예산안은 2009년 추경 대비 총지출을 10조원(3.3%) 축소하는 등 약 19조원의 재정수지 개선 도모
  - 국회도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세입증대 3.0조원(국세수입 1.8조원) 등 약 3조원 정도의 재정수지 추가 개선

2009년 추경 대비 2010년 예산안 및 확정예산

(단위: 조원)

	'09 본예산	'09 추경(A)	'10 정부안(B)	'10 확정(C)	증감 (B-A)	증감 (C-B)
총 수입	291.0	279.8	287.8	290.8	8.0	3.0
총 지출	284.5	301.8	291.8	292.8	△10.0	1.0
관리대상수지	△24.8	△51.0	△32.0	△31.0	19.0	2.8
(GDP 대비)	△2.4%	△5.0%	△2.9%	△2.7%	2.1%	0.2%
국가채무비율	34.1%	35.6%	36.9%	36.1%	1.3%	△0.8%

- 정부는 향후 재정수지를 2013~2014년 균형달성, 국가채무비율은 3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

정부의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년 10월)

(단위: 조원)

	2009 추경	2010 정부안	2011 계획	2012 계획	2013 계획	연평균 증가율
총 수입	279.8	287.8	309.5	337.6	361.7	5.6%
총 지출	301.8	291.8	306.6	322.0	335.3	4.2%
관리대상수지	△51.0	△32.0	△27.5	△16.1	△6.2	-
(GDP 대비)	△5.0%	△2.9%	△2.3%	△1.3%	△0.5%	-
국가채무비율	35.6%	36.9%	37.6%	37.2%	35.9%	-

- 향후 재정정책은 재정운영의 신속성과 재정규율을 적절히 조화시켜 재정의 경기대응기능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겠지만, 당분간 재정건전성에 치중하여야 할 것임
- 경제·재정상황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재정적자 관리정책도 이미 시행중이지만, 전 세계적인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가칭)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 현재도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건전화 목표 등이 포함되고 있지

만,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보다 높이는 운용개선이 필요

-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에는 세입확충·세출구조조정의 정책대안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수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당면한 재정악화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 등과 같은 장기적 문제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함
- 세출구조조정: 복지지출 증가 적정화 및 전달체계 효율화, 지방재정 문제의 합리적 조정, 정부정책에 의한 예산외(off-budget, 예: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BTL사업) 부채규모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대책 필요
- 세입기반 확충: 넓은세원-낮은세율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조세감면 사전제한제도 등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강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역할강화 필요
- 이 외에 재정성과관리 강화, 지출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 개선 등의 정책과제도 있음
- 우리 재정이 재정총량 측면에서는 선진국보다 양호한 상태이므로 향후 재정운용은 재정의 질적 측면(세입·세출 구조, 지출의 효과성·효율성, 재정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투명성, 재정위험 등) 개선에 치중할 필요
  - 특히 그리스 사태에서도 보듯이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거나 재정통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기초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 못지않게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책대 과정에서 예산외(off-budget) 부채 등 공공부문 전반의 리스크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대책도 필요

■ 나아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선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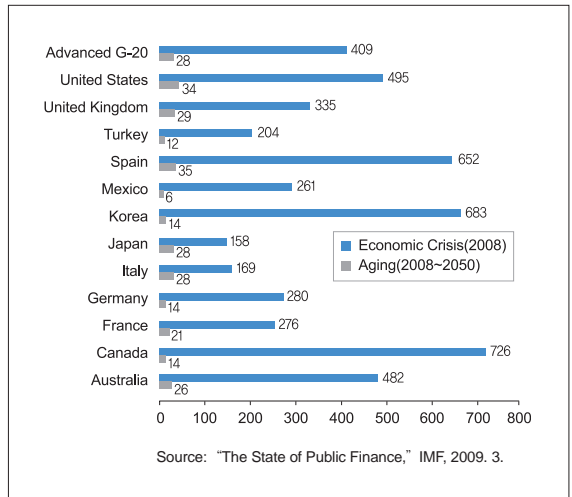
-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급속히 악화된 국가재정을 조속히 건전화시키기 위해 재정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있어, 우리도 중기재정제도 투명성·실효성 제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사전예산제도 및 재정준칙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재정준칙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한 한시적인 재정준칙과 더불어 장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정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

-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또는 세입증가율보다 일정 정도 낮게 제한하는 준칙을 도입
- 장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지지출 등 법정지출에 대해 PAYGO(Pay-as-you-go) 원칙을 도입

■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및 이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직면해 있으며 통일비용 부담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제의 구축이 시급

- IMF(2009년 3월)는 금번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부담과 향후 2050년까지 노령화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재정부담(현재가치)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향후 부담 증가가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




- 최근 분배구조 악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복지지출이 대폭 증가
- 분야별 자원배분의 중점 전환: 2003년을 전환점으로 경제 → 복지
- 최근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 9.8% (2005~2010년) ※ 총지출 증가율: 6.8%
- 외환위기 이후 주요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상 선진국 수준의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단기간 내 급속한 복지재정 확대 속에서 비효율성 누적
- 복지지출 규모는 아직 선진국보다 작지만 연금 성숙도, 경제발전단계, 고령화율, 재정여건 등 국가별 특성 및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비교해야 함
- 선진국도 1960~1980년대에 걸쳐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건전화 기조에 따라 복지지출도 정체 또는 감소
- 다만 남유럽권 국가(PIGS)는 정체 또는 감소 없이 지속적 증가로 최근 재정위기를 맞음
- 한국조세연구원의 복지지출 장기전망(2009년 및 2010년)에 따르면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 따라 복지지출 규모가 2010년 GDP 대비 10% 수준에서 2050년 21~25%로 크게 증가할 전망
- 총지출 대비 비중도 27%에서 43~48%로 높아져 재정의 경직성이 크게 증가할 전망
- 조세부담률을 20.8%(2013년 수준)로 고정시킬 경우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116~154%에 달할 전망
- 동 전망은 현행 복지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추정된 것이므로 향후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지출규모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해야 함
- 이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유지, 성장·분배의 조화로운 균형, 노령인구 관련 지출 억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지출 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 필요
- 향후 복지지출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이미 도입된(built-in) 현행 제도만으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과 복지 및 여타 분야의 세출구조조정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유지 곤란
- 이에 신규 복지제도 도입 또는 최근 도입된 제도의 지원 확대보다는 복지재정 부담의 적정수준 관리가 바람직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지출 수준 유지를 위해 장기 복지재정 전망, 법정지출 통제의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한 총량 관리체계 강화 필요

① 2009년 현재 OECD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27개국이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음. 우리 정부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는 『함께 가는 희망 한국 VISION 2030』(2006년 8월)이 유일한데, 전망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부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어 문제

- ② 장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지지출, 지방이전재원 등 법정지출에 대해 PAYGO(Pay-as-you-go) 원칙 등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으므로 미국과 같은 강력한 법적 강제보다는 사안별로 재원대책을 사전에 마련토록 하는 등 다소 신축적인 형태가 바람직
- 복지재정 내에서도 노인부문 지출효율화, 보육부문 지원 강화 등 부문별로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할 필요
- 이 외에 복지재원 다양화(개인·기업 등 민간의 역할 강화), 세출예산과 조세지출 간 연계 강화(2011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재정규율 확립(재정수반 계획 및 법안 수립시 부처간 협의, 국회 심의 통제)


**토론 요약**

## 세출구조조정, 생산성 높은 곳으로 포커스 맞춰야

김상헌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표자(박형수 박사)께서 거시재정 쪽 연구를 많이 하셨지만 정부가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 불편하다. 전반부 예산을 크게 평가할 때 있었던 얘기가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추경편성시 재정이 투입된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지방재정이나 복지 쪽에 재정이 투입되면서 경기대응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그런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지금 개별 부분을 빼고 전체를 봐서 잘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다.

재정건전화를 볼 때도 재정수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정수지도 중요하지만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부채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를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보금자리주택 등 독특한 정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 부분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인구변화, 저출산이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남북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큰 환경변화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인적자원의 질 높이는 투자 절실

김진영 / 건국대 경상학부 교수

아주 익숙한 주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전문가들 앞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이 걱정이 되지만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편하게 말하고자 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경기침체와 더불어 재정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또 그것이 결과로도 나오고 있다. 다만 총량지표보다는 부문별 효율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가나에 재정정책 자문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가나는 성장률이 제법 높은 나라이지만 이는 모두 정부지출로 이루어진 결과로 deficit이 10% 정도 가까이 가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경기대응 정책으로 결코 성장잠재력이 높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라는 말은 조심해서 써야 한다.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봐야 한다는 점은 김상헌 교수와 의견을 같이한다.

성장잠재력과 인구고령화는 우리가 계속 갖고 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세연구원에서 장기적 재정전망을 제시하여야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감세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하면 세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까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해야 하지만 감세, 증세의 이분법적 논의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적절할 듯하다.

성장잠재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교육측면 투자가 상당히 낮은 편으로 고등교육 측면의 투자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화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

큼 중요한 주제다. 본 토론자는 교육재정 쪽을 많이 보는데 호황 때가 되면 재정지출이 늘었다가 불황기가 오면 교육지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호황 때 재정건전화를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한다. 이는 교육부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인다.

재정악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발표자가 언급했다시피 재정규율은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80년대 초반의 성공적 안정화 정책으로 20년 후 IMF 구제금융 시기에 큰 역할을 했다. 지금 좋아지고 있다면 이럴 때 규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앞서의 지적처럼 보이지 않는 공공섹터가 크다. 조금 더 국민에게 솔직해야 한다. 이를테면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으로 한국장학재단처럼 재정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고려도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조세연구원의 역할이 커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까지 조세 연구원에서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 재정 문제 이야기하는 재정 이외 부문에 대한 대책 필요

박기백 교수 /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기집행 등 대규모의 재정지출로 인해 성과가 있었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외환위기에 비하면 금번 위기로 인한 재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국가채무의 경우 외환위기시에는 대략 10% 미만에서 30% 정도로 증가한 반면, 금번 위기에서는 약 30% 수준에서 37% 정도로 증가하여 절반 이하의 증가 수준을 보였다. 개인

적으로 재정건전화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예컨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를 경우 국가부채는 2012년부터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조차도 너무 빠른 감이 있으며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경우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 지출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히 재정적자 규모를 빠른 속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재정건전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감세를 중단하고 위기에 대응한 지출 등을 멈춘다면 큰 문제 없이 재정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준칙을 세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강력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정에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로 향후 대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고령화로 인해 큰 적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며 재정에 그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의 증가는 당연하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아도 경직성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이 아닌 금융 및 에너지 부문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발생할 위기를 방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정 자체보다는 재정에 문제를 야기하는 재정 이외의 부문(특히, 금융)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성장잠재력과 관련하여 과거 추진했던 중화학 공업 및 IT산업 육성 등은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친환경 및 녹색성장(green) 부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분야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재정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재정여건이 좋을 때부터 재정건전화 노력 경주해야

**박종규 박사/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 요인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었던 데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비교해 볼 때 금번 위기에서는 상대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통화스와프 실시 등으로 외환부담이 없어 회복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반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번 위기로 재정지출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도 큰 수준이다. 이후 재정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급속한 재정악화가 우려된다.

금번 재정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들을 포함하여 기타 선진국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재정정책과 관련한 선진국 사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 국내 사례를 통해 당시 좋은 경제적 아이디어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함으로써 재정정책에 대한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재정악화는 단시간 내에 일어나는 반면 재정건전화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는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향후 국가채무 수준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라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재정건전화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금리 기조 및 세계경기 회복의 둔화 등이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산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해야

**손광락/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목표는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고 경기를 부양하면서 재정적자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2014년까지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없애나간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2050년까지 시계열을 확대해 보면 큰 문제가 있다. 현재 금융위기 관리를 강구할 것이 아니라 김상헌 교수 지적처럼 통일, 고령화 등 주제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문제는 통계의 포괄성 문제다. 재정수지 적자를 논할 때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의료보험 등의 문제는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공무원 임금이 민간인에 비해 20% 정도 높은 편이고 학력 격차를 고려하더라도 5% 정도 높은 편이다. 향후 2~3년간 공무원임금을 동결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업이나 기술개발 쪽 연구에도 인재가 필요한데 문제는 우수한 인재들이 너무 많이 공무원이나 교원 쪽으로 몰린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임금을 향후 몇 년 정도 동결할 필요가 있다.

세금인상 문제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 초기 부자 감세라고 하여 민주당으로부터 공격받은 적이 있다. 재산보유세를 인상하면 친기업적이지만 친부자적이지는 않다.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재산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세는 인상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재정균형을 맞춰가야 한다.

## 재정건전성, 세출측면에서의 대응전략 필요

이철인 교수 / 서울대 경제학과

논의의 중점은 경제정책으로서 재정정책과 경제학적 개념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시에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금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규모가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하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시 판단으로 시급했다고 보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결과적으로 소비진작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가 자연스럽게 연계된 것 같다. 이러한 논의를 교과서적으로만 본다면 누구나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

화가 단순히 세출조정이나 세입확보만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세입보다 세출측면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구조 및 특성 등으로 인하여 향후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경제정책으로서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관리의 측면에서 지출속도의 완화, 관리 방법 등이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세출이 늘어난 경우 증세를 통해 이를 보전하면 재정건전성이 확보된다는 단순한 논리는 곤란하다. 리카르도 동등성 측면에서 재정수요가 발생(필수적인 부문은 제외)했을 때 증세 또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은 이미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순히 세출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향후 전략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위기에 대한 즉각적 대응보다는 재정적자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도록 두고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 및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재정수요관리에 대한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복지 지출의 관리가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근로형 복지제도 등 보다 한국적인 복지제도 마련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복지의 전달체계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율 문제와 전달체계에 대한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미흡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재정지출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컸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과연 얼마만큼 거시적인 성장률에 기여했는지에 대하여 모형별로 그 효과가 어떠한지를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

## 복지재정,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포퓰리즘적 관점에서 결정

현진권/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문에 대한 코멘트를 한다면 일 년 정도 연구해야 할 만큼 포괄적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자료로 보인다. 한 가지만 언급하면 복지재정이 과다하고 향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찬성할 것이라 생각된다. 사실 이 부분은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일종의 포퓰리즘에서 결정된다.

복지지출은 지난 정부의 경우만 보더라도 별 차이가 없지만 사실 앞으로도 똑같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수준까지는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일반 국민들은 합리적으로 무지(rational ignorance) 하고, 국회의원들도 정치적으로 편향(bias)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도 부서 이익에 영향을 받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 철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국회, 관료, 이해집단이라는 3가지 섹터는 경제적 시각으로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의 문제점을 시장실패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과 같이, 정치를 포함한 정부의 문제점은 정치적 실패(political failure)라는 개념으로 잘 정립되어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집단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주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라는 점이다. 기본적 기조는 사회복지가 선진국에 비해 낮아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런 의견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지만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다르다. OECD국가들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10%를 넘는 규모의 국민연금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이 늦어 아직 본격적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연금지급 규모가 작다. 시간만 지나 연금제도가 성숙되면 우

리나라 연금지급 규모가 자동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시점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평면적으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마치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외식 비중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과 똑 같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복지지출 평가지표로 복지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이야기하는데, 복지 지출 규모가 다른 분야의 지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증가율을 복지지출 평가지표로 삼는 데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복지지출에 대한 적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편, 복지지출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에 대해 분석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tax) 측면에서는 조세연구원을 비롯하여 사회적 비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사회복지비용 부분은 늘리기 위한 연구가 복지재정 관련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지출의 사회적 비용, 복지지출의 재원조달 코스트 등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지출에 대해 보다 경제학적 이론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조그마한 실증분석결과(evidence)라도 보여줄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IP



# 공공정책포럼

## ■ 제4회 공공정책포럼

###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





##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현황과 문제점

### 제6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현황과 문제점
- 일 시            2010년 6월 16일 07:30~09:30
- 장 소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주피터룸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05 인사 말씀  
                  송대희 KDI 초빙연구위원
  - 08:05~08:45 주제 발표  
                  조환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 08:45~09:25 자유 토론
  - 09:25            폐회

\* 본 원고는 2010년 6월 16일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주피터룸에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개최한 제6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 말씀

송대희/좌장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은 국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이 수행하였던 인프라 구축 및 시장진흥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일은 G20 아젠다에 속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현안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역할이 기여하는 바를 듣고자 한다.

주제발표 요약

■ 공공기관, Global Player가 되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현황과 문제점

조환익/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공공기관은 Global Player가 되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 직면하였다. 과거와 달리 진출여건이 변화하였고, 우리의 공공기관도 이에 대한 역량을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해외진출은 시의적절하다. 나아가 다른 국가보다 먼저 세계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지난 경제 위기 중에도 우리 KOTRA는 해외진출의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무제한 수출보험 등 위기 극복을 선도해 왔다.

1.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라

Financial Times 등 우리 경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해외 언론들이 호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지위 상승을 의미한다. 삼성과 같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여객과 물류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만 등 공공기관 역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강점을 5F(Fast, Focusing, Flexible, Friendly, Fun)라 칭한다. 이는 우리의 한계를 지적하던 샌드위치론이 아니라, 우리 상품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인정하는 역샌드위치론의 증거이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버블 붕괴 등 격동이 일상화되는 불확실성 시대가 그것이다. 또한 아시아의 경제적 부상은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의 활약에 좌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에 변수가 될 것은 신중하고 실용적 성향의 '스마트 소비'를 하는 소비자, 매출 중심에서 이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기업의 변화에 있다. 실제로 작년 재정위기를 계기로 유럽의 공항, 항만 등의 구매 패턴이 크게 달라졌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KOTRA가 유럽시장에 설치한 '공공조달지원센터'는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이는 해외로의 진출이 비단 한 기업의 일이 아니라, 설비·소프트웨어 등 관련 사업의 동반 진출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은 해외진출을 통해 숨겨진 사업 기회를 찾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2. 공공기관 해외진출 현황

공공기관은 외국으로부터 자원을 수입하는 대신 철도 및 항만 등 인프라 건설을 수출하는 Package Deal 방식을 통해 국가 에너지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IT 기술, 특히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하는 것도 유망한 상품이다. 이미 사업

영역이 포화된 공공기관이 이러한 방식의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효과를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현재 해외진출은 에너지자원개발, SOC, IT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진출 지역도 다양해졌으며 재원조달 방식도 수월해져, 보다 다양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에 비해 엄격히 적용되는 규제는 공공기관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더디게 하는 요소이다. 재원조달을 어렵게 하는 개도국의 상황, 해외진출에 대한 장기적 평가체제 미비, 투자 및 수주 정보 수집체계 미흡, 해외사업 전문인력 부족 등도 해결해야 할 제약요인이다.

### 3.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방안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관 유형에 따른 개별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공통적으로 해외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할 것인지, 구매성과를 거둘 경우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성과관리의 과제일 것이다. 또한 해외진출에 따르는 국가적 위험 및 초기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이는 개별 기관만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공적개발원조와 해외 비즈니스와의 연계 추진, 기관별 해외전문직위 설정을 통한 내부 역량 강화, 작년 6월 발족한 ‘공기업해외진출협의회’ 활용 등이 구체적 진출방안이 될 것이다.

### 4.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KOTRA 지원사업

KOTRA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

리 기업의 해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 정보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OPS<sup>1)</sup>는 한전 UAE 원전 수주와 같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법인 설립을 지원하는 KOTRA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조사를 바탕으로 한 해외시장컨설팅 서비스 제공, 외국 발주처 초청사업을 통한 해외계약 기회 창출, 유망 시장에 대한 프로젝트 발굴 조사단 파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인프라도 운영하고 있으며, KBC<sup>2)</sup> 직원 파견을 통해 현지 사무소 개설이 어려운 기관에 초기 근무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 관리공단 등 9개 기관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사무소를 활용 중이다. 이러한 KOTRA의 우수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

### ■ 자유 토론

송대희/좌장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이 희망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진국 시장의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우리 역시 해외진출의 역량을 갖추어 왔다는 것에 공감한다.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진출은 꼭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규제 등 민간에 비해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당면한 문제도 있다.

1) Overseas Investment Premium Service  
2) Korea Business Center

**안병주**/기획재정부 경영혁신과장

현재 KOTRA를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포럼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러한 논의를 확대하고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점 분석 및 지원방안에 관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조환익**/(발표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KOTRA는 매우 생산적인 인프라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본의 JETRO<sup>3)</sup>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또한 KOTRA는 새로운 사업분야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서비스 대상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도 특정 부처의 수요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것이다.

**김철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

우리 기관에는 해외진출보다 투자유치가 당면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KOTRA와 협약을 맺고 해외 투자자 알선 등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제주도 및 국내로의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KOTRA의 사업이 있는지 알고 싶다.

**조환익**/(발표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과거 미국, 일본에 국한되었던 투자처가 다변화되었다. 이제는 중국, 중동 등 자금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실제로 대형 자금을 가진 중국의 투자자들이 제주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나, 이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투자유치에는 구체적인 통계 등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현재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투자 상품화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도 고용 및 기술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해외와의 M&A에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영근**/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우리 공사는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5연패를 달성하였으나, 아직 우리의 브랜드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현재 이라크 아르빌 공항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해외 공항에 대한 위탁운영, 건설참여, 지분투자 등으로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공공기관 선진화 측면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하는 기관은 제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SOC 등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진출 단계별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우리 공사는 해외 지사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인데, KOTRA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3) 일본무역진흥회

**조환익** / (발표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KOTRA의 OPS 시스템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어느 나라 공항에 어떤 방식으로 수출할 것인지, 이후 운영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등 단계별 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장우**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본부장

해외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KOTRA에서 많은 정보 수집과 분석을 시행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해외 진출에 대한 전략 및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를 기관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환익** / (발표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KOTRA의 전략은 대부분 바로 공개된다. KOTRA는 정부와 달리 상업적인 관점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진출 정보 및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아프리카, 중국 등 유망 지역에 대한 진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배용수** /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첫째, 항행안전장비 개발 및 판매에 있어 아시아, 아프리카의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데 KOTRA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다. 현재는 마케팅 부문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이후 인력확보 문제에는 고민이 많다. 이와 관련, 우리 공사도 KOTRA의 KBC 프로그

램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둘째, 이전에 우리 공사는 기술을 확보하였음에도, 마케팅영역에서 투명성 규제 때문에 수주를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조환익** / (발표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KBC 프로그램의 인력 수용은 제한적이나, 최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의 경우, 이제는 로비와 커미션 제한 등의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감수해야 할 때라고 본다. 대신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KOTRA의 '해외투자보험' 등을 강화, 공공기관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시한다.

**유만식** /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본부장

KOTRA의 지사가 세계에 진출해 있으나, 아직 아르메니아에는 진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주한러시아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아르메니아 구호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KOTRA를 통해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조환익** / (발표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아이티 구호 등 이러한 경우에는 현지 에이전트에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인근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의 지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송대희/좌장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에는 개별 기업에 대한 KOTRA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계획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해외진출 지원 및 리스크 확보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해외시장은 우리 공공기관에 블루오션이므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겠다.

박정수/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공공정책포럼 참여에 감사드리며, 세 가지 안내말씀을 드린다. 첫째, 우리 센터의 공공기관 보수체계 연구와 관련, 금일 조세연구원에서 행정학회와 함께 학회를 개최하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둘째, 7월 포럼에서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선진화를 주제로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제6차 OECD 아시아 네트워크를 내년 5월 제주도에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 OECD 네트워크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가이드라인이 논의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활동중이므로, 공감대 형성 및 논의 주도에 우리 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IP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동향 10-12

### 요약

- 미국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세제, 근로가정에 대한 지원세제, 세무상 허점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감면연장법안(extender bill, H.R.4213)을 양원합동위원회(JCT)에서 조율중임
- 영국 보수당-자민당 연정은 2010년 6월 22일로 예정된 긴급예산의 발표를 앞두고 지난 5월 20일 법인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 관련 주요 합의내용을 발표함
- 스페인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로 2010년 5월 12일 15억유로 규모의 긴축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또한 Zapatero 대통령은 부유세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힘
- 이탈리아의 수상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는 2010년 5월 25일에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로 5,000유로를 초과하는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긴축패키지(Austerity Package)를 채택하였음을 강조하였음

### 1. 미국의 감면연장법안에 대한 논의 동향

- 미국은 2010년도 감면연장법안(extender bill, H.R.4213)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이 법안은 2009년 12월 7일에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09년 12월 9일에 하원에서 법안을 가결하였고, 2010년 3월 10일에 상원에서 법안을 가결하였음
  - 현재는 양원합동위원회(Joint Conference Committee)에서 양원이 가결한 법안을 조율하고 있음<sup>1)</sup>
  - 2010년 6월 9일 상원에서 하원과 조율하기 위해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이 법안의 목적은 실업수당을 늘리고 인프라-스트럭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으로 세무상 허점을 방지하는 입법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이 법안은 1986년 IRS Code 중 만기되는 규정을 연장하거나 수정하는 감면연장법안임

1) 일반적으로 상원에서 의결한 법안과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은 차이가 있으며, 차이가 나는 법안은 양원합동위원회(Joint Conference Committee)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도출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 법안은 폐기됨



- 2010년 11월 30일에 만기되는 실업혜택 및 의료혜택을 연장하여 실업수당을 늘리고 인프라-스트럭처 프로그램을 늘림
- 이 법안의 총지출은 1,270억달러로 추산되며 부유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무상 허점을 방지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이 법안에 포함된 세제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세제, 근로가정에 대한 지원세제, 세무상 허점 보완을 위한 세제임
-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세제는 연구개발세액공제 등이 있음
- 연구개발세액공제의 연장에 66억달러를 지원하여 11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특정 부동산에 48억달러를 지원하여 29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소득이 낮은 집단(예를 들면 신규 시장에 진입한 집단 등)의 사업에 38억달러를 지원함
- 미국 다국적 사업의 세계적인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44억달러를 지원함
- 근로가정에 대한 지원세제는 근로가정에 대한 면제를 연장하고 개인세금을 감면함
- 주와 지방정부의 판매세(sales tax deduction)를 손금산입하여 1,200만 가구에 16억달러를 지원함
- 손금산입할 수 있는 수업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4,400만 가구에 16억달러를 지원함
- 교사가 지출하는 수업을 위한 비공식적인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360만 교사에게 2억달러를 지원함
- 재산세에 추가적인 표준공제를 제공하여 3,000만 주택소유자에게 15억달러를 지원함
- 세무상 허점 보완을 위한 세제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대한 개정이 포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이용하기 위하여 공제가능한 외국세액에 맞추어 소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함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소득(예를 들면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 조세조약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소득 등)을 분리하여 향후 10년에 걸쳐 2억 5,3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함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남용방지규정(sec.956)을 조작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향후 10년에 걸쳐 10.1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함
- 외국에 근거한 다국적기업이 미국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국 내 외국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로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경우에 과세방법을 개선하여 향후 10년에 걸쳐 2억 5,5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함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외국 자회사에 이자분배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여 향후 10년에 걸쳐 4억 5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함
- 투자펀드관리자의 성과보수(carried interests)는 투자펀드관리자가 직접 펀드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 소득의 대부분을 자본이득으로 과세할 수 있었던 허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함
- 자본소득(capital income)으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했던 것에 비하여 저율의 세율로 과세되었음
- 이를 방지하여 75%는 통상소득으로 과세하고 25%는 자본이득으로 과세함
- 양원합동세제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이 방안을 통하여 향후 10년에 걸쳐 187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함

• 이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선거공약에 따라 3%p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 영국 새 정부의 조세계획(Tax Plans)

- 2010년 6월 22일로 예정된 긴급예산(Urgent Budget)의 발표를 앞두고 보수당-자민당 연정(Tory-Liberal Democrat coalition)은 지난 2010년 5월 20일 은행세 도입 및 법인세제 간소화 등 세법개정 관련 주요 합의내용을 발표함
  - 보수성향의 보수당과 진보성향의 자민당은 합의문서<sup>2)</sup>를 통해 그 정치적 견해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시도하였음
  -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은 긴급예산을 통해 확정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156억파운드 규모<sup>3)</sup>의 재정결손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증세정책을 추진하되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는 인하한다는 것임
- 이하는 연립정부가 세법개정 관련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긴급예산에 앞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세법개정 사항을 정리한 것임

### 가. 법인세 분야

- 연립정부는 긴급예산을 통해 대대적인 개정방향(big reform)을 담은 5년간의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임
- 법인세 분야의 주요 내용은 국제환경에서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임
  - 현행 법인세율은 28%로 새 정부는 보수당의 당초

- 법인세율 인하 관련 재원은 법인세 분야에서 각종 공제·감면을 축소함으로써 확보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제의 간소화 역시 기대되고 있음
  - 예를 들어,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의 경우 경제적 내용연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조기 상각되는 측면이 있어 그 공제율을 현 20%에서 12.5%로 인하할 계획임
  - 단, 각종 공제 등을 축소할 경우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세제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음
- 또한 연립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세(bank levy)를 도입할 계획임
  - Cameron 총리는 선거공약을 통해 은행세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방안 등은 아직 발표된 바 없음

### 나. 개인소득세 분야

- 연립정부는 개인소득세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 금액을 인상할 예정임
  - 현행 기본인적공제 금액은 6,475파운드임
  - 2011년 4월부터 저소득층 및 중간계층을 대상으로 이를 인상하여 장기적으로는 1만파운드까지 인상함
-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 관련 재원은 비사업자의

2) "The Coalition: Our Program for Government"

3) 이는 영국 GDP의 11% 정도 규모임



자본이득세율 인상 및 국민보험료 과세최저한 인상계획의 취소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임

- 비사업자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현 18%에서 40% 또는 50% 정도까지 인상함<sup>4)</sup>

- 단, 사업자에 대해서는 18%의 자본이득세율을 유지함

-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와 관련하여 당초 보수당의 선거공약에 의하면 그 과세최저한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국민보험료 중 종업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그 인상계획을 포기함

- 따라서 고용주 부담분에 한해 과세최저한 금액을 인상할 예정임

- 또한 Cameron 총리는 영국의 일간지<sup>5)</sup>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여건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인하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힘

- 특히, 50%의 최고세율 구간과 관련하여 그 세수효과가 크지 않다면 이를 폐지할 수 있음을 언급함

- 50%의 세율은 브라운 총리 시절 2009년 예산을 통해 도입되어 2010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는 도입 초기부터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 등 영국의 국가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지 논란이 있어 왔음

#### 다. 부가가치세 분야

- 재무부 자문 경제학자들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연립정부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재무부 자문 경제학자 28명 중 24명은 2011년 말까지 부가가치세율이 현 17.5%에서 20%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이로써 약 11.5억파운드 규모의 추가 세수확보가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가계지출에 약 425파운드만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라. 기타 분야

- 기타 분야에서 역시 여러 합의사항이 도출되었고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음

- 연립정부는 비행기 여객산업의 과세체계 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승객세(per-passenger levy)를 폐지하고 이를 비행기세(per-plane charge)로 대체함

- 환경과세(environmental taxation) 분야의 세수를 확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처리를 재검토할 계획임

### 3. 스페인 재정위기 극복 조세조치

#### 가. 5월 12일 긴축패키지

-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로 2010년 5월 12일 15억유로 규모의 긴축패키지(austerity package)를 발표함

- 이는 공공부문 급여의 인하 및 동결, 출생 및 입양 지원 폐지, 공공투자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4) 보수당·자민당 연정의 영향력 있는 입법가는 정부의 비사업자에 대한 자본이득세율 인상 정책을 비판하고 있음. 그 이유는 비사업자에 대해 자본이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사업자와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고 경기회복에 해가 된다는 판단에서임. 오히려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 부담 경감혜택을 주는 'taper relief'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5) The Daily Telegraph

- 공공부문 급여의 경우 2010년 5% 인하하고 2011년에는 동결함
  - 장관 급여는 2010년 15%만큼 대폭 인하함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 분야에서 출생 및 입양 지원 조치를 2011년 1월 1일부터 폐지함
  - 개인소득세에서 과세기간 중 출생하였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적용되는 2,500유로의 세액공제를 폐지함
  - 단, 2010년 발생한 출생 및 입양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31일 이전 등록을 요건으로 세액공제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음
  - 출생 및 입양 자녀당 지급하는 2,500유로의 보조금을 폐지함
  - 단, 2010년 발생한 출생 및 입양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31일 이전 등록을 요건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음

나. 부유세(Wealth Tax) 도입

- Zapatero 대통령은 2010년 5월 12일의 긴축패키지에 이어 2010년 5월 26일 부자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부유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며 최종 도입안은 몇 주 내에 발표될 예정임
- 대통령은 부유세 도입시 기본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음
  - 부유세는 한시적으로 도입되어야 함
  - 일반 세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 납세자는 스페인 인구의 0.1% 미만이어야 함

- 참고로, 스페인에서 부유세는 2008년 경기부양패키지(economic stimulus package)의 일환으로 폐지된 바 있음
  - 당시 부유세는 순부가 60만유로를 초과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0.2%부터 최대 2.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었으며, 연간 세수는 약 2억유로에 달했음

4. 이탈리아의 5,000유로 초과 현금거래에 대한 금지 조치

- 이탈리아의 수상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는 2010년 5월 25일에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긴축패키지(Austerity Package)를 채택하였음
  - 이 패키지의 주요한 조치로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5,000유로를 초과하는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것임
- 이탈리아 정부가 현금거래를 제한한 목적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임
  - 이탈리아는 EU의 권고에 따라 연간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2009년 말 현재 재정적자가 GDP의 5.3%에 달하여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였음
  - 특히, 이탈리아의 소비자는 평균적으로 1만 2,500유로에 달하는 금액까지 현금거래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고<sup>6)</sup>, 이런 과도한 현금거래는 조세회피를 유발하여 세수손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음

6) 출처: 비즈니스위크, 2010년 5월 25일자 보도.



- 이탈리아 정부는 세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회피된 조세를 확보하는 등의 긴축패키지를 통해 2012년까지 연간 재정적자를 GDP의 2.7%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동향 10-13

요약

- 독일 내각은 2010년 6월 7일 긴축패키지(austerity package)에 승인함
  - 세법관련 주요 내용은 원자력발전소 및 비행기 여객에 대한 과세 신설, 에너지세 특혜조치 폐지, 금융거래세 도입 등임
- 포르투갈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추가 긴축계획을 의회에 제출함
  - 주요 내용은 과세소득이 2백만유로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2.5%p), 개인소득세율 인상(1%p, 1.5%p), 부가가치세율 인상(1%p) 등임
- 캐나다의 온타리오와 브리티시콜롬비아 주는 2010년 7월 1일부터 GST와 PST를 결합한 새로운 HST(Harmonized Sales Tax)를 부과할 예정임
- 프랑스는 개인사업자의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적 실체(legal entity)를 도입하여 법인세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게 함

1. 독일 긴축패키지 내각 승인

- 내각(cabinet)은 2010년 6월 7일 재정지출 삭감을 비롯하여 세제분야에서 원자력발전소 및 비행기 여객에 대한 과세 신설, 에너지세 특혜조치 폐지, 금융거래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축패키지(austerity package)에 승인함

- 메르켈 총리는 동 긴축패키지를 곧 하원(Bundestag)에 제출할 예정임

#### 가. 도입 배경 및 기대효과

- 메르켈 총리에 의하면, 독일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조치로 긴축패키지를 도입하였음
  - 독일의 재정적자 규모는 현재 GDP의 5% 수준으로 EU 성장 및 안정 협정(EU Growth and Stability Pact)에서는 이를 2013년까지 3% 이하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최근 2016년까지 연방재정균형을 요청하는 헌법개정안에 승인한 바 있음
- 동 긴축패키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긴축 정책으로 4년 동안 약 85억유로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는 2011년 11.1억유로, 2012년 16.1억유로, 2013년 25.7억유로, 2014년 32.4억유로로 추산됨
- 에너지세의 경우 특혜조치를 폐지하고 시설의 가용시간을 연장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추가 과세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연간 약 2.3억유로의 추가 세수 확보가 기대되고 있음
- 국내 비행기 여객에 대해서는 환경세(environmental tax) 중 하나인 출발세(departure tax)를 부과할 계획임
  - 출발세는 독일 공항을 출발하는 승객에 대해 부과하며, 그 세율은 비행기의 소음 수준 및 연료소비량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이를 통해 연간 약 1억유로의 세수확보가 기대되고 있음
  - 단, 비행기 부문이 2010년 EU 배출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TS)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 동 출발세는 폐지될 것임
- 컴퓨터 트레이딩 및 파생상품 등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세를 신설함
  - 동 거래세의 경우 은행세와는 별도로 계획되고 있는 세금으로 이를 통해 연간 2억유로의 세수확보가 기대되고 있음
  - 참고로, 은행세의 경우 미래 구제금융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은행의 규모 및 체계적 위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나. 주요 내용

- 긴축패키지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는 대부분 실업수당, 자녀보조금 등 사회보장 분야의 재정지출 축소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10,000여 개의 연방정부 일자리를 비롯하여 국방비를 축소함에 따라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세제 분야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나 에너지세 및 국내 비행기 여객에 대한 출발세 등을 통해 세수를 증가시킬 예정임

## 2. 포르투갈 추가 긴축계획 의회 제출

### 가. 1차 긴축계획 의회 통과

- 의회는 2010년 5월 12일 1차 긴축계획에 승인함
  - 이는 개인소득세에 45%(기존 42%)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증세조치를 담고 있음<sup>1)</sup>

1) 1차 긴축계획의 상세 내용은 동향 10-07을 참조



나. 2차 긴축계획 의회 제출

-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추가 긴축계획을 의회에 제출함
  - 이는 1차 긴축계획에 이어 안정 및 성장계획 (Programa de Estabilidade e Crescimento)을 위한 조치를 담고 있으며, 관련 세법개정 사항은 관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 단, 부가가치세 개정조치는 2010년 7월 1일부터 발효됨

1) 법인세 분야

- 과세소득이 연간 2백만유로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5%p만큼 인상함
  - 현재 포르투갈에서는 과세소득 중 첫 12,500유로에 대해서는 12.5%,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음

2) 개인소득세 분야

- 개인소득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 중 세 번째 구간까지는 1%p, 네 번째 구간부터는 1.5%p 인상함
  - 단, 이는 2010년 6월 1일부터 적용되어 2010년의 경우 전체 기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월할 조정될 예정임

〈표 1〉 포르투갈의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EUR)	세율(%)		
	변경 전	변경 후	
		2010년	2011년 이후
~ 4,793	10.5	11.08	11.5
4,794 ~ 7,250	13	13.58	14
7,251 ~ 17,979	23.5	24.08	24.5
17,980 ~ 41,349	34	34.88	35.5
41,350 ~ 59,926	36.5	37.38	38
59,927 ~ 64,623	40	40.88	41.5
64,624 ~ 150,000	42	42.88	43.5
150,000 ~	45	45.88	46.5

- 원천징수세율의 경우 1.5%p 인상함

〈표 2〉 포르투갈의 원천징수세율

항 목	세율(%)	
	변경 전	변경 후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및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	15	16.5
열거된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	20	21.5
거주자인 개인의 투자소득	20	21.5
비거주자인 개인의 근로, 직업, 연금, 투자소득	20	21.5

-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적용되는 중간예납세율을 현 75%에서 76.5%로 1.5%p만큼 인상함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 및 농부의 경우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75%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이는 최종 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은 7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을 마감일로 하여 3회에 걸쳐 각각 총중간예납세액의 1/3씩 납부되어야 함

3) 부가가치세 분야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현행 20%에서 21%로 1%p만큼 인상함
  - 포르투갈에서는 재정결손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해 왔음<sup>2)</sup>
  - 2005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6.8%에 달하자 그해 부가가치세율을 2%p만큼 인상(19% → 21%)한 바 있음
  - 한편, 2006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9%, 2007년 GDP의 2.6%로 감소하자 2008년 부가가치세율을 인하(21% → 20%)하였음

- 주정부에서는 다양한 세율로 PST를 부과하고 있음
  - 주정부에서 부과하고 있는 PST는 주 지역 내에서의 재화(유형자산, 동산)와 용역의 판매 및 임대를 과세대상으로 함
  - PST는 재화의 최종 소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사용되는 사무용품과 기타 장비 등에는 부과하지만 재판매를 위해 구입하는 재고자산에는 부과하지 않음

3. 캐나다의 부가가치세 체계 및 최근 동향

- 캐나다의 부가가치세는 연방정부의 GST(Goods and Service Tax)와 주정부의 PST(Provincial Sales Tax)로 구성됨
  - 연방정부는 5%의 세율로 GST를 부과하고 있음
  - GST의 과세대상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거래도 포함함
  - GST란 거래 단계별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형태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GST 순액을 납부하는 방식임

- 캐나다는 10개의 주정부와 3개의 자치구(territory)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주정부 및 자치구의 PST 세율은 <표 3>과 같음
  - 예외적으로, 앨버타 주와 3개의 자치구에서는 PST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표 3> 주정부의 PST 세율

주/자치구	세율	주/자치구	세율
앨버타	No PST	온타리오	8.0 <sup>1)</sup>
브리티시콜롬비아	7.0 <sup>1)</sup>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10.0 <sup>3)</sup>
매니토바	7.0	퀘벡	7.5 <sup>4)</sup>
뉴브런즈윅	8.0 <sup>2)</sup>	서스캐처원	5.0
뉴펀들랜드랜라브라도	8.0 <sup>2)</sup>	노스웨스트, 유콘, 누나부트 자치구	No PST
노바스코샤	8.0 <sup>2)</sup>		

주: 1) 브리티시콜롬비아와 온타리오는 2010년 7월 1일부터 GST와 PST를 단일화함  
 2)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랜라브라도, 노바스코샤는 1997년 4월 1일부터 GST와 PST가 단일화되어 13%의 HST로 부과하고 있음  
 3) GST 포함 가격에 PST 세율을 적용하므로 유효세율은 10.5%임  
 4) GST 포함 가격에 PST 세율을 적용하므로 유효세율은 7.875%임

2) 참고로, 1986년 이후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율은 다음과 같음

기 간	세율(%)
1986. 1. 1 ~ 1988. 1. 30	16
1988. 1. 31 ~ 1992. 3. 23	17
1992. 3. 24 ~ 1994. 12. 31	16
1995. 1. 1 ~ 2002. 6. 4	17
2002. 6. 5 ~ 2005. 6. 30	19
2005. 7. 1 ~ 2008. 6. 30	21
2008. 7. 1 ~ 2010. 6. 30	20
2010. 7. 1 ~	21

- 퀘벡은 다른 주정부와 달리 최종소비단계에서 과세하는 형태가 아니고 거래단계별로 과세하는 형태(이하 'QST' (Quebec Sales Tax)라 함)임
  - QST는 연방정부의 GST와 동일한 과세방식이기는 하지만 연방정부와는 별도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음

- 예를 들면, 금융중개서비스의 경우 GST 과세목적상 면세공급에 해당하지만 QST 과세목적상으로는 영세율 공급에 해당함

■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PST를 연방정부의 GST와 결합하여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서 하나의 간접세인 HST(Harmonized Sales Tax)로 징수하고 해당 주정부에 교부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음

• 단일화된 과세체계는 일부지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므로 현재는 주정부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GST와 PST를 운영하고 있음

- 1997년 4월 1일부터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앤레브라도의 3개 주정부는 PST와 GST를 단일화하여 HST(Harmonized Sales Tax)라는 하나의 연방 및 주정부 세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재 이들 3개 주의 HST 세율은 모두 13%이며, 2010년 7월 1일부터 노바스코샤는 15% 인상할 예정이다

■ 캐나다 정부는 2010년 6월 9일 온타리오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새로운 HST의 성문화를 위하여 'New Harmonized Value-added Tax System Regulation' 을 발표하였음

• 2010년 7월 1일부터 온타리오 주는 13%(8%의 PST와 5%의 GST를 합한 세율),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12%(7%의 PST와 5%의 GST를 합한 세율)의 세율로 HST가 부과될 예정임

• 따라서 총 13개의 주정부 및 자치구 중 HST가 부과되는 지역이 3개 주정부에서 5개 주정부로 확대됨

#### 4. 프랑스의 EIRL 도입

■ 프랑스는 개인사업자의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적 실체(legal entity)를 도입하여 법인세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게 함

• 새로운 법적 실체는 EIRL(entreprise individuel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로 불림

• 프랑스 의회는 EIRL의 도입에 관한 법률을(the Law no. 2010~658) 2010년 5월 12일에 채택함

■ EIRL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대해서 개인의 자산·부채와 분리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함

• 따라서 개인의 자본과 분리된 사업 자본(capital)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귀속된 자산·부채는 그 개인과는 구분된 별도의 EIRL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어야 함

■ EIRL은 개인의 사업소득이나 세무 목적상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것이 허용됨

• 즉, EIRL을 채택한 개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납세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 따라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간의 차이로 인한 사업소득자와 법인 간의 과세상 차이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첫째, 법인세율이 적용되므로 38,120유로까지는 15%, 38,12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은 33.33%의 세율이 적용됨

- 둘째, EIRL이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EIRL의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함

- 셋째, 사회보험료(Social contribution)는 사업소득자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됨

- 넷째, EIRL에 귀속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됨

# 정책 흐름



-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 아시아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세금 관련 안내문·통지서를 전면 개선하여 납세편의 증진
- “지방세·관세환급금 쌍방향 정보공유”로 빈틈 없는 지방세 관리

#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 - 안정성장기반 강화와 서민생활의 개선 -

\* 본 자료는 2010년 6월 24일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에서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I. 상반기 경제정책 실적

◇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이루어내면서 국제사회에서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로 평가

- 일자리 창출 등 친서민 정책기조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물가 및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 G-20 등을 통해 글로벌 이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녹색성장,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 지속성장 과제도 병행 추진

#### ① 거시경제 안정

- **(적극적 정책기조)** 경기회복세 공고화를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한시 대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 중소기업 신용보증 비율 하향조정('09년 95% → '10.상 90%), 은행자본확충펀드 후순위채 시장매각 등

- **(재정정책)** 재정의 확장 정도를 줄이면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민간경기를 보완

\* 관리대상수지(GDP 대비 %) : ('09년 결산) △4.1 → ('10년 예산) △2.7

\* 상반기 재정집행률 : ('08년) 49.6 → ('09년) 64.8 → ('10

년, 계획) 60

#### ② 경제체질 개선

- **(경제취약요인 보완)**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강화된 LTV·DTI 적용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 채권단 주도로 대기업그룹(5월) 및 개별대기업(6월)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대상 선정 등 시행

- **(위기대응능력 제고)**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순이익의 내부유보 확대 및 예대율 관리방안 마련(3월)

#### ③ 일자리 창출

- **(국가고용전략회의)** 대통령 주재하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노동·산업 등 전 분야의 장·단기 대응방안 논의

-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구인·구직 DB를 확충하고 취업장려수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3월)

#### ④ 서민생활 안정

- **(물가 안정)**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경쟁 촉진\* 및 담합감시 강화,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을 통해 물가안정\*\* 도모

\*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T-gate, '09. 12~),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제 도입 등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 ('08년) 4.7 → ('09년) 2.8 → ('10. 5월) 2.7

- **(3대 서민대책)** 보금자리주택 공급('10년 18만호), 든든학자금('10. 1학기, 11만명), 미소금융 등 서민 생활 안정노력 강화

**5** 국제 논의의 '중심국가' 로 도약

- **(G-20 정상회의)** G-20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재무장관회의(4, 6월) 개최 등을 통해 거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등 논의 주도
  - **(글로벌 리더십 강화)** '12년 핵안보 정상회의를 유치(3월)하고, 비유럽국가로서는 처음으로 EBRD 차기총회 의장국에 지명(5월)
  - **(대외협력 강화)** UAE 원전 수주, 美·EU 등과의 FTA 발효 추진과 더불어 대외원조 및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
-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CMI 다자화체제 출범(3월), ADB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 합의(5월)에 주도적 역할 수행

**6**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 **(신성장동력 확충)** 녹색인증제 도입(4월)으로 녹색산업·기술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관련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2월)
- **(저출산·고령화 대비)**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을 늘리고,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II.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점검 및 전망**

◇ 대외여건은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예상

◇ 국내경제도 내수·수출 호조로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서민생활 여건도 점차 나아질 전망이다이나, 세계경제 회복 둔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

**1. 대외 경제여건**

**1** **(세계경제)** 미국·중국 및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 최근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들도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상향조정

\* 2010년 세계경제 성장전망(%)

- IMF : ('09. 10)3.1 ('10. 1)3.9 ('10. 4)4.2, OECD : ('09. 11)3.4 ('10. 5) 4.6

- OECD 경기선행지수(산업생산에 6~9개월 선행)가 4월까지 14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경기회복 흐름 지속 예상

\* OECD 경기선행지수(전월차, p) : ('09. 12)0.8 ('10. 1)0.7 ('10.6) 30.5 ('10.4) 0.4

- 다만,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상존

세계경제 성장 추이 및 전망

	실적		전망			
	09년	10.1/4	10년 연간		11년 연간	
			IMF	OECD	IMF	OECD
세계경제 성장률	△0.6	-	4.2	4.6	4.3	4.5
미국(전기비연율)	△2.4	3.0	3.1	2.7	2.6	3.2
유로(전기비)	△4.0	0.2	1.0	1.2	1.5	1.8
일본(전기비)	△5.2	1.2	1.9	3.0	2.0	2.0
중국(전년동기비)	8.7	11.9	10.0	11.1	9.9	9.7

주: 세계 성장률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10. 4), OECD Economic Outlook(10. 5)

②(국제유가) 금년 상반기(10. 1~5월 평균 \$77.6)보다 소폭 높은 연평균 \$80 내외(하반기 \$80대 초반, Dubai유 기준) 전망

-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4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유럽 재정위기 우려 등으로 최근 다소 안정

\* 두바이유(\$/B) : (09)61.9 → (10. 1) 76.8 (2) 73.6 (3) 77.3 (4) 83.6 (5) 73.3

- 향후 세계경제 회복이 지속될 경우 상승추세를 보이겠지만, 높은 재고수준,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

\* 미국 원유재고(백만B, 매월 넷째주) : (10. 2) 342 → (3) 351 → (4) 361 → (5) 363

주요 기관 국제유가 전망(\$/B, 기간평균)

기관	유종	10년					11년
		연간	1/4	2/4	3/4	4/4	
EIA(10. 6)	WTI	78.8	78.6	78.0	78.0	80.3	82.5
CERA(10. 5)	Dubai	77.6	76.5	80.7	76.0	77.3	81.6
PIRA(10. 5)	Brent	79.5	76.3	78.5	78.3	85.1	-

주: EIA : 美 에너지정보청, CERA : 美 캔버리지에너지연구소, PIRA : 美 석유산업 연구소

③(국제금융시장) 유럽 재정문제가 상당기간 국제금융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유럽 재정위기로 최근 유로화 가치가 4년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관련국 CDS 프리미엄(채권 부도위험에 대한 보험료)도 크게 상승

\* 달러/유로 : (09말) 1,4325 → (10. 4말) 1,3242 → (5말) 1,2300 → (6. 22) 1,2289

\* CDS 프리미엄(09말 → 10. 6. 21, bp) : (그리스)283 → 825, (포르투갈)92 → 283, (스페인)113 → 219, (헝가리)238 → 300

- 그리스 등 고부채국가의 재정적자 감축이 쉽지 않은 상황

\* 그리스의 경우 임금삭감 및 정부지출 축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심하고,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세율인상을 통한 세입 증대도 곤란

- 일부에서는 위기가 인접 국가로 전염되거나 민간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

- EU·IMF 등의 국제공조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경우 점차 안정을 회복하겠으나, 그 과정에서 높은 변동성 지속 예상

2. 국내 경제여건

① 경기 여건

◇ 소비·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잠재수준의 성장흐름이 이어질 전망

- (최근동향) 내수·수출의 동반호조로 1/4분기중 전년동기 대비 8.1% 성장하였고, 민간부문의 자생력도 강화되는 모습

\* 성장기여도(전년동기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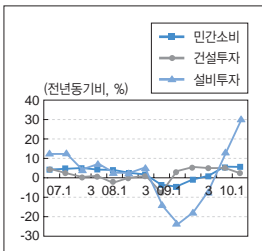
- 정부부문: (09. 1/4) 1.9 (2/4) 1.9 (3/4) 1.5 (4/4) 0.8 (10. 1/4) 0.8

- 민간부문: (09. 1/4)△6.2 (2/4)△4.1 (3/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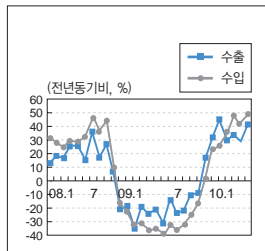
(4/4) 5.2 (10. 1/4) 7.3

- **(내수)** 대내외 경제회복과 불안심리 완화로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는 양호한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민간 건물건설 부진 등으로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모습
- **(수출입)** 전년 대비 30~40%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수회복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

소비와 투자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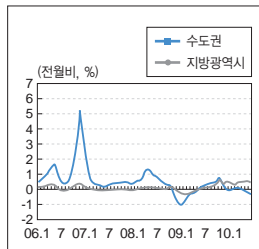
- **(향후 전망)** 수출과 내수의 개선추세 지속 예상
- 소비자·기업 심리가 기준치(100)를 지속 상회하는 등 양호
  - \* CSI(기준치=100) : (09. 12) 113 (10. 1) 113 (2) 111 (3) 110 (4) 110 (5) 111
  - \* BSI(기준치=100) : (09. 12) 85 (10. 1) 90 (2) 92 (3) 101 (4) 105 (5) 107 (6) 104
- 수출 호조로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업종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투자확대 요인으로 작용 예상
  - \* 상장기업 영업이익률(%) : (09. 1/4)4.6 (2/4)5.4 (3/4)7.0 (4/4)5.0 (10. 1/4)7.2
- 재고축소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재고의 성장기여가 지속될 전망
  - \* 재고증감(계절조정, 조원) : (09. 2/4)△9.3 (3/4)△4.8 (4/4)△3.9 (10. 1/4)△1.7
- 성장기여도(%p) : (09. 2/4)△1.5 (3/4) 2.3 (4/4) 0.4 (10. 1/4) 1.0

② 물가 및 부동산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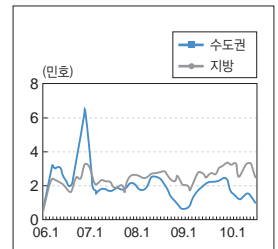
◇ 전반적인 안정세가 이어지겠으나, 경기회복 등에 따라 물가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

- (물가) 낮은 수요압력, 공공요금 안정 등으로 2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유지
  -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 (10. 1) 3.1 (2) 2.7 (3) 2.3 (4) 2.6 (5) 2.7
-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유가상승 가능성,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질 전망
- (부동산) 수도권은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거래가 위축되고 있으나, 지방은 광역시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
  - 하반기에도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집값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주택수급\* 등을 감안시 단기급락 가능성은 제한적
    - \* 수도권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에 미달('09년 95.4%)하고, 전세수요 지속 등 잠재 주택수요 상존

아파트 매매가격



아파트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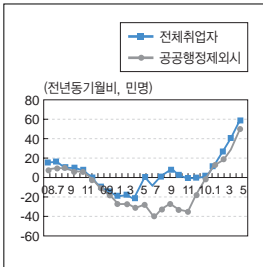


③ 민생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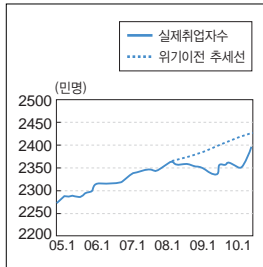
◇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서민생활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최근 동향)** 고용·소득이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충분치 못한 수준
-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위기 전 추세에는 미달

취업자 증감



계절조정취업자 추이



- 가계소득은 '09. 4/4분기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

\* 가계소득(전년동기비, %) : (09. 2/4)0.5 (3/4)Δ0.7 (4/4)4.9 (10. 1/4)7.3

\* '09년중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 (1분위) Δ0.9, (2분위) 2.6, (3분위) 2.8, (4분위) 1.9, (5분위) 0.7

- 대기업·정규직에 비해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성과개선이 미흡

\* '08 → '09년중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 (대기업) 3.3 → 5.9, (중소기업) Δ2.7 → 2.0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 (08. 3) 60.5 (09. 3) 56.9 (10. 3) 54.7

- **(향후 전망)**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면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회복되고 소득여건도 점차 개선될 전망
- 다만, 물가압력이 나타날 경우 서민생계비 부담 증가 소지가 있고, 경쟁심화·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중소기업·자영업 등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해소되는데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

### 3. 향후 전망

#### ① 2010년 하반기 및 연간 전망

- **(성장)** 당초 전망보다 높은 연간 5.8% 성장 예상  
-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회복 등에 따른 내수·수출 동반 호조로 1/4분기 성장률(전기비 2.1%)이 크게 높아지는 등 회복세 강화
- **(고용)** 경기회복 및 일자리대책 효과 등으로 당초 전망을 상회하는 30만명의 고용증가 예상
- **(경상수지)**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연간 흑자규모는 당초 예상한 150억달러 예상
- **(물가)** 하반기 물가수준이 상반기보다 소폭 높아지면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전망과 비슷한 3% 내외 예상

#### ② 2011년 전망

- **(성장·고용)** 세계경제 회복 및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연간 5% 내외 성장하고 취업자는 25만명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70억달러 수준으로 축소 예상
- **(물가)** 총수요압력, 유가상승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정책노력을 강화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수준에서 안정 예상

#### 2010년 및 2011년 전망

	2010년		2011년
	(당 초)	(수 정)	
■ 경제성장률	5%	5.8%	5% 내외
■ 취업자 증감	25만명 이상	30만명	25만명 수준
■ 경상수지	150억달러	150억달러	70억달러 수준
■ 소비자 물가	3%	3%	3% 수준

\* 당초는 '09. 12월 "2010년 경제정책방향" 전망치(고용은 '10.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시 목표치)

**참고 1** 주요국의 최근 경제정책 동향

◇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하는 가운데, 성장이 양호한 일부 국가들은 유동성 환수 등을 통해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으며, 유럽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

- ① **(미국)**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한 비상조치들은 대부분 종료
  - 금융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등 은행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개혁 추진
- ② **(일본)** 디플레이션에 대응하여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
  - 최근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속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의회 논의 진행
- ③ **(EU)** ECB의 국채매입 등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 지원 및 재정건전화, 회원국 간의 경쟁력 격차 축소 등을 추진
  -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은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 \* 영국(재정책임법 제정), 독일(기본법에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채무제한 조항 신설), 프랑스(헌법 개정을 통해 중기재정 계획 작성 근거 마련)
- ④ **(중국)**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소비촉진 등 성장에서의 내수역할 확대 추진
  - 지준율 인상, 부동산투기 규제 등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외화유동성 관리도 강화
- ⑤ **(인도)** 인플레이션 및 자산버블 우려로 지준율 인상,

정책금리 인상 등 유동성 흡수 조치 시행

**참고 2**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재정부-KDI 공동으로 전문가(333명, 교수·기업인·연구원) 및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6. 7~6. 11)

- ① **경제상황** : 일반국민은 6개월 전과 비교해 경제가 '비슷하거나 약간 나빠졌다'고 보고 있으나 전문가는 '약간 좋아졌다'고 평가

	매우 나빠졌다	약간 나빠졌다	비슷하다	약간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일반국민	9.6%	37.1%	37.0%	15.2%	0.5%
전문가	2.1%	12.0%	20.7%	58.0%	7.2%

- ② **하반기 중점정책** : 일반국민은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전문가는 「민생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성장동력 확충」을 중시(복수응답)

	경기 활성화	재정 건전성 제고	금융 부문 개혁	기업 구조 조정	일자리 및 민생 안정	성장 동력 확충	미래 과제 대응	노사 관계 선진화
일반국민	35.5%	10.4%	11.3%	13.0%	70.7%	14.8%	28.2%	11.1%
전문가	36.0%	37.2%	10.8%	14.4%	49.2%	34.2%	10.2%	5.7%

- ③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요인** : 경제전문가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지속」으로 응답(복수응답)

	물가 불안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	주요국의 긴축정책	기업 구조 조정	남북 관계 악화	가계 부채	고용 불안	주택 경기 위축
전문가	14.1%	72.1%	33.6%	5.7%	27.6%	13.8%	13.5%	17.1%

④ **서민생활 안정** :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고용창출」과 「물가·부동산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복수응답)

	고용창출	물가·부동산 안정	세금부담 경감	서민금융 확대	교육비 부담경감	서민대상 복지지출 확대
일반국민	46.2%	43.4%	39.9%	10.4%	36.8%	20.1%
전문가	77.5%	47.1%	11.7%	8.4%	44.7%	5.1%

⑤ **국격 제고** : 경제전문가는 G-20 의장국으로서 국격 제고를 위해 「거시경제정책의 국제공조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개도국 지원	법질서 준수 등 시민의식 강화	거시경제 정책국제 공조강화	노블리스 오블리제 확산	다문화사회 수용성 제고
전문가	15.9%	25.8%	42.3%	10.5%	3.9%

### Ⅲ. 종합평가 및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 1. 종합 평가

- ◇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경제의 기초체력이 강화되었으며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
  - 다만, 건설 등 일부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지표경기가 고용·소득 등 체감경기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 경기회복이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경제 취약요인 시정과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정책의 성과 가시화 필요

① **(실물경기)**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 경제 불안요인과 취약부문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경기회복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경기회복, 유가상승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물가압력에도 유의하여야 하는 상황

② **(민생여건)** 경제성과의 개선이 내수·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

- 경기회복만으로 위기 이전의 추세적 고용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시스템 및 노동시장 개선 등을 통해 구조적인 고용충량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함

\* 매년 25만개 이상 신규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나, '09년중 7만개가 감소한 영향으로 금년에 30만개 증가하더라도 아직 30만~4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

- 중산층 확대를 위해 사회안전망 보완, 일을 통한 빈곤탈출 등 서민복지 확충 노력 지속 필요

\*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가처분소득기준, %) : 빈곤층 : (07) 14.8 (08) 15.0 (09) 15.2, 중산층 : (07) 63.8 (08) 63.2 (09) 63.2

-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실적호조가 하청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구조 및 기업 거래관행의 개선 필요

③ **(구조개혁)** 강화된 경제체질을 바탕으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 상존

-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과 신용보증 확대 등으로 부실소지 및 신용경색을 사전 차단하였으나, 향후 위기대응책 정상화 과정에서 한계기업 등의 구조조정 부담이 커질 소지
- 가계·기업 부채수준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나 예

가지 못한 충격으로 경제여건 악화시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국제비교(%), '09년말 기준, 일본은 '08  
년말) : (영국) 168, (한국) 143, (미국) 126, (일본) 112

- 그간의 경제성과를 반영하여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있으나 자본유출입의 높은 변동성 등 대외부문 리스크 상존

**④ (경제의 재도약) 위기극복의 성과가 선진일류국가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 확충 등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모멘텀을 강화할 필요**

- 국제사회에서 G-20 의장국 수임, 성공적 위기극복 등으로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국내적으로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국가품격 제고 노력을 통해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중요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이해집단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경제개혁 노력 강화 필요
- 특히, 진입규제 등에 따른 서비스부문 저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고용·민생개선 및 잠재성장률 제고도 가능

**⑤ (미래 대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의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

-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 학령인구 감소, 주택수요 변화 등에 대응 필요

**2.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①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안정성장기반 강화**

-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고용·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 가계·기업·공공부문 등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부문별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② 경기회복의 효과가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중점**

-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재정 일자리 사업을 내실화
- 경제의 생산성 및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일과 교육을 통한 탈빈곤 유인을 제고
- 경제성과가 취약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거래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

**③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고 신성장동력 확충 등 개혁과 혁신의 모멘텀 강화로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Korea Initiative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대외 개방 및 진출 노력을 적극 경주
- 녹색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구조 정착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노력 강화
- 첨단산업 투자활성화, R&D 효율화 등 신성장동력 확충노력 강화
- 저출산·고령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미래 위협요인에 선제적 대응

#### IV.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 ◇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경제의 안정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
  -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는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 시까지 운영
  - 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고 가계·기업 등 취약요인에 대한 구조적 체질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

##### 1 거시정책의 안정 운용

- **(거시정책)**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용 등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과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
  -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하반기 재정은 분기별 균등집행 기조를 원칙으로 운용
- **(한시대책)** 기한 만료시 정상화하고 필요시 보완 대책 강구
  - 한시적 재정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는 잔여재원 소진시까지 시행
  - 한시적인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원칙적으로 하반기부터 정상화 추진

##### 2 경제체질 강화와 위기대응능력 제고

- **(가계)** 경제·금융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 은행 예대율 규제('13년말 100% 이하로 감축)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적정수준으로 유도

- **(기업)**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시장경쟁 구조 강화
  - 채권단 주도하에 대기업그룹, 개별대기업, 중소기업 등 대상별로 신용위험 평가, 구조조정 대상 선정, 워크아웃 등 추진
  - 민간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을 연장(10월)
    - \* 금융부채 상환 목적의 기업자산 매각시 법인세 감면(금년 말 일몰도래) 등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자동중지제도 도입 등 통합도산법 개정(12월)
  - 시장진입규제 발굴·개선, 법령 제·개정시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 억제 등을 통해 공정경쟁 확산
- **(금융·외환부문)**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 (6월) 시행을 통해 외환리스크 관리 강화
  - 저축은행 PF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총대출의 30% → '13년 20%)하고 재무건전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
  - 금융상품 광고·판매행위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신설, 외화대출 관리 강화,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등 시행(7월)
  - G-20 등의 국제논의 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규제 개선 검토
  - 장기·고액·한계기업 보증은 줄이고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용보증제도 운용 개선
  - 물가연동국고채 발행(6월~) 등을 통해 장기채시장

발전 촉진

-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성과평가 등 소프트웨어 개선 가속화
  -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성과와 임금 간 연계가 강화되도록 공공기관 연봉제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핵심성과 위주로 단순화
  - 공공기관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등 재무건전성 제고방안 마련

③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

- **(구조적 물가안정)** 경쟁촉진·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원리에 부합하면서 지속가능한 구조적 물가안정방안 마련(9월)
  -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지자체의 공공요금·서비스요금 등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
  - 공공요금의 경우 자발적 원가절감 유도를 위해 원가정보를 공개(7월)하고 中期요금협의회\* 도입 검토
- \* 생산성 제고 노력을 전제로 일정기간 동안 적용될 가격상한을 사전 설정하여 절감유인 부여
- **(부동산시장 안정)** 미분양주택 매입, 주택자금 보증지원 등 '주택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4월)을 차질없이 추진
  -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 검토
  -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하여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의 도심 내 공급기반 확충
  -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료된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증과제도는 제도성과,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 검토

- **(부동산 통계 개선)** 정확한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과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부동산 가격, 공급 등 관련통계 개선
  - 주택가격 승인통계 작성기관을 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12년)하고, 준공·멸실 등 주택공급 통계 개발

2. 고용창출력 제고

◇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고용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민간일자리를 확대하고 재정 일자리사업을 내실화

①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 제고

-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
  - 교육·의료 관련 핵심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강화
    - 부처협의,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정부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교육·의료·관광 등 유망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
    -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 3D방송 추진 등으로 방송산업 활성화
  -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서비스 기업에 대한 수출입금융 확대, 외국과의 국가기술자격 상호인증 등 추진
- **(고용친화적 정책 지원)** 금융공기업의 대출·보증 심사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
  - 외국인투자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기준에 고용요건을 추가

- **(취업지원인프라 강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전문화·대형화로 일자리 중개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해외취업 지원을 강화
- 알선수수료 상한제 개선, 고용지원센터와의 구직정보 공유, 위탁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육성
- 민관 합동으로 해외취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 맞춤형 인력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취업 박람회를 개최(10월)
  - \* UAE 원전 수주에 따른 원전 건설·운영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청년고용 대책)**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단기 청년고용대책 마련
  - \* 청년의 취업애로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10. 7월)를 거쳐 대책 마련

- **(외국인력 정책)** 인력수급 전망, 내국인 고용에 대한 영향, 사회통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외국인력 관리방안 마련
- 외국인력·동포 취업자 및 채용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외국인력 통계 개선 검토

- **(투자 및 창업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하고, 청년·여성·시니어 등의 창업 인프라 강화
- 일자리효과가 큰 입지, 물류, 건설, 외국인 투자 등 4개 핵심분야 「기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6~9월)
- 청년, 여성, 시니어(50대 전후 퇴직자)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지원체제 구축

②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내실화

- **(일자리대책 실효성 강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와 구조적 고용대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국가고용전략 수립(7월)

- 각 부처의 180여개 일자리 사업을 취약계층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지역일자리 창출)** 희망근로 종료 이후 지역 고용시장 충격완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Post-희망근로(8.4만개)' 추진

- **(사회서비스 일자리)** 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간병·돌봄 등 성장잠재력 높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형성 및 일자리창출 촉진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언어치료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자격 신규도입을 검토
-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자금·세제지원 제공

- **(고용통계 개선)**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취약계층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 지역 고용통계를 확충

-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실태 파악을 강화하고 고용의 질 지표 확충
-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군 단위 고용통계 조사 확대(연 1회 → 분기별)

③ 인력양성 체계 개선

- **(공교육 강화)** 고교체제개편(10. 1월) 시행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토론·실습 등 창의·인성교육 확산(10. 2학기, 2,700개교)

- 외부기관이 대학을 평가하는 '외부 대학평가·인증제' 추진

- **(실용형 인력 양성)** 산업단지내 대학이전 촉진방안 마련, 기능올림픽 입상자에 대한 보상을 체육올림픽 수준으로 상향(12월)

- 전문계고를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육

성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확대 등으로 선취업 후진학 여건 조성

-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취약계층 자부담 비율 인하 등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비용 지원을 훈련대상·직종별로 차등화
- 직업능력 지식포털에 민간 훈련정보 추가 등을 통해 콘텐츠 확충

#### ④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 **(제도개선)**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검토
- **(노사관계 선진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차질없이 시행(7월)하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시행('11. 7월)을 철저히 준비
- **(고용형태 다양화)**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시범실시(4월~)의 성과를 분석하여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산('11. 1월)
  - 파견허용업종(현재 32개)을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조정
- **(근로형태 다양화)** 모바일 오피스 등 'Smart Work' 확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등 근로형태·시간의 유연성 제고
  - \* 실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시간만큼 휴가기간을 늘리고, 미달하면 기업이 요구시 미달 시간만큼 초과 근로하여 정산

### 3. 서민생활 개선

◇ 3대 서민정책(보금자리 주택, 든든학자금, 미소금융) 등을 토대로 서민생활 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은 아직 어려운 상황

◇ 서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

#### ① 서민의 생활비 부담 경감

- **(서민생계비 안정)** 서민 소비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격안정 노력 강화
  - 계약재배 등을 통한 적정물량 확보, 비축물량의 탄력적 공급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강화
  -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
  -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원가절감 등을 통해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
- **(의료비 경감)** 서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의료비 지출제도 개혁
  - 중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완하고 대형병원 외래진료 이용 적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만성질환 환자와 의료기관을 1:1로 연결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골의사제'를 시범실시 후 전국 확산 여부 검토
  - 시장기능을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약가 인하 유도
  -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정보를 게시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의료

기관 선택권을 강화

- **(교육비 경감)** 절차 간소화 등으로 든든학자금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공시제·정보공개 등을 통해 등록금·학원비 인상 억제
- 대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추진
- **(통신요금 안정)** 이동통신 재판매제도 시행(9월), 통신요금의 국제비교지표 개발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
- 초당 요금제 확대(12월), 데이터 이월요금제 도입 등 추진

**②**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완

- **(취약계층 지원)** 임시·일용직의 소득과약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저소득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를 시행(7월)하고, 별금 미납 서민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제도' 활성화
-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 기본계획 마련(하반기) 등 추진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윈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가정의 영아 정기돌봄서비스(7월) 등 추진
- 상조, 다단계 등 취약분야의 서민피해 방지 방안 추진
- **(주거·문화 복지)** 원주민 이주수요 흡수를 위한 순환주택 공급 등으로 재개발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등 보호 강화
- 소외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문화돌봄' 사업(6~12월) 확대
- **(기부금세제 개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법상 기부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부금 수수 단체의

공익성 기준을 명확히 설정

**③** 일과 교육을 통한 자활촉진

-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촉진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유인 제고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벗어난 후에도 일정기간 급여를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8 → 6%)
- **(교육기회 확대)** 농산어촌·도서벽지의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를 확대하고, 대학생 멘토링 사업(7월~) 등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확대

- **(서민금융 활성화)** 미소금융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긴급 생활자금 등에 대한 보증부대출 공급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
-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인하(49 → 44%, 7월)하고, 신용정보 공유확대 등을 통해 서민금융회사 대출금리 인하 유도

**④** 취약부문 경쟁력 강화

-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 강구
- 대기업-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공기업, 유통분야, 2차 협력사까지 확산
- 상생협약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
- 구두발주 피해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 추정제 시행(7월)
- 매출대금 현금수령시 하도급업체에도 현금결제 의무화 추진

- **(중소기업)** 3만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성장·성숙 단계별로 장애요인을 파악,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정비 추진(9월)
  - 유망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인수 비중을 확대(70 → 75%)하고, 주물·금형 등 제조기반 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
  - 유망 수출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10월, 중국 등) 등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소상공인)** 골목수퍼의 현대화, IT화 등을 지원하여 '현대식 점포(나들가게)' 2,000개('10년중) 육성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준평가(7월)를 토대로 자금·정보화 등 맞춤형 지원방안 강구
- **(농어업)** 농식품 R&D 평가를 강화하고, 농식품전문투자펀드('10년중 597억원) 운용 등으로 농식품업체 육성
  - 쌀 공급과잉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제도' 시행('11년) 준비
- **(지역)** 지역산업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신 지역발전전략' 수립(12월)
  - 광역 선도산업·시도 전략산업·시군구 특화산업 등 지역산업 간 연계 강화, 지역산업에 대한 R&D·인력양성 지원 등

#### 4.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

- ◇ 신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대외 리더십 제고, 개방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 강화
- ◇ 중장기적 시계하에서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

#### 1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

- **(녹색성장기반 강화)**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저소비구조 정착
  - ESCO(에너지 절약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추진(10월)
  - 공청회·연구용역 등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 기반 구축, 탄소세 도입 여부 및 방식 검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신규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12월) 및 기존 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절감 목표관리제 추진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년) 수립(7월)을 통해 기상재해 피해감축 등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추진
- **(4대강 살리기 사업)** 우기 등 기상여건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보, 준설, 댐 착공 등 금년 내 계획된 공정을 완수
- **(신성장동력 육성)** 신성장동력 펀드 추가 조성(8월, 2,000억원)으로 신소재·나노 융합,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
  - R&D 지원·평가를 경쟁 및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통합 기술로드맵 수립(11월)

- **(해외자원 개발)** 「해외자원개발 역량강화 방안 (’10.1월)」을 토대로 자원개발펀드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 실시
  - \* 직접 투자, 자본·수익권 확보, 자원개발 기업 M&A 등

## ② 대외 리더십 제고와 개방 확대

- **(G-20 정상회의 준비 및 의제설정)**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사전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견을 적극 조정
  -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도국 개발이슈 등 우리나라 주도 의제(Korea Initiative)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 제시
- **(FTA 등 대외협력)** 對선진국 FTA 발효에 대비하여 컨설팅,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FTA 활용기반 강화
  - 한중일 FTA 공동연구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를 적극 추진
- **(외국인투자)** 기술융합·녹색산업 등 중점 유치대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 마련
  - 개발·외자유치 실적에 따른 국고지원 차등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12월)
- **(대외협력 강화)** 원조공여국으로서 개도국과의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금융협력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
  - 우리의 발전경험을 정책사례별로 정리·활용함으로써 지식공유사업(KSP)을 고유의 원조모델로 발전
    - 아프리카조세협력체(ATAF)와의 조세분야 경험전수 프로그램 등
    - 역내 경제감시기구(AMRO) 및 역내 신용보증투자

- 기구(CGIF) 설립·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위상 제고
- 경제규모에 부합하는 수준의 IMF 쿠틀을 확보하고, 국내인력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

## ③ 미래과제 준비

-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및 삶의 질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마련
  - 출산장려, 생산가능인력 확충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육아급여 확대, 보육료 지원방식 개선(종일제 → 종일·반일·시간제) 추진 등으로 일-가정 양립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소득세제 개편방안 마련
    - 학령인구 감소, 노인급증, 주택수요 변화를 고려한 제도개선 추진
      - 교원수급계획 조정, 유후학교시설 활용, 건강보험 재정안정, 장기 주택수급 안정 등을 위한 방안 마련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 통계 확충
- **(재정건전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
  - ’11년 재정운용시 ‘Ten(재량지출 10% 구조조정)-Ten(지출효율화 10대 원칙)’ 전략 추진
  - 낭비·부실·비효율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반 확대
  - ’09년 한시적으로 허용한 지방채 발행대상 확대 등 예외조치를 정상화하고,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10월)하고, 국가채권 및 공기업 배당 관리를 강화

- 다음 세대까지의 장기시계하에서 재정부담 요인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장기재정전망」(inter-generational report) 추진
- **(미래연구 기반 강화)** 일반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가로부터 미래정책 수요를 적극 발굴·수렴
- 미래연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메가트렌드에 대한 분석 및 대응 강화

# 아시아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 -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향 -

\* 본 자료는 2010년 7월 2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에서 발표한 「아시아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세계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한 아시아 경제에 대하여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바 이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

### I. 검토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
-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는 중국·인도를 중심으로 높은 회복세를 보이며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등장

구분	실질 GDP			
	'08	'09	'10	'11
아시아	5.2	3.5	6.9	7.0
한국	2.3	0.2	4.5	5.0
중국	9.6	8.7	10.0	9.9
인도	7.3	5.7	8.8	8.4
ASEAN5	4.7	1.7	5.4	5.6

\* 출처: IMF 세계경제전망, 2010년 4월

-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1/4분기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전년동기비 8.1%)를 보인 한국 등 아시아권 국가의 경기회복세\*는 he지역에 비해 두드러짐

\* 1/4분기 성장률(전년동기비, %): (태국)12.0, (싱가폴)15.5, (말레이시아)10.1

- 이에 다수의 기관, 전문가는 2030년경 세계경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시아의 높은 수출의존도, 낙후된 금융시스템, 미흡한 사회안전망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등장

### II.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

◇ Anoop Singh IMF 아태국장에 따르면 2030년경 아시아의 GDP가 G7을 능가하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큰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GDP 기준 40%)

\* 아시아 GDP/세계 GDP: (10)24%, (20)32%, (30)41%

#### 1) 풍부한 생산가능인구

- 지난 20년간 아시아는 풍부한 생산가능인구\*, 자본유입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결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 및 GDP 비중이 각각 2배, 3배 확대

\* 아시아의 생산가능인구 변화(UN 세계인구전망(09), 단위: 천명)  
(’90) 2,101,193 → (’95) 2,320,527 → (’00) 2,559,221 → (’05) 2,826,433

-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도 마이너스성장 없이 他지역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저력을 입증

\* 아시아GDP성장(’09,IMF): (’08) 3.0% → (’09) 3.5 → (’10) 6.9 → (’11) 7.0

• 이는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일시적인 선진국과는 달리,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  
- 향후에도 아시아권 국가의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

\* 아시아의 생산가능인구 변화(UN 세계인구전망(09), 단위: 천명)  
(’10) 3,075,055 → (’15) 3,301,733 → (’20) 3,506,943 → (’30) 3,879,277

## ② 경제구조의 변화

• 아시아 주요국들은 과도한 수출 의존적 경제성장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 방식으로 전환

\* 무역의존도(07%): (한국) 82.4, (중국) 64.8, (싱가폴) 314.2, (대만) 120.9

- 우리나라 및 중국 등은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내수 진작책을 실시

- 아시아 주요국은 통화가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자국의 구매력 증진을 도모

\* 중국 인민은행이 6.19일 발표한 “위안화 유연성 확대 방침” 등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

• 또한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교역 활성화를 위해 ASEAN 등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통합방안을 모색

## ③ 국제자본의 유입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아시아 국가의 인프라 부문 등을 중심으로 국제자본의 유입이 가속화될 전망

### 아시아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현황

	’07년	’09년	’10년	’14년
한국	3.5	△2.8	△2.7	2.6
중국	0.9	△3.9	△3.9	△0.8
인도	△4.4	△10.4	△10.0	△5.7
G20 평균	△1.0	△7.9	△6.9	△3.7

\* 출처: IMF 정책보고서, 국가별 공공부문 재정여건 모니터링 보고서(2009. 11. 3)

- 또한 아시아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선진국에 비해 높은 금리조건 등은 자본유입을 확대시키는 요소

## Ⅲ.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경계론

### ① 높은 중국 의존도

• 아시아 경제의 중국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시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

### 아시아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현황

(단위: %, 2010. 4월 기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중국	12.5	18	17.7	21.7	17.5
미국	10.9	9.5	16.5	6.2	9.7
일본	11.8	10.2	16.8	4.6	10.1

• 또한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 등이 현실화될 경우 아시아 전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 존재

② 내수성장에 대한 회의론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아시아 지역의 내수성장은 다소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것이며, 민간의 자생력 또한 여전히 미흡
- 선진국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의 과잉생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高실업률 등 내수부문의 위축을 경험할 가능성도 존재
-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분업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아시아 각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제도개선 등이 수출 관련 분야에만 편중될 우려

③ 아시아의 내재적 불안정성

- 낙후된 금융시스템으로 인해 대외적으로는 해외자본유출입 등의 충격에 취약하고, 대내적으로는 실물경제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못하는바, 경제성장이 제한
-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저축률이 높게 유지되면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및 투자의 확대 폭이 제한

④ 아시아 견제세력 등장

- 아시아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他지역으로부터의 견제는 경제성장의 장애물
- 해외자원개발 시장 및 M&A 시장에서의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독주로 인해 아프리카 및 중남미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견제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 존재

IV. 시사점 및 대응방향

◇ 아시아의 중국의존도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 중국경제가 대외부문의 충격과는 무관히 독자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을 갖추는 것이 선행될 필요

◇ 국제금융기구 쿼타 개혁 등 글로벌 금융질서가 아시아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

◇ 가까운 미래에 있어 아시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장기적인 경제전망에 대해 견해차가 존재

- 따라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

- ①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
- ② 금융부문 개혁을 위한 협력
- ③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신성장동력 개발

①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

- 아시아권의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역내 수요 증대를 통한 내수시장의 외연적 확대가 필요한바, ASEAN 등을 활용한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해 나갈 필요
- 미국 및 EU 등 선진국가의 해외수입수요가 제약된 상황에서 아시아 역내 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
- 우리나라는 한·중·일 FTA 등을 통해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협정 등을 체결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또한 중국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수시장 위주의 경제구조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

\* 중국은 가공무역 등을 통한 수출 의존적인 경제성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12차 5개년 경제계획(11~15년) 등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 및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중장기 경제정책 추진중

**2** 금융부문 개혁을 위한 협력

- **(개별국 차원)** 자본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거시건전성 제고,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도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6월 14일에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은 시의 적절
- **(역내 차원)** CMI,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 역내 금융협력을 통한 지역적 대응을 통해 급격한 해외자본 유출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 ABMI: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 **(글로벌 차원)** 한국이 Korea Initiative로 추진중인 Global FSN 이슈를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완료할 필요

**3**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신성장동력 제고

-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서민생활의 안정이 필수적 인바,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제적 노력 증진과 개별국의 사회보장지출의 확대 노력이 필요
- \* 아시아의 빈곤인구는 '90년 29.6%에서 '07년 6.4%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절대규모가 1.2억명('07년 기준)으로 타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
- 아시아 국가의 낮은 기후변화 대응능력은 향후 경제성장에 있어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바,
- 화석연료를 다량 소비\*하는 현재의 경제개발 전략을 수정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
- \* 아시아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이상을 배출('05년 기준)
- \*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와의 녹색성장협력을 위하여 메콩강

유역 개발 포럼 등을 추진중

**메콩강 유역 개발 포럼(9월 6일~7일)**

- ◇ (일시 및 장소) 2010년 9월 6일~7일, 서울
- ◇ (개최 목적) 녹색성장 분야에 있어 아국 기업의 진출 가능 분야 파악 및 메콩강 유역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메콩강 유역 개발 포럼'을 주최
- 신재생 에너지 개발, 폐기물 처리, 기후변화대응, 조립, 저탄소 에코 관광 벨트 조성 등 한-메콩강 유역국 간 녹색성장 협력 가능 분야 논의 (예) 재생에너지 분야(수력,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연료(천연가스 등),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 관련 설비·기자재 공급,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확보를 위한 투자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 본 자료는 2010년 7월 1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서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일시 및 장소: 2010. 6. 30(수) 10:00~12:00, 한국조세연구원 대강당
- 주제발표: 김낙희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 사회: 서울대 정운오 교수
- 지정토론: 단국대 심태섭 교수, 경희대 이준규 교수,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대표, 김점순 세무사회 IFRS 대책위원장, 변용희 STX 부사장,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

◇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안을 '10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회계기준

- '07. 3월 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09. 2월 외감법 개정을 통해 「한국도입국제회계기준(K-IFRS)」 공식 도입
- 희망기업에 한하여 '09년부터 조기적용 가능하며 '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

\* 조기적용 기업: (09년) 14개사, (10년) 27개사 도입 예정

## \* 국제회계기준 도입 배경(도입 로드맵 '07. 3)

- 전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
  - \* 당시 EU, 호주, 캐나다 등 100여개국 채택 또는 채택 예정
-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장부 이중작성 부담 경감

## I. 기업회계기준 개편 내용

### 1. 국제회계기준 도입 개요

- 정부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및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

- K-IFRS 도입과 함께 '11년부터 비상장기업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Local GAAP)을 적용함에 따라 회계기준이 이원화
- 현행: 모든 기업에 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 '11년 이후: 회계기준 이원화
- 상장기업 · 금융회사(저축은행 · 리스 · 신기술 · 할부금융사 제외): K-IFRS 적용

- 비상장기업: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2.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의 주요 차이점**

K-GAAP(현행)	K-IFRS
<p>■ 기업간 회계처리의 일관성 중시</p> <p>① 상세 회계처리방법 제시 -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 제시</p> <p>②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처리 또는 기업의 회계 부담을 감안한 간소한 회계처리 허용</p> <p>* 개별 국가의 고유한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국가간 비교에 부적절</p>	<p>■ 경제적 실질의 반영을 중시</p> <p>① 원칙 중심 규정 - 회계처리의 기본원칙만 제시 - 복수의 회계처리방법 허용</p> <p>②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만 인정</p> <p>* 개별 국가의 고유한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국가간 비교에 부적절</p>

※ 회계기준 차이 사례

	K-GAAP(현행)	K-IFRS
자산평가	•역사적 원가 중심	•공정가치 평가 확대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방법 의무적 검토 규정 없음	•매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정성 재검토
대손충당금	•추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허용	•객관적인 대손사유 발생 시 대손충당금 설정 허용
퇴직급여 추계	•기존 직원이 일시 퇴직시 지급할 금액으로 산정	•임금상승률·퇴직률 등을 감안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산정
리스분류	•금융리스·운용리스의 구체적 분류기준 제시	•리스 분류 원칙만 제시
상환우선주 분류	•상환우선주를 일률적으로 자본으로 분류	•상환우선주를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
자산유동화·받을 어음 할인분류	•일률적으로 매각거래로 분류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로 구분

**II.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세법상 영향**

① 기업회계기준 이원화에 따라 기업간 세부담 불형평 발생

•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수

익·비용을 인식하고 있어 회계기준 간 비용인식 방법이 다를 경우 세부담 차이 발생

\* (상환우선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 K-IFRS는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 → 자본으로 분류시 주주에 대한 지급액은 배당으로서 손금 인정되지 않으나 부채로 분류시 이자비용으로 손금 인정되므로 세부담에 차이 발생

② K-IFRS 도입 이후 세부담 증가

• K-GAAP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던 항목이 K-IFRS에서 폐지됨에 따라 K-IFRS 도입시 세부담 증가

\* (대손충당금) K-IFRS에서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없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규모가 감소

③ 기업회계와 세무의 괴리 심화에 따른 세무조정 증가

• K-IFRS는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확대\*하였으나 세법은 인정하지 않아 평가손익을 부인하는 세무조정 필요

\* 투자부동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등 평가시 공정가치 평가 모형 선택 가능

• K-IFRS에서 기능통화\* 개념이 신규로 도입되었으나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화로 환원하는 세무조정 필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로서 기능통화가 도입될 경우 원화 외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

• 현행 세법이 K-GAAP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 K-IFRS 도입시 회계와 세법의 차이 발생

\* (리스분류) 세법은 K-GAAP 리스분류를 준용하고 있어 K-IFRS 도입시 회계상 분류와 세법상 분류에 차이 발생 가능

### Ⅲ.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세법 개정 방향

#### 원칙1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 유지

-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K-IFRS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 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에 규정 보완
  - \* (상환우선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 K-IFRS는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 → 세법에서 자본으로 일괄분류하여 관련 지출도 모두 배당으로 처리
- 공정가치 평가 손익 등 미실현 손익은 세무상 인정 시 평가 여부에 따라 기업간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불인정

#### 원칙2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세부담 차이가 미미한 경우 회계처리를 수용)

- 기간손익의 차이가 미미하고 세법과 회계기준 차이로 세무조정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회계기준에 따른 세무처리 인정
  - \* (리스분류) 세법상 별도의 분류기준을 폐지하고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각각의 분류를 세법상 인정
- 외화환산 차익의 경우 납세자의 선택권을 인정하여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
  - \* (기능통화, 해외사업장 환산) 원화·기능통화·표시통화 환산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

#### 원칙3 세법목적상 합당한 회계처리는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수용 (단, 초기 세부담 완화방안 마련)

- 감가상각비 등 K-IFRS 도입으로 기존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비용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회계처리 수용
  - 다만, 이 경우 K-IFRS 도입 초기 세부담 완화방안 마련

### Ⅳ. 주요 개정사항

#### 원칙1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 유지

- K-IFRS 적용시 회계처리 방식 변경에 따라 기업간\* 영구적인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거나 기간손익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세법에 별도 규정을 두어 세부담 차이 방지
  - \* K-IFRS 적용 전후 또는 K-IFRS 적용기업과 미적용기업 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특히, 평가손익 등 미실현손익을 세무상 인정할 경우 평가방식에 따라 실질이 동일한 기업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불인정

#### 주요 개정내용

##### ① 회계기준 변경 전·후 세부담 차이 방지

구분	K-GAAP	일반기업 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자산 평가 방법	• 역사적 원가 평가 중심	• 공정가치 평가 확대 * 투자자산, 단기금융자산 등	좌 동	•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불인정	현행 유지
자산 유동화	• 일괄적으로 매각거래로 분류	• 실질에 따라 매각 또는 차입거래로 분류	좌 동	• 매각거래로 분류	현행 유지
보험업 비상위험 준비금	• 비상위험 준비금 적립액을 비용으로 인정	해당사항 없음	• 비상위험 준비금 적립액 비용계상 금지	• 결산조정 사항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	• 신고조정으로 변경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손금으로 인정

② 상장·비상장 기업 간 세부담 차이 방지

개정내용

구분	K-GAAP	일반기업 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상환 우선주 분류	• 일괄적으로 자본으로 분류	좌 동	•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	• 자본으로 분류	현행 유지
예약매출 수익인식	• 건설진행률에 따라 수익인식	좌 동	• 인도시점에 수익인식	• 건설진행률에 따라 수익인식	현행 유지
중소기업의 1년미만 건설계약 수익 인식	• 진행기준·인도기준 선택가능	좌 동	• 진행기준만 허용	• 결산상 인식한 방법 대로 세법상 수익인식	• K-IFRS 적용기업도 세법상 인도기준 선택 허용
생물 자산의 가치증가	•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좌 동	• 수익으로 인식	•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현행 유지
총당부채 인식요건	•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음" 경우	좌 동	•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 총당부채 원칙적으로 불인정	현행 유지

K-GAAP	일반기업 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 원화로 재무제표 작성	• 기능통화 개념 도입 - 외화로 재무제표 작성 가능	좌 동	• 원화 재무제표만 인정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 기능통화 도입 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3가지 방법 중 선택 허용(선택한 방법 계속 적용)
- (방법1)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 (방법2)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방법3) 표시통화(원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외부공시목적으로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일정한 환산방법에 의해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환율(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은 평균환율)로 환산

원칙2

세부담 차이가 미미한 경우 회계처리를 최대한 수용하여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

① 기능통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로서 기능통화가 도입될 경우 원화 외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

- 기능통화 도입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능통화 도입 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신설하고 기업의 선택권을 최대한 인정
- 현행 세법은 기능통화를 인정하지 않아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시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

②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

- 기능통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가지 방법 중 선택 허용
- (방법1)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과세표준을 별도로 계산한 후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 (방법2)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본점의 기능통화로 재작성하여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방법
-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 환산방법에 따라 환산하는 방법

③ 외화자산의 환산손익 인식

- 외화자산환산손익 인식 관련 회계와 세법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 외 기업에 대해서도 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한 환산손익 인

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는 은행 외 기업의 외화자산 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회계상 인식한 환산손익을 부인하는 세무조정 필요

- 은행업은 현행 세법을 유지할 경우 비화폐성 외화 자산의 환산손익을 별도로 인식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므로 회계기준 변경에 맞추어 화폐성 외화 자산의 환산손익만 인식하도록 개정

K-GAAP	일반기업 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업: 모든 외화 자산 환산손익 인식</li> <li>• 일반기업: 화폐성 외화 자산의 환산손익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기업: 화폐성 외화 자산의 환산손익 인식</li> </ul>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업: 모든 외화 자산 환산손익 인식</li> <li>• 일반기업: 환산손익 불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업: 화폐성 외화 자산 환산손익 인식</li> <li>• 일반기업: 화폐성 외화 자산 환산손익 인식 허용</li> </ul>

4 리스 분류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의 리스분류가 다르나 리스분류에 따른 기간손익의 차이가 미미하므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기준의 리스분류를 준용

개정 내용

K-GAAP	일반기업 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운용리스 분류 구체기준* 제시</li> <li>* 실무지침 - (리스기간) 내용 연수의 75% 이상 - (리스료 현재가치)자산의 공정가치의 90% 이 → 금융리스로 분류</li> </ul>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운용리스 분류원칙만 제시</li> <li>* 실무지침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GAAP 분류기준과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각각의 리스분류를 인정</li> </ul>

5 기타 세부담 차이가 미미하여 회계기준을 수용하는 사항

- 회계기준 차이에 따라 미미한 기간손익의 차이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처리방식을 세법상 인정

구분	K-GAAP	일반기업 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건설자금 이자 자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화 대상: 일반 차입금, 특정차입금*</li> <li>* 자본화 의무: 선택사항</li> </ul>	좌 등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화 대상: 특정 차입금만 인정</li> <li>* 자본화 의무: 강제사항으로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차입금: 현행 유지(강제사항)</li> <li>• 일반차입금: 자본화 허용(선택사항)</li> </ul>
채무 재조정시 채권의 현재가치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발생시 이자율로 할인</li> </ul>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재조정시 이자율로 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GAAP 과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업 회계기준, K-GAAP 각각의 계산방식을 인정</li> </ul>

- \* 특정차입금: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
- \* 일반차입금: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특정차입금이 건설자금 규모보다 적은 경우 당해 차액만큼 일반차입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부분을 자본화)

**원칙3**

세법목적상 합당한 회계처리는 세부담이 증가 하더라도 수용 (단, 초기 세부담 완화방안 마련)

**1** 유형자산 감가상각

- 결산조정 유지하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특례 신설
  - ※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특례
- ('13년 말까지 취득분) 기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로 신고조정 허용
- ('14년 이후 취득)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 \* 현행 회계상 내용연수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차이가 큰 일부 업종에 대해 기준내용연수를 조정

**주요 개정내용**

K-GAAP	일반기업 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개별 기업이 판단하여 선택</li> <li>- 기업별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가 다를 수 있음</li> </ul>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국제비교</li> <li>- 동종 기업은 동일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사용</li> <li>⇒ 일부 기업은 내용연수 증가 또는 상각방법 변경(정률→정액)으로 감가상각비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조정 사항</li> <li>-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조정 유지하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특례 신설</li> </ul>

**2** 대손충당금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첫해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제도 전환과정에서 일시적 세부담 증가 방지
  -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대손충당금 규모가 축소되므로 기존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적립액 중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과의 차액이 익금으로 환입
- '13년 이후 IFRS가 개정되어 대손충당금 규모가 다시 증가될 예정이므로 대손충당금 증가액\*과 익금불산입된 일시환입액을 상계
  - \* '13년 이후 대손충당금 추정방법이 예상손실모형으로 변경될 경우 대손충당금 규모가 확대되어 증가액이 일시에 손금산입될 것으로 예상

K-GAAP	일반기업 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합리적 대손 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인식 (발생손실모형)</li> </ul>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 이후 예상되는 손실을 추정하여 인식하는 방법으로 개정예정 (예상손실모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조정 사항</li> <li>-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조정 유지</li> <li>- 다만, 일시 환입액은 2년 유예후 익금산입</li> </ul>

##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본 자료는 2010년 6월 28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지난해 및 금년 상반기 개정된 세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 조세제도를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임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업종 확대('10. 7. 1 시행)
- **(농어촌특별세)**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 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10. 7. 5 시행)
- **(주세)**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표시사항을 표지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간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10. 7. 1 시행)
- **(관세)** 수입물품 관세 무담보 제도 시행('10. 7. 1 시행)
- **(소득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추가('10. 7. 1 시행)

###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①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요건 완화

- **(중 전)**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 한 법인이나 개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부가가치세 납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

여 납부

- **(개정)** 국세청장 승인 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신청만으로도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시행시기)** '10. 7. 1부터 적용
- **(기대효과)**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요건 완화로 기업체 납세부담 완화

####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중 전)**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과치 않음
- **(개정)**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시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시행시기)** '10. 7. 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기대효과)**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세원 양성화 유도

#### ③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업종 확대

- **(중 전)** 변호사·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은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나, 공인노무사·약사 등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

만인 경우는 간이과세 적용

- **(개정)** 공인노무사·약사·한약사·수의사의 경우에도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일반과세 적용
- **(시행시기)** '10.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기대효과)** 전문직 사업자 간 과세형평 도모

#### ④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 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종전)**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273의3)에 대해 농특세(20%) 비과세  
 ※ 다자녀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 **(개정)**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100% 면제(지방세법 §273의3)에 대해 농특세(20%) 비과세
- **(시행시기)** '10. 7. 5 이후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
- **(기대효과)** 저출산문제 해소에 기여

#### 참고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의 주요내용(지방세법 §273의3, '10. 7. 5 시행)

- **(감면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2%) 및 등록세(5%) 면제  
 ※ (개정 전) 50% 감면(감면조례) → (개정 후) 100% 면제(지방세법)
- (일반승용차) 차량가격 2천만원까지는 전액 면제
- (봉고차·1톤 이하 화물차 등)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
- **(감면시한)** '12. 12. 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⑤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 **(종전)**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용기주입연월(일), 원료용 주류 및 첨가물료의 명칭과 함량, 상표명
- **(개정)**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 등의 표시사항을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함  
 -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주류의 종류, 주류의 알코올분 함량, 주류의 용량, 제조일자 및 면세 여부,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첨가재료의 명칭, 상표명
- **(시행시기)** '10. 7. 1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 **(기대효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가 신장될 것으로 기대됨

#### ⑥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간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

- **(신설)**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대상임
- **(시행시기)** '10. 7. 1 이후 표시사항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

#### ⑦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

- **(종전)** 외국에서 물품 수입시 관세담보를 제공
- **(개정)** 수입신고시 원칙적으로 관세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관세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  
 -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 **(시행시기)** '10. 7. 1 이후 시행

- **(기대효과)** 수입신고시 담보 설정과 관련된 기업의 각종 부담 완화

**8**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 **(중 전)**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현금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대상 업종)

- ☞ (전문직)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 (의료업종)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사
- ☞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미발급시 제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과태료 부과

\*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면제

- (미발급 사실 신고자 포상)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상당액'의 신고포상금 지급

- **(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다음 4개 업종을 추가

- (전문직) 공인노무사업
- (기타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시행시기)** '10. 7. 1 이후 시행
- **(기대효과)** 공인노무사,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의 세원투명성 제고

# 세금 관련 안내문·통지서를 전면 개선하여 납세편의 증진

- 국세청 최초로 시각디자인·심리학 자문을 거쳐 쉽고 부드럽게 개선 -

\* 본 자료는 2010년 6월 22일 국세청 법무과에서 발표한 「세금 관련 안내문·통지서를 전면 개선하여 납세편의 증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우리 청은 납세자의 세정에 대한 이해도와 납세의 무 이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 '09년에는 「1단계」로 세법령이나 세무행정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세무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선한 데 이어
- 금년에는 「2단계」로 납세자에게 전달되는 각종 세금관련 안내문과 통지서를 납세자 시각에서 전면 개선하기로 하였음

### 개선한 주요 안내문·통지서(예시)

- ◇ 과세자료 처리 :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등
- ◇ 조사 :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 세무조사사전통지서·세무조사결과통지서
- ◇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안내문

## I. 세금 관련 안내문·통지서 개선

### 개선대상

- 우리 청이 국세행정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안내문·통지서는 총 218개\*임
- \* 법령서식 65건, 훈령·기타 서식 153건
- 금년 중에 모든 안내문과 통지서를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개선한다는 목표를 두고
- 상반기에는 중요성·파급효과 등을 감안, 과세자료 처리·조사·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한 안내문·통지서 103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였음

### 추진경과

-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안내문·통지서 개선 T/F팀」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알기 쉬운 세무안내 자문위원회\*」 구성
- \* 학예연구관·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세법학 교수 등 외부위원 6인과 징세법무국장, 법무과장 등 총 8명으로 구성
- T/F팀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된 개선원칙에 따라 상반기 개선대상 안내문·통지서에 대한 개선시안 마련

**안내문·통지서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 ◇ 과세관청의 입장 → 납세자의 입장에서 기술
- ◇ 지시·명령형 등 권위적 문장 → 안내·설명형 문장으로 기술
- ◇ 세무지식이 없는 납세자에게도 알기 쉽게
- ◇ 유사한 유형(예 : 해명안내, 신고안내 등)에 대해서는 통일된 서식 마련

- 또한, 단순한 문장·문구 수정이 아닌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국립국어원 등 외부전문기관 자문을 적극 활용하였음
- 특히, 안내문·통지서에 대한 납세자의 호감도와 이해도 제고, 효과적인 정보전달 등을 위해 국제청 최초로 시각디자인과 심리학 자문을 중점적으로 받았음

**외부 전문기관 자문 활용**

자문분야	자문기관	중점 자문대상
국어학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문장·문구 순화, 문법에 맞는 문장 사용 등
시각디자인	선문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안내문·통지서에 대한 시각적 호감도 및 가독성(可讀性) 제고 방법(글자모양·크기), 중요정보의 효과적인 전달방법 등
심리학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개선 전·후에 대한 심리학적 호감도 비교(stress test), 안내문·통지서에 대한 가독성 제고 방법, 효과적인 정보전달 방법 등

- 분야별 전문가 자문 후 소관 국·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주요 개선내용**

- 안내문·통지서의 주요 자문사례와 개선내용은 다

음과 같음

**1. 안내문·통지서 양식의 표준화**

- **자문내용**(시각디자인·심리학 분야)

1. 동일한 유형의 안내문에 대해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보전달과 이해도 측면에서 장애
2. 복잡한 표 양식은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권위적인 분위기 조성

- **개선내용**

종 전	개 선
동일유형의 문서도 세목마다 형식이 다르고 대부분 표 서식	안내문은 불필요한 표 서식을 없애고 서술형식으로, 통지서는 행안부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기안문 형식으로 통일
문서의 내용구조가 세목마다 다름	〈안내문〉은 「인사말-문서발송 사유-주요 전달 내용-끝맺음-처리담당자 및 연락처」형식으로 〈통지서〉는 「수신자-개괄적 통지내용-구체적 사항-처리담당자 및 연락처」형식으로 문단 구조 통일

**2. 권위적 문구를 배제한 알기 쉽고 편안 문서**

- **자문내용**(심리학 분야)

지나치게 권위적인 문구는 납세자의 반감을 초래, 오히려 효과성을 떨어뜨림

- **개선내용**

- 알기 쉬운 세무용어를 사용하고 한자어를 한글로 순화하였으며, 권위적인 문구를 배제
- 제재적인 표현 대신 납세자의 혜택을 강조하는 표현 사용, 넛지효과를 반영한 표현 등으로 자발적인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예1: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 현금영수증 가맹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예2: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율이 90%를 넘었습니다.)

**3. 정확한 정보전달**

• **자문내용**(시각디자인·심리학 분야)

1. 중요 정보는 표 안에 삽입하되, 다른 문장·글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2. 서체의 선택은 1~2개로 하여 시각적 부담을 줄이고 크기는 30cm 떨어진 거리에서 가장 읽기 쉬운 12~13 포인트로 하는 것이 좋음

• **개선내용**

- 납세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우선 배치하는 등 중요도에 따라 문서내용을 재구성하고, 중요 내용은 표 안에 삽입, 뚜렷하게 표시
  - \* 글상자 테두리 선의 굵기와 명암은 시각디자인 자문을 받아 적절하게 조정
- 본문 글자 크기를 「일반문장」은 바탕 12포인트, 「강조할 부분」은 굴림 12~13포인트로 통일하고 여백을 표준화(좌우 : 25.4, 머리말, 꼬리말, 위쪽, 아래쪽 : 12.7)

**4. 납세자 정보 보호 및 납세자 편의 제고**

- 납세자 동일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행안부의 「사무관리규정」 반영)
- 담당직원 연락처를 명기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개선

- 납세자 입장에서 중요 법령 조문은 내용을 명기하여 법전을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개선안에 대한 평가**

- 심리학 자문과정에서 국어학·시각디자인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한 1차 개선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 개선안이 개선 전(前) 전보다 전반적인 호감도, 내용의 친절성, 이해도 측면에서 더 우수하고, 사용한 문장이나 단어의 고압적인 정도도 역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안내문·통지서 1차 개선안에 대한 설문 결과**

설문 문항	평균비율
개선안이 호감도가 높다고 선택한 비율	89.6%
개선안의 친절도가 높다고 선택한 비율	97.9%
개선안의 이해도가 높다고 선택한 비율	94.8%
원안(개선 전)이 더 고압적이라고 선택한 비율	99.0%

- 1차 개선안에 추가하여 디자인(적당한 테두리선 굵기와 진한 정도 유지) 및 서체 선택의 개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굴림체와 바탕체로 구분 편집) 등 심리학 자문의견을 반영, 확정된 최종 개선안은
- 안내문·통지서에 대한 납세자의 호감도와 이해도 증가,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개선, 자발적인 납세의식 증진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II. 세무용어 알기 쉽게 개선**

**추진경과**

- 지난 해 1단계로 356건의 개선안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에도 세법령 용어를 중심으로 215건의 개

선안을 마련하였음

- '09년에 마련한 세무용어 개선 기본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 내·외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한국세법학회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의 국어자문도 받았음

### 세무용어 개선 기본원칙

- ◇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쉽게 개선
- ◇ 축약된 용어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거나 풀어 씀
- ◇ 권위적 용어는 납세자 입장에서 순화
- ◇ 용어 변경 후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

### 주요 개선 사례

- 세무용어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음

#### 1.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순화

-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 ☞ '지대(地代)' → '토지임대료' / '차임(借賃)' → '임차료'
  -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 → '장부기록세액공제'
  - '허여(許與)' → '허락' / '계류(繫留)' → '진행'
  - '무주(無主)의' → '소유자 없는'

#### 2. 줄여 쓴 표현은 쉽게 풀어쓰기

- 용어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너무 줄여 쓴 표현을 풀어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
  - ☞ '사용수익기부재산' → '기부 후 사용재산'

'건설자금이자' → '건설관련 차입금이자'

'개찰' → '입찰가격 공개' / '구획' → '경계 구분'  
'수지계산서' → '수입·지출계산서'

### 3. 권위적 용어는 납세자 입장에서 부드럽게, 정부시책도 반영

- 납세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은 납세자 입장에서 순화하고, 가급적 정부정책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용어를 개선
  - ☞ '보고불성실가산세' → '제출불성실가산세'
  - '다자녀 추가공제' → '다자녀 우대공제'

### III. 향후 계획

- 금년 상반기에 개선한 법령서식(22건)과 세법령용어(174건) 개선안은 6월 중에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 훈령서식(81건) 및 자체 사용 가능용어(41건)는 즉시 사용하는 한편, 관련 훈령·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것임
- 또한, 업무량을 고려하여 하반기로 배분된 안내문·통지서 개선대상 115건에 대하여는 상반기 경험을 기초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 세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세무용어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임

# “지방세·관세환급금 쌍방향 정보공유”로 빈틈 없는 지방세 관리

– 전국 지자체 지방세 체납자의 관세 환급금 압류·징수 조치 가능 –

\* 본 자료는 2010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에서 발표한 「“지방세·관세 환급금 쌍방향 정보공유”로 빈틈 없는 지방세 관리」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는 6월 24일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와 관세환급금의 쌍방향 정보 공유를 통해 빈틈 없는 체납정리 및 압류징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과 환급금(지방세, 관세)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 이에 따라 체납 정리를 위한 세원정보가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되는 관세환급금 1억원을 사전에 압류 징수함으로써, 세금 누수 방지효과와 자치단체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 특히 6월 24일부터는 지방세와 관세환급금 쌍방향 정보공유 대상에 '08년 전국 체납액의 24%를 차지하는 서울시도 포함됨에 따라 더욱 빈틈 없는 지방세 체납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안부는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한 “전자공매”도 추진하여 체납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유관기관과의 세원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세원누락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평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1 지방세 ↔ 관세 환급금 쌍방향 정보공유를 통한 지방세 체납관리 강화

지방세 및 관세 환급대상자 중 체납이 있을 경우 상호 압류징수 가능토록 정보공유  
– 지방세 및 관세 체납자에게 환급이 발생할 경우 채권압류 조치

- 환급정보 추진배경
  - 지방세 ↔ 관세환급금 정보 공유를 통하여 체납자(지방세, 관세)에게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상호 체납자에 대한 환급금 발생시 체납금 우선 충당 조치

그간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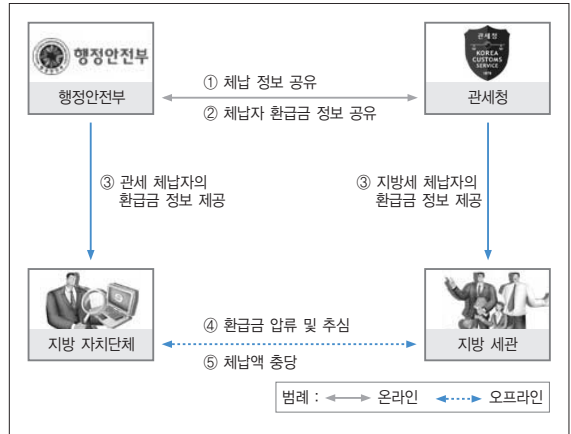
- 지방세 ↔ 관세환급금 상호 연계협의 및 개발 : '08. 6~'09. 9
- 환급정보 연계 시범운영 (부산지역) : '09. 10. 1~'10. 16
- 환급정보 공유 전국 적용(서울시 제외) : '09. 10. 19  
※ '10. 6. 24 서울시를 포함하여 관세 환급정보 공유 확대

- 환급정보 활용 현황 ('09. 10. 19~'10. 6. 15, 서울시 제외)
- 지방세 체납자(전일 기준)의 관세 환급정보를 온라인 실시간을 통해 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지방세 체납액 충당에 활용중

정보 활용 자치단체		
압류요청 기관수	압류요청 건수	압류요청 금액
용인, 평택 등 5개 기관	9 건	101,265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관세청 환급정보, 지자체 활용실태 점검 및 의견수렴 : '10. 9월
- 행안부와 관세청 체납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 : '10. 10월중  
※ 행안부, 관세청, 국세청 등 지속적인 세원정보공유 운영을 위한 관계자 정기회의 추진 예정

참고 2 지방세 ↔ 관세 환급금 정보 활용 흐름도



참고 3 자치단체 → 관세청 압류·징수 현황(관세환급금 정보 활용현황)

(기간: '09. 10. 19~'10. 6. 15, 단위: 건/원)

시도	정보 활용 자치단체(압류)			비 고
	압류 기관수	압류 건수	압류 금액	
계	5	9	101,265,270	
부산	-	-	-	
대구	-	-	-	
인천	-	-	-	
광주	-	-	-	
대전	-	-	-	
울산	-	-	-	
경기	2	4	76,465,170	용인 : 72,828,710 평택 : 3,636,460
강원	-	-	-	
충북	-	-	-	
충남	1	1	16,915,140	당진 : 16,915,140
전북	-	-	-	
전남	-	-	-	
경북	-	-	-	
경남	2	4	7,884,960	김해 : 5,798,090 양산 : 2,086,870
제주	-	-	-	

# | 재정통계 |



- 취득세 (징수실적)
- 농지세(징수실적)
- 농업소득세(징수실적)
- 자동차세 및 동 부가세(징수실적)
- 도축세(징수실적)
- 도시계획세(징수실적)
- 등록세(징수실적)
- 면허세(징수실적)
- 경주마권세(징수실적)
- 지역개발세(징수실적)
- 공동시설세(징수실적)
- 지방교육세(징수실적)
- 주민세(징수실적)
- 재산세(징수실적)
- 담배소비세(징수실적)
- 종합토지세(징수실적)
- 주행세(징수실적)
- 사업소세(징수실적)

## 1. 취득세 (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66	2,732,716	2,550,839	-	-	93.3
1967	3,889,500	3,705,597	-	-	95.2
1968	5,522,237	5,183,913	-	-	93.8
1969	7,822,230	7,210,909	-	-	92.1
1970	12,044,977	11,056,747	5,329	982,902	91.7
1971	13,718,108	12,723,719	5,646	988,743	92.8
1972	12,953,687	11,782,615	14,183	1,156,889	90.9
1973	21,285,919	19,866,903	16,849	1,402,167	93.3
1974	32,583,665	30,451,349	7,532	2,124,780	93.4
1975	44,688,358	41,820,047	7,137	2,861,174	93.5
1976	61,989,266	58,399,128	42,973	3,547,165	92.6
1977	79,075,701	75,462,833	16,280	3,596,588	95.4
1978	120,336,211	114,554,884	14,000	5,767,327	96.0
1979	140,207,708	135,036,868	20,098	5,150,742	96.3
1980	179,491,339	162,951,659	27,774	16,511,906	90.8
1981	189,019,047	179,768,902	110,925	9,139,220	95.1
1982	224,591,792	215,508,078	81,680	9,002,034	96.0
1983	321,600,461	307,767,471	54,519	13,778,471	95.7
1984	352,605,605	337,526,079	55,730	15,023,796	95.7
1985	371,906,618	356,321,794	82,913	15,501,911	95.8
1986	392,563,939	371,184,705	38,979	21,340,255	94.6
1987	471,615,410	452,652,110	190,665	18,772,635	96.0
1988	682,609,529	661,494,476	238,504	20,876,549	96.9
1989	814,230,252	787,215,449	31,678	26,983,125	96.7
1990	1,203,145,983	1,164,926,685	333,626	37,885,672	96.8
1991	1,598,721,293	1,525,728,689	67,605	72,924,999	95.4
1992	1,835,920,941	1,732,592,469	1,575,198	101,753,274	94.4
1993	2,155,084,597	2,042,961,731	816,957	111,305,909	94.8
1994	2,489,661,606	2,344,644,232	650,315	144,367,059	94.2
1995	2,887,708,640	2,691,021,647	893,864	195,793,129	93.2
1996	3,235,987,061	3,041,240,598	5,640,534	189,105,929	94.0
1997	3,589,916,521	3,319,483,688	2,584,214	267,848,619	92.5
1998	2,769,184,363	2,479,829,135	4,228,635	285,126,593	89.6
1999	3,249,652,617	3,065,410,709	4,320,551	179,921,357	94.3
2000	3,381,191,544	3,148,197,277	6,073,616	226,920,651	93.1
2001	3,945,566,203	3,782,506,193	3,734,867	159,325,143	95.9
2002	5,476,181,726	5,278,225,160	2,970,001	194,985,909	96.4
2003	5,695,281,558	5,502,868,163	2,748,487	189,664,908	96.6
2004	5,563,088,574	5,366,060,687	4,080,969	192,946,918	96.5
2005	6,866,771,491	6,648,964,205	8,356,480	209,450,806	96.8
2006	7,910,010,246	7,667,481,900	11,261,095	231,267,251	96.9
2007	7,494,858,134	7,261,465,493	16,097,053	217,295,588	96.9
2008	7,195,638,204	6,916,038,903	16,703,440	262,895,861	96.1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징연감』, 각 연도.

## 2. 농지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66	5,007,426	4,962,986	-	-	99.1
1967	3,383,781	3,350,208	-	-	99.0
1968	3,492,754	3,449,848	-	-	98.8
1969	4,837,367	4,780,465	-	-	98.8
1970	3,172,920	3,122,581	291	50,048	98.4
1971	4,569,744	4,522,039	754	46,951	99.0
1972	5,398,010	5,336,307	1,038	60,665	98.9
1973	8,155,912	8,086,684	854	68,374	99.2
1974	13,979,682	13,866,309	869	112,504	99.2
1975	21,024,859	20,840,899	1,083	182,877	99.1
1976	31,785,422	31,636,878	103	148,441	99.5
1977	36,095,946	35,945,398	256	150,292	99.6
1978	44,529,331	44,317,512	2,204	209,615	99.5
1979	53,911,509	53,644,024	3,090	264,395	99.5
1980	63,140,610	62,573,402	7,312	559,896	99.1
1981	78,548,324	78,039,313	3,914	505,097	99.4
1982	83,360,409	83,027,893	1,281	331,235	99.6
1983	91,014,469	90,591,843	1,888	420,738	99.5
1984	93,133,265	92,547,119	5,679	580,467	99.4
1985	14,387,276	14,215,088	477	171,711	98.8
1986	14,991,276	14,758,011	14,081	219,184	98.4
1987	16,857,545	16,661,233	1,228	195,084	98.8
1988	18,971,649	18,713,540	553	257,556	98.6
1989	7,481,528	7,268,021	36	213,471	97.1
1990	6,175,025	5,988,519	20	186,486	97.0
1991	6,002,641	5,832,252	339	170,050	97.2
1992	3,222,644	2,986,892	-	235,752	92.7
1993	2,317,098	2,248,633	-	68,465	97.0
1994	2,455,929	2,303,323	408	152,198	93.8
1995	2,151,905	2,066,209	78	85,618	96.0
1996	3,946,006	2,639,432	-	1,306,574	66.9
1997	2,856,137	2,797,314	53	58,770	97.9
1998	2,945,446	2,679,326	476	265,644	91.0
1999	4,538,788	4,343,434	27	195,327	95.7
2000	3,660,202	3,190,521	203	169,478	95.0

주: 2001년부터 폐지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징연감」, 각 연도.

## 3. 농업소득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2001	1,394,487	1,304,764	445	89,278	93.6
2002	2,775,011	2,708,439	24	66,458	97.6
2003	3,728,254	3,668,594	-	59,660	98.4
2004	4,144,201	4,100,874	31	43,296	99.0
2005	11,499	11,499	0	0	100.0
2006	141	141	0	0	100.0
2007	355	355	0	0	100.0
2008	126	126	0	0	100.0

주: 2001년 부터 신설되어 2005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과세가 중단되었다가 2010년 폐지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 4. 자동차세 및 동 부가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66	1,101,364	1,080,551	-	-	98.1
1967	1,577,670	1,555,018	-	-	98.6
1968	2,541,015	2,487,508	-	-	97.9
1969	3,977,054	3,869,259	-	-	97.3
1970	5,836,702	5,604,762	1,027	230,913	96.0
1971	6,683,623	6,392,587	3,275	287,761	95.6
1972	7,191,846	6,879,604	6,269	305,973	95.7
1973	8,246,012	7,866,028	4,868	375,116	95.4
1974	12,926,678	12,015,901	6,394	904,383	93.0
1975	13,111,075	12,353,486	5,151	752,438	94.2
1976	14,868,551	14,136,608	5,625	726,318	95.1
1977	19,681,586	18,794,823	2,051	884,712	95.5
1978	26,847,009	25,505,007	16,478	1,325,524	95.0
1979	51,695,657	48,438,716	31,648	3,225,293	93.7
1980	61,705,068	56,941,875	87,238	4,675,955	92.3
1981	64,126,941	61,012,593	166,149	2,948,199	95.1
1982	71,927,392	67,980,513	103,556	3,843,323	94.5
1983	88,846,791	83,804,529	100,124	4,942,138	94.3
1984	110,390,853	103,668,706	126,275	6,595,872	93.9
1985	126,351,391	118,304,698	81,456	7,965,237	93.6
1986	150,150,125	139,133,068	72,621	10,944,436	92.7
1987	182,940,922	167,719,282	68,485	15,153,155	91.7
1988	236,512,750	218,055,046	113,883	18,343,821	92.2
1989	329,207,548	304,680,677	107,754	24,419,117	92.5
1990	463,224,723	425,934,259	253,617	37,036,847	91.9
1991	688,540,985	634,953,186	285,957	53,301,842	92.2
1992	884,564,081	826,234,509	111,955	58,217,617	93.4
1993	1,092,673,409	1,027,124,984	233,042	65,315,383	94.0
1994	1,385,488,301	1,293,785,738	86,816	91,615,747	93.4
1995	1,690,295,073	1,545,231,914	156,930	144,906,229	91.4
1996	1,988,110,192	1,818,439,902	159,133	169,511,157	91.5
1997	2,280,515,542	2,054,012,317	299,084	226,204,141	90.1
1998	2,459,105,586	2,174,871,379	479,604	283,754,603	88.4
1999	2,183,304,425	1,936,391,986	854,393	246,058,046	88.7
2000	2,258,608,855	2,007,008,077	1,733,015	249,867,763	88.9
2001	2,094,713,435	1,889,419,957	2,556,585	202,736,893	90.2
2002	1,958,000,279	1,750,720,020	2,349,223	204,931,036	89.4
2003	2,022,637,290	1,778,302,609	7,047,398	237,287,283	87.9
2004	2,055,458,001	1,791,985,446	7,219,974	256,252,581	87.2
2005	2,166,004,577	1,902,124,295	5,954,893	257,925,389	87.8
2006	2,416,462,519	2,133,765,120	9,934,195	272,763,204	88.3
2007	2,662,653,415	2,369,911,498	16,649,693	276,092,224	89.0
2008	2,937,848,581	2,610,905,304	12,608,780	314,334,497	88.9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징연감』, 각 연도.

## 5. 도축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66	190,920	190,691	-	-	99.9
1967	178,462	178,431	-	-	100.0
1968	166,061	166,039	-	-	100.0
1969	199,060	199,047	-	-	100.0
1970	235,885	235,842	-	43	100.0
1971	214,897	214,876	-	21	100.0
1972	227,271	227,266	-	6	100.0
1973	225,361	225,198	1	162	99.9
1974	305,284	305,282	-	2	100.0
1975	548,050	546,142	-	1,908	99.7
1976	1,093,811	1,093,432	-	379	100.0
1977	1,375,444	1,375,434	-	10	100.0
1978	1,453,752	1,453,704	-	48	100.0
1979	3,847,158	3,844,384	-	2,774	99.9
1980	4,684,425	4,680,463	-	3,962	99.9
1981	6,328,806	6,199,928	-	128,878	98.0
1982	7,817,660	7,813,953	-	3,707	100.0
1983	10,629,013	10,628,925	-	88	100.0
1984	12,712,686	12,712,567	-	119	100.0
1985	15,546,181	15,538,107	-	8,074	99.9
1986	18,600,542	18,590,189	-	10,353	99.9
1987	19,359,972	19,303,668	-	56,304	99.7
1988	17,825,053	17,821,988	-	3,065	100.0
1989	17,388,530	17,348,290	-	40,240	99.8
1990	17,778,571	17,778,181	-	390	100.0
1991	21,812,673	21,764,203	-	48,470	99.8
1992	22,537,472	22,528,846	-	8,626	100.0
1993	26,266,420	26,266,384	-	36	100.0
1994	30,004,349	29,878,406	-	125,943	99.6
1995	33,956,112	33,911,426	-	44,686	99.9
1996	38,643,397	37,885,553	-	757,844	98.0
1997	48,177,851	47,203,683	-	974,168	98.0
1998	48,968,894	48,193,947	-	774,947	98.4
1999	45,685,735	45,591,654	-	94,081	99.8
2000	51,889,882	51,241,527	-	757,355	98.5
2001	45,162,534	44,953,307	-	209,227	99.5
2002	49,537,515	48,523,757	-	1,013,758	98.0
2003	44,969,648	44,704,158	129,580	765,910	98.0
2004	45,282,415	44,459,841	113,228	709,346	98.2
2005	48,551,605	46,906,379	108,584	1,536,642	96.6
2006	50,563,225	49,328,668	0	1,234,557	97.6
2007	52,532,778	51,869,805	349,859	313,114	98.7
2008	53,337,797	52,361,169	186,649	789,979	98.2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징연감』, 각 연도.

## 6. 도시계획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66	68,545	64,974	-	-	94.8
1967	219,868	213,952	-	-	97.3
1968	1,162,739	1,132,375	-	-	97.4
1969	1,553,137	1,467,477	-	-	94.5
1970	2,329,455	2,206,294	697	122,464	94.7
1971	2,941,236	2,781,217	969	159,050	94.6
1972	5,841,072	5,490,877	4,336	345,859	94.0
1973	6,835,017	6,476,076	6,560	352,381	94.7
1974	8,716,489	8,321,759	2,914	391,816	95.5
1975	14,010,556	13,404,078	1,995	604,483	95.7
1976	18,185,516	17,522,398	950	662,168	96.4
1977	18,958,413	18,370,067	1,881	586,465	96.9
1978	20,649,353	20,064,960	7,197	577,196	97.2
1979	35,088,553	34,220,600	4,220	863,733	97.5
1980	52,464,470	50,965,292	13,474	1,485,704	97.1
1981	68,277,314	66,609,343	14,063	1,653,908	97.6
1982	82,615,820	80,628,450	15,307	1,972,063	97.6
1983	94,699,993	92,187,819	4,736	2,507,438	97.3
1984	102,863,087	100,443,491	4,589	2,415,007	97.6
1985	117,100,289	114,462,582	11,564	2,626,143	97.7
1986	126,631,503	123,863,460	26,504	2,741,539	97.8
1987	138,208,661	134,423,511	7,322	3,777,828	97.3
1988	152,408,654	149,081,710	43,974	3,282,970	97.8
1989	185,065,846	181,382,102	11,841	3,671,903	98.0
1990	250,003,716	243,623,924	16,928	6,362,864	97.4
1991	314,412,635	307,319,308	6,084	7,087,243	97.7
1992	403,265,211	394,490,513	20,372	8,754,326	97.8
1993	484,286,708	473,296,721	56,825	10,933,162	97.7
1994	582,727,399	563,953,182	24,495	18,749,722	96.8
1995	676,870,095	652,729,391	74,898	24,065,806	96.4
1996	717,931,035	697,151,775	134,381	20,644,879	97.1
1997	756,653,950	731,470,960	71,305	25,111,685	96.7
1998	798,266,412	752,324,686	125,104	45,816,622	94.2
1999	828,119,699	785,013,238	260,580	42,845,881	94.8
2000	852,717,717	815,419,979	465,925	36,831,813	95.6
2001	881,382,247	851,003,880	506,514	29,871,583	96.6
2002	922,616,242	893,751,448	337,876	28,526,918	96.9
2003	1,036,104,693	998,481,964	387,119	37,235,610	96.4
2004	1,236,605,771	1,185,276,693	695,498	50,633,580	95.8
2005	1,406,083,976	1,352,548,257	1,143,623	52,392,096	96.2
2006	1,659,178,128	1,606,215,227	2,075,224	50,887,677	96.8
2007	1,937,631,380	1,882,828,410	2,962,180	51,840,790	97.2
2008	2,250,967,811	2,182,788,657	3,573,019	64,606,135	97.0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징연감」, 각 연도.

## 7. 등록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77	66,789,310	66,732,739	1	56,570	99.9
1978	91,945,064	91,764,320	-	180,744	99.8
1979	92,992,553	92,449,918	-	542,635	99.4
1980	125,614,781	122,373,011	6,283	3,235,487	97.4
1981	157,880,888	156,447,962	8,876	1,424,050	99.1
1982	246,878,299	245,578,782	10,166	1,289,351	99.5
1983	341,116,027	338,803,793	4,733	2,307,501	99.3
1984	335,039,118	331,986,683	51,966	3,000,469	99.1
1985	363,151,951	361,117,598	9,806	2,024,547	99.4
1986	397,717,043	395,854,995	323	1,861,725	99.5
1987	552,433,749	550,266,864	4,972	2,161,913	99.6
1988	797,479,548	794,472,598	866	3,006,084	99.6
1989	1,094,459,747	1,091,125,768	13,245	3,320,734	99.7
1990	1,381,475,130	1,377,632,152	101,958	3,741,020	99.7
1991	1,903,169,050	1,894,968,347	2,925	8,197,778	99.6
1992	2,093,224,140	2,080,451,521	549,724	12,222,895	99.4
1993	2,560,393,043	2,548,326,715	180,394	11,885,934	99.5
1994	3,110,446,356	3,085,663,908	3,849	24,778,599	99.2
1995	3,655,019,178	3,632,509,840	43,806	22,465,532	99.4
1996	4,077,001,506	4,053,708,647	83,395	23,209,464	99.4
1997	4,296,314,259	4,257,327,918	77,297	38,909,044	99.1
1998	3,413,783,969	3,388,475,193	164,509	25,144,267	99.3
1999	4,346,535,040	4,326,677,196	87,142	19,770,702	99.5
2000	4,541,299,156	4,527,575,209	231,547	13,492,400	99.7
2001	5,599,588,658	5,586,669,920	968,518	11,950,220	99.8
2002	7,523,797,241	7,504,456,328	4,028,525	15,312,388	99.7
2003	7,577,098,783	7,549,975,348	1,486,216	25,637,219	99.6
2004	6,752,980,942	6,715,793,695	6,326,273	30,860,974	99.4
2005	6,820,414,541	6,783,683,411	4,150,961	32,580,169	99.5
2006	8,002,221,472	7,949,523,356	9,505,373	43,192,743	99.3
2007	7,390,019,793	7,253,623,050	29,977,124	106,419,619	98.2
2008	7,276,235,939	7,142,906,232	19,899,865	113,429,842	98.2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 8. 면허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66	595,876	555,101	-	-	93.1
1967	717,744	668,364	-	-	93.1
1968	908,297	848,047	-	-	93.3
1969	1,122,307	1,045,056	-	-	93.1
1970	1,334,537	1,228,057	4,835	101,644	92.0
1971	1,558,200	1,428,551	4,607	125,042	91.7
1972	1,519,464	1,351,270	6,382	161,812	88.9
1973	2,790,976	2,520,622	8,511	261,843	90.3
1974	4,455,385	3,950,403	17,123	487,859	88.7
1975	5,449,382	4,865,508	4,558	579,316	89.3
1976	6,276,904	5,555,199	6,331	715,374	88.5
1977	10,974,807	10,033,123	4,564	937,120	91.4
1978	18,117,570	15,172,215	26,237	2,919,118	83.7
1979	18,281,254	17,322,041	42,474	916,739	94.8
1980	19,599,671	18,244,129	59,865	1,295,677	93.1
1981	21,669,636	19,919,513	247,467	1,502,656	91.9
1982	26,680,745	24,240,654	271,466	2,168,625	90.9
1983	31,575,564	28,741,193	208,045	2,626,326	91.0
1984	33,567,803	30,560,630	200,441	2,806,732	91.0
1985	23,877,417	21,799,677	176,939	1,900,801	91.3
1986	25,653,456	23,333,668	206,214	2,113,574	91.0
1987	28,916,556	26,508,700	152,750	2,255,106	91.7
1988	34,251,405	31,177,172	172,472	2,901,761	91.0
1989	41,851,374	37,922,577	180,770	3,748,027	90.6
1990	52,953,090	47,999,242	194,309	4,759,539	90.6
1991	98,304,927	88,735,645	371,369	9,197,913	90.3
1992	120,112,670	108,586,207	216,773	11,309,690	90.4
1993	147,574,789	133,997,124	212,283	13,365,382	90.8
1994	182,549,997	168,606,328	70,530	13,873,139	92.4
1995	228,229,290	208,551,158	77,348	19,600,784	91.4
1996	293,322,307	272,303,577	241,252	20,777,478	92.8
1997	239,759,402	224,944,320	178,152	14,636,930	93.8
1998	258,973,874	240,689,915	188,329	18,095,630	92.9
1999	256,835,772	237,393,200	261,905	19,180,667	92.4
2000	259,976,703	241,210,178	348,253	18,418,272	92.8
2001	62,424,387	58,101,202	69,389	4,254,796	93.1
2002	67,444,664	63,302,829	56,055	4,085,780	93.9
2003	69,907,522	64,974,474	105,556	4,827,492	92.9
2004	73,466,915	67,672,062	91,644	5,703,209	92.1
2005	76,578,742	70,468,865	143,348	5,966,529	92.0
2006	81,007,858	75,010,868	157,497	5,839,493	92.6
2007	82,003,173	76,502,400	320,423	5,180,350	93.3
2008	77,529,558	72,610,507	284,416	4,634,635	93.7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징연감』, 각 연도.

## 9. 경주마권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66	17,320	13,780	-	-	79.6
1967	23,833	16,742	-	-	70.2
1968	116,636	97,262	-	-	83.4
1969	183,443	183,443	-	-	100.0
1970	248,141	248,141	-	-	100.0
1971	322,827	322,827	-	-	100.0
1972	362,689	362,689	-	-	100.0
1973	453,498	453,498	-	-	100.0
1974	746,278	746,278	-	-	100.0
1975	533,717	533,717	-	-	100.0
1976	667,069	667,069	-	-	100.0
1977	899,579	899,579	-	-	100.0
1978	1,512,589	1,512,589	-	-	100.0
1979	1,902,321	1,902,321	-	-	100.0
1980	2,703,095	2,703,095	-	-	100.0
1981	2,856,731	2,856,731	-	-	100.0
1982	4,052,113	4,052,113	-	-	100.0
1983	7,735,307	4,513,574	-	3,221,733	58.4
1984	12,331,373	5,427,741	-	6,903,632	44.0
1985	15,957,136	7,068,361	-	8,888,775	44.3
1986	9,411,644	9,411,644	-	-	100.0
1987	11,821,806	11,821,806	-	-	100.0
1988	14,755,251	14,755,251	-	-	100.0
1989	19,532,904	19,532,904	-	-	100.0
1990	56,472,229	56,472,229	-	-	100.0
1991	80,106,314	80,106,314	-	-	100.0
1992	96,645,744	96,645,744	-	-	100.0
1993	98,422,988	98,422,988	-	-	100.0
1994	176,804,507	176,804,507	-	-	100.0
1995	216,960,422	216,960,422	-	-	100.0
1996	294,651,318	294,651,318	-	-	100.0
1997	360,647,554	360,647,554	-	-	100.0
1998	329,368,544	329,368,544	-	-	100.0
1999	393,596,681	393,596,681	-	-	100.0
2000	565,500,526	565,500,526	-	-	100.0
2001	790,850,303	790,850,303	-	-	100.0
2002	1,077,663,465	1,077,663,465	-	-	100.0
2003	895,907,089	895,907,089	-	-	101.0
2004	771,921,717	771,921,717	-	-	100.0
2005	691,875,119	691,875,119	0	-	100.0
2006	687,825,602	687,825,602	0	-	100.0
2007	864,331,930	864,331,930	0	-	100.0
2008	989,019,545	989,019,545	0	-	100.0

주: 2002년부터 레저세로 변경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 10. 지역개발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92	41,134,858	41,134,773	-	85	100.0
1993	49,935,240	49,858,541	-	76,699	99.8
1994	54,751,047	54,468,772	-	282,275	99.5
1995	61,196,842	61,095,409	90	101,343	99.8
1996	68,105,103	67,897,311	136	207,656	99.7
1997	70,931,859	70,771,041	66	160,752	99.8
1998	70,535,366	70,329,281	7,954	198,131	99.7
1999	76,292,071	76,040,606	1,093	250,372	99.7
2000	89,411,083	88,892,815	10,171	508,097	99.4
2001	86,429,822	86,070,444	20,889	338,489	99.6
2002	95,378,831	95,144,722	6,184	227,925	99.8
2003	103,841,462	103,381,910	10,071	449,481	99.6
2004	110,526,306	110,196,520	8,869	320,917	99.7
2005	110,067,927	109,651,274	11,815	404,838	99.6
2006	175,010,663	174,560,876	70,656	379,131	99.7
2007	100,346,329	99,952,436	29,935	363,958	99.6
2008	92,865,361	92,560,764	36,372	268,225	99.7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 11. 공동시설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66	143,525	138,722	-	-	96.7
1967	162,256	157,839	-	-	97.3
1968	321,108	313,201	-	-	97.5
1969	418,625	405,176	-	-	96.8
1970	542,674	519,212	173	23,289	95.7
1971	703,047	670,751	216	32,080	95.4
1972	888,369	844,903	804	42,662	95.1
1973	1,195,275	1,142,317	758	52,200	95.6
1974	1,587,912	1,541,444	245	46,223	97.1
1975	2,931,563	2,840,718	449	90,396	96.9
1976	4,023,283	3,907,146	307	115,830	97.1
1977	4,879,433	4,779,148	384	99,901	97.9
1978	5,457,370	5,360,914	1,071	95,385	98.2
1979	8,701,955	8,569,906	646	131,403	98.5
1980	13,294,196	13,032,316	3,280	258,600	98.0
1981	17,183,313	16,790,356	3,675	389,282	97.7
1982	23,507,342	23,022,500	5,121	479,721	97.9
1983	27,166,783	26,624,815	3,179	538,789	98.0
1984	35,333,215	34,533,677	3,067	796,471	97.7
1985	40,201,544	39,275,886	3,582	922,076	97.7
1986	45,653,154	44,551,256	3,128	1,098,770	97.6
1987	51,946,554	50,304,451	1,246	1,640,857	96.8
1988	60,616,372	59,119,693	9,509	1,487,170	97.5
1989	75,000,012	73,242,197	2,090	1,755,725	97.7
1990	87,488,408	86,118,046	6,829	1,363,533	98.4
1991	107,136,337	105,457,826	5,112	1,673,399	98.4
1992	134,452,575	131,757,389	33,753	2,661,433	98.0
1993	157,694,465	154,345,268	69,365	3,279,832	97.9
1994	188,532,631	182,901,292	39,334	5,592,005	97.0
1995	212,222,193	204,272,332	93,425	7,856,436	96.3
1996	247,604,652	239,666,292	190,910	7,747,450	96.8
1997	277,764,493	267,703,826	66,120	9,994,547	96.4
1998	325,188,857	301,355,667	142,431	23,690,759	92.7
1999	338,213,939	316,112,084	319,142	21,782,713	93.5
2000	360,748,729	341,382,285	418,422	18,948,022	94.6
2001	366,056,307	350,865,541	500,849	14,689,917	95.9
2002	388,983,632	374,932,207	327,459	13,633,966	96.4
2003	428,964,671	410,914,593	385,476	17,664,602	95.8
2004	488,492,802	464,795,438	628,259	23,069,105	95.1
2005	471,769,729	446,415,896	853,617	24,500,216	94.6
2006	541,520,907	516,278,520	1,438,086	23,804,301	95.3
2007	566,256,254	543,293,281	1,477,438	21,485,535	95.9
2008	614,485,751	588,490,815	1,697,800	24,297,136	95.8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 12. 지방교육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2001	3,557,610,679	3,477,691,781	1,210,578	78,708,320	97.8
2002	4,036,296,924	3,956,507,899	1,627,059	78,161,966	98.0
2003	4,102,597,498	4,009,287,388	2,500,935	90,809,175	97.7
2004	4,191,284,536	4,083,674,037	3,681,790	103,928,709	97.4
2005	3,947,582,862	3,840,690,603	3,210,620	103,681,639	97.3
2006	4,456,653,965	4,338,062,202	5,945,400	112,646,363	97.3
2007	4,650,788,848	4,513,926,680	12,258,140	124,604,028	97.1
2008	5,019,208,788	4,864,443,130	9,545,818	145,219,840	96.9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 13. 주민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73	10,776,318	9,337,415	73,437	1,365,466	86.6
1974	9,422,116	8,560,064	27,003	835,049	90.9
1975	16,787,830	15,637,559	60,998	1,089,273	93.1
1976	26,826,802	24,548,063	47,375	2,231,364	91.5
1977	51,910,161	46,921,283	88,668	4,900,210	90.4
1978	65,180,031	60,766,391	156,352	4,257,288	93.2
1979	96,462,833	91,001,792	275,169	5,185,872	94.3
1980	125,864,685	116,913,289	537,750	8,413,646	92.9
1981	137,285,716	127,627,599	644,549	9,013,568	93.0
1982	154,666,425	139,478,116	1,103,234	14,085,075	90.2
1983	179,116,564	157,678,687	856,327	20,581,550	88.0
1984	196,508,095	176,793,111	2,630,157	17,084,827	90.0
1985	224,281,538	202,003,379	5,315,397	16,962,762	90.1
1986	251,803,205	227,789,250	6,858,891	17,155,064	90.5
1987	303,429,327	276,037,236	7,524,890	19,867,201	91.0
1988	406,476,239	375,836,476	4,909,607	25,730,156	92.5
1989	509,277,358	469,872,355	11,850,588	27,554,415	92.3
1990	590,334,958	548,744,749	4,033,413	37,556,796	93.0
1991	749,959,090	701,502,146	2,801,993	45,654,951	93.5
1992	1,036,094,890	971,007,511	955,379	64,132,000	93.7
1993	1,182,593,767	1,099,895,970	1,744,248	80,953,549	93.0
1994	1,461,179,800	1,360,008,363	1,062,084	100,109,353	93.1
1995	1,844,465,161	1,701,441,650	2,907,399	140,116,112	92.2
1996	2,317,745,677	2,147,928,792	8,888,788	160,928,097	92.7
1997	2,487,193,014	2,259,330,181	13,068,991	214,793,842	90.8
1998	3,016,829,659	2,639,177,345	18,596,396	359,055,918	87.5
1999	2,887,059,528	2,548,180,824	28,395,575	310,483,129	88.3
2000	3,740,013,545	3,426,467,202	49,131,300	264,415,043	91.6
2001	3,958,596,858	3,566,530,607	89,417,155	302,649,096	90.1
2002	4,270,521,443	3,897,535,535	82,264,085	290,721,823	91.3
2003	4,960,552,300	4,558,194,783	110,454,390	291,903,127	91.9
2004	5,383,374,075	4,913,925,489	150,249,569	319,199,017	91.3
2005	5,955,806,941	5,500,346,493	136,457,104	319,003,344	92.4
2006	6,681,875,312	6,214,768,765	132,582,381	334,524,166	93.0
2007	7,821,566,655	7,411,521,668	113,996,413	296,048,574	94.8
2008	8,623,418,037	8,163,037,106	123,872,129	336,508,802	94.7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 14. 재산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66	1,078,491	1,043,636	-	-	96.7
1967	1,198,420	1,166,812	-	-	97.3
1968	2,420,880	2,356,171	-	-	97.3
1969	3,117,076	2,986,297	-	-	95.8
1970	4,172,610	3,980,115	2,313	190,181	95.4
1971	5,217,059	4,951,170	2,892	262,998	94.9
1972	8,318,934	7,879,503	8,107	431,325	94.7
1973	10,071,202	9,624,928	9,271	437,003	95.6
1974	16,748,718	15,856,961	3,337	888,420	94.7
1975	30,485,936	28,436,023	5,255	2,044,659	93.3
1976	39,537,387	37,798,207	2,104	1,737,076	95.6
1977	46,666,700	45,316,023	5,685	1,344,992	97.1
1978	48,501,328	47,073,244	16,812	1,411,272	97.1
1979	83,729,116	81,592,822	13,587	2,122,707	97.4
1980	123,119,917	119,412,203	24,965	3,682,749	97.0
1981	157,685,620	152,678,723	45,954	4,960,943	96.8
1982	177,611,412	172,786,893	39,929	4,784,590	97.3
1983	201,504,649	194,753,432	20,059	6,731,158	96.6
1984	216,711,906	210,419,077	32,422	6,260,407	97.1
1985	243,446,657	237,289,644	43,738	6,113,275	97.5
1986	273,926,413	265,793,348	53,890	8,079,175	97.0
1987	293,669,683	285,304,054	17,479	8,348,150	97.2
1988	308,347,725	301,046,192	87,994	7,213,539	97.6
1989	380,021,546	372,425,966	23,898	7,571,682	98.0
1990	230,972,295	227,165,292	46,237	3,760,766	98.4
1991	280,314,276	275,510,680	6,235	4,797,361	98.3
1992	362,323,308	355,290,512	27,823	7,004,973	98.1
1993	416,350,672	406,612,821	127,021	9,610,830	97.7
1994	494,055,073	480,674,871	60,876	13,319,326	97.3
1995	482,405,711	465,921,989	198,948	16,284,774	96.6
1996	549,718,334	532,305,747	295,913	17,116,674	96.8
1997	597,950,401	577,067,935	96,327	20,786,139	96.5
1998	684,637,670	640,660,548	214,837	43,762,285	93.6
1999	710,964,779	669,908,313	468,883	40,587,583	94.2
2000	765,172,560	727,832,715	678,060	36,661,785	95.1
2001	794,232,219	763,190,189	834,257	30,207,773	96.1
2002	848,006,166	817,549,150	571,346	29,885,670	96.4
2003	943,838,250	903,397,386	589,886	39,850,978	95.7
2004	1,068,269,521	1,017,804,830	1,051,316	49,413,375	95.3
2005	2,697,530,755	2,587,448,711	2,932,168	107,149,876	95.9
2006	3,225,760,502	3,108,975,315	5,132,349	111,652,838	96.4
2007	3,883,459,754	3,755,133,474	7,312,165	121,014,115	96.7
2008	4,577,477,403	4,411,329,536	8,454,459	157,693,408	96.4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15. 담배소비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85	86,208,377	86,208,377	-	-	100.0
1986	89,292,413	89,292,413	-	-	100.0
1987	93,861,182	93,861,182	-	-	100.0
1988	309,600,206	309,600,206	-	-	100.0
1989	1,412,994,438	1,412,994,438	-	-	100.0
1990	1,571,811,741	1,571,811,741	-	-	100.0
1991	1,646,865,340	1,646,865,340	-	-	100.0
1992	1,727,289,035	1,727,289,035	-	-	100.0
1993	1,745,427,007	1,745,426,655	-	352	100.0
1994	2,044,974,386	2,044,974,386	-	-	100.0
1995	2,151,851,491	2,151,851,437	-	54	100.0
1996	2,254,841,272	2,254,841,096	-	176	100.0
1997	2,236,489,334	2,236,489,334	-	-	100.0
1998	2,267,576,344	2,267,576,344	-	-	100.0
1999	2,088,244,397	2,088,244,397	-	-	100.0
2000	2,250,511,161	2,250,511,161	-	-	100.0
2001	2,508,559,931	2,508,559,931	-	-	100.0
2002	2,237,805,532	2,237,805,532	-	-	100.0
2003	2,384,360,737	2,384,360,737	-	-	100.0
2004	2,722,356,593	2,722,318,076	-	38,517	100.0
2005	2,447,918,552	2,447,918,377	0	175	100.0
2006	2,705,116,197	2,702,686,011	0	2,430,186	99.9
2007	2,761,177,077	2,761,009,669	0	167,408	100.0
2008	2,922,972,632	2,920,402,140	419,855	2,150,637	99.9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 16. 종합토지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90	415,514,193	399,871,471	13,735	15,628,987	96.2
1991	533,290,316	518,178,872	49,109	15,062,335	97.2
1992	696,354,151	675,123,429	37,156	21,193,566	97.0
1993	870,991,580	842,396,380	64,621	28,530,579	96.7
1994	1,072,280,392	1,026,186,714	31,062	46,062,616	95.7
1995	1,318,894,324	1,254,267,442	251,190	64,375,692	95.1
1996	1,302,548,900	1,252,549,529	186,893	49,812,478	96.2
1997	1,346,450,242	1,279,424,774	93,524	66,931,944	95.0
1998	1,299,867,963	1,199,291,470	197,280	100,379,213	92.3
1999	1,330,224,685	1,242,088,227	306,886	87,829,572	93.4
2000	1,364,908,783	1,281,702,503	945,695	82,260,585	93.9
2001	1,425,023,468	1,364,985,787	1,283,923	58,753,758	95.8
2002	1,457,716,680	1,405,679,961	990,244	51,046,475	96.4
2003	1,665,008,816	1,602,613,332	679,664	61,715,820	96.3
2004	2,114,417,486	2,031,605,790	1,149,761	81,661,935	96.1
2005	4,431,551	1,934,049	8,693	2,488,809	43.6
2006	16,061,308	13,732,551	80,377	2,248,380	85.5
2007	6,310,160	5,250,484	42,445	1,017,231	83.2
2008	77,991	-70,792	3,334	145,449	-90.8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17. 주행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2000	253,836,000	253,836,000	-	-	100.0
2001	541,996,724	541,996,724	-	-	100.0
2002	1,063,385,505	1,063,385,505	-	-	100.0
2003	1,265,787,682	1,265,787,657	-	25	100.0
2004	1,750,477,492	1,750,327,160	-	150,332	100.0
2005	2,292,532,452	2,292,514,722	0	17,730	100.0
2006	2,709,847,565	2,709,543,723	39,183	264,659	100.0
2007	3,270,322,832	3,270,163,325	45,944	113,563	100.0
2008	3,081,364,446	3,081,150,058	131,413	82,975	100.0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 18. 사업소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77	9,708,347	9,635,535	6	72,806	99.3
1978	16,799,908	16,705,619	592	93,697	99.4
1979	25,970,413	25,745,754	3,345	221,314	99.1
1980	31,150,952	30,748,817	8,969	393,166	98.7
1981	36,496,182	36,084,180	4,607	407,395	98.9
1982	43,726,371	43,283,872	18,506	423,993	99.0
1983	50,120,226	49,533,545	6,956	579,725	98.8
1984	56,122,303	55,534,342	10,640	577,321	99.0
1985	61,940,630	61,365,437	13,129	562,064	99.1
1986	68,717,153	68,047,472	5,345	664,336	99.0
1987	83,119,468	82,390,430	3,452	725,586	99.1
1988	103,015,597	102,343,807	4,829	666,961	99.3
1989	127,402,906	126,593,925	3,666	805,315	99.4
1990	146,681,568	145,589,816	11,782	1,079,970	99.3
1991	175,067,818	170,785,967	3,230	4,278,621	97.6
1992	213,117,147	211,647,609	15,414	1,454,124	99.3
1993	228,433,371	226,705,055	18,119	1,710,197	99.2
1994	255,398,143	253,059,211	6,474	2,332,458	99.1
1995	299,264,819	296,095,526	8,994	3,160,299	98.9
1996	357,628,788	354,308,579	16,584	3,297,255	99.1
1997	381,673,771	377,306,643	14,559	4,352,569	98.9
1998	342,661,938	336,704,244	52,489	5,905,205	98.3
1999	351,076,925	336,704,244	32,644	4,319,029	98.8
2000	400,748,748	396,262,213	77,250	4,409,285	98.9
2001	438,808,012	435,094,245	105,811	3,607,956	99.2
2002	476,444,644	473,094,279	56,423	3,293,942	99.3
2003	529,717,986	524,750,089	83,001	4,884,896	99.1
2004	571,987,849	567,247,092	85,977	4,654,780	99.2
2005	625,580,430	620,674,464	77,487	4,828,479	99.2
2006	682,926,751	677,362,402	110,897	5,453,452	99.2
2007	735,868,924	731,116,067	120,044	4,632,813	99.4
2008	804,663,407	799,500,445	213,661	4,949,301	99.4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 탄소배출권 거래제 · 탄소세 정부 ‘단계적 도입안’ 검토

거래제는 내년, 탄소세는 2012년 유력... 기업들 민감한 반응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선도입한 뒤 탄소세는 2012년 도입하는 2단계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5일 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세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하되 녹색산업 · 기술과 친환경자동차(그린카) 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탄소세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유와 석탄을 비롯한 화석 에너지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매기는 세금이다. 정부는 석탄 · 석유를 비롯한 1차 에너지에만 세금을 매기는 대신 2차 에너지인 전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해 이중 과세 문제를 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이나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한 뒤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 뒤 3년 동안 시범거래를 실시한 다음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전력거래소가 시범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세연구원 김승래 연구위원은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병행 방침에 대해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두 제도를 병행하거나 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개 방안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에 대해 정부는 함구하고 있다. 세금 제도를 다루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지경부 관계자도 “아직 부처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기업들은 탄소세 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녹색성장기본법 발효로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는 마당에 또다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이중 규제의 부담을 안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세를 도입하면 2013년 온실가스 배출을 4.06% 줄일 수 있지만 일자리 5만5000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탄소세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세 도입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최근 탄소세 도입을 철회한 프랑스 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탄소배출량을 2007년 대비 4% 감소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탄소세와 같은 직접 규제의 경

우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84조1000억원이 들어가는 반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 34조1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류에 대한 세금이 많은 상황에서 탄소에 세금을 도입하면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석탄이나 석유 외에 탄소를 유발하는 제품에 부담금을 늘리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0-07-06일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년, 일자리 20만개 · 부가 가치 9조 창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2년 만에 20만명 이상의 일자리와 최대 9조원이 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주년을 맞아 29일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방문요양과 목욕·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박노옥 박사의 분석 결과 장기요양 제도가 도입된 2008년 7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3만 7,684명에 불과했으나 올 4월 말 현재 요양보호사 21만명, 교육기관종사자 등 기타 종사자 3만명 등 관련 분야에서 약 24만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박사는 “경제침체로 많은 산업부문의 취업 인원이 이전 수준에 머무르거나 다소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장기요양서비스가 속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기타서비스산업 부문의 취업 인원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분석됐다. 도입 당시 5,200억~1조2,700억원에 불과했던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올해 최소 3조7,500억원에서 최대 9조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기요양제도로 ■고령화로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노령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을 방지하며 ■국민연금 수지 악화에 따른 국고지원금 증가도 막을 수 있어 국가 재정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 2010-06-28)

## “국채관리 전담조직 필요”...조세연구, 나라빚 급증 막아야

국가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국고자금 조달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가채무 관리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3일 '주요국 국가채무 관리 형태 및 국가채무관리청 도입의 효과' 보고서에서 “한국은 적자보전의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채무관리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적자보전의 국가 채무란 전 회계연도에서 이어진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 등 정부의 금융활동에 연관된 부채를 말한다. 이에 비해 국채 발행과 해외 차입 등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부채는 적자보전 채무로 분류된다.

송 연구위원은 “영국 등 외국 사례를 연구한 결과 재무부와 중앙은행 등에 분산돼 있는 국가채무 관리 기능을 외청 형태의 전담 조직으로 이전해 통합할 경우 적자보전의 채무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

했다.

현재 국가채무관리청과 같은 국가채무 관리 전담 조직이 있는 나라는 영국·독일·호주·스웨덴 핀란드 등이다. 한국(기획재정부)을 포함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재무부가 주도적으로 국가 채무를 관리한다.

〈한국경제 2010-06-24일자〉

### 조세연구 “2단계 토빈세 도입 필요”

외환시장안정을 위해 평상시와 위기를 나눠서 2단계로 자금 유출입에 대한 세금을 메기자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한국조세연구원 홍범교 연구위원은 금융거래세 관련 국제논의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시론에서 “외환시장이 안정된 평상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환율변동이 심할 때에는 투기적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단계 토빈세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이어 “토빈세 도입은 외화자금 유치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브라질이 2009년 외환거래세를 도입한 사례와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원·달러 시장에 외환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파생 금융상품 시장과 외환시장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지나친 가격변동성을 줄이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제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국제여론이 다소 주춤하지만 금융위기 책임론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여론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공조로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면 도입이 더 쉽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한국 단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매일경제 2010-06-23일자〉

### 조세연구 “부가가치세 올리고 소득공제 줄여야”

재정·조세정책 분야의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고 소득공제를 축소해서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가세 인상 움직임과 맞물리는 것이어서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조세연구원 송호신 연구위원은 22일 열린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10% 단일 세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7.6%)보다 크게 낮은 수준. 송 연구위원은 “부가세 도입 이후 세율이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고, 일본을 뺀 다른 OECD 회원국보다 세율이 크게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세율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축소를 통한 소득세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35%)이 OECD 평균(34.9%) 수준인데도,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비중(4.0%)은 OECD 평균(9.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과도한 소득공제 때문이므로,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올해와 내년에는 무난히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지만, 2012년 이후에는 정부가 전망한 5% 성장률을 달성하느냐 여부에 따라 세입이 결정될 것”이라며 “부가세율 인상, 소득공제 축소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 유한욱 연구위원은 이날 토

론회에서 “2014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평균 2.5%포인트 낮게 유지해야만 정부가 목표한 2013~14년의 균형재정이 가능하다”며 “감세정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2010-06-23일자〉

# 재정포럼

2010년 7월호 통권 제169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 ■ 월간 재정포럼

2010년 7월 15일 발행 / 제15권 제7호(통권 제169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pub@kipf.re.kr
- 주소: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